

조사보고 92-15

폴란드 貿易制度 分析

金奎坂

1992. 1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附設 地域情報센터

폴란드 貿易制度 分析

金 奎 坂

1992. 1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附設 地域情報센터

머 리 말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舊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는 시장경제 메카니즘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에서는 정치민주화의 결실로 89년 總選 결과 非공산당 계열의 정당들이 의회를 장악하였으며, 90년 초부터는 이와 같은 정치민주화를 기반으로 급진적인 經濟改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改革은 폴란드 경제를 급격히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92년 중반 이후 經濟改革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93년에는 폴란드 경제가 東歐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成長局面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92년 말을 기해 EC 12개국은 單一市場을 창설하기로 합의하였고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東歐 3國은 EC 가입의 한 방편으로 自由貿易地帶 창설을 위한 貿易協定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폴란드를 둘러싼 對外環境의 변화는 세계시장에서 폴란드를 비롯한 東歐市場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EC 市場 진출을 꾀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EC 單一市場의 출범과 함께 東歐국가들의 EC 가입 추진현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對폴란드 貿易額은 89년과 90년 각각 前年對比 74.8%와 175.9%의 높은 增加率을 기록하였으나, 91년 중반부터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經濟 및 外換 사정의 악화로 폴란드 정부가 91년 중반부터 貿易障壁을 강화함과 동시에 EC가입을 위해 EC 국가에 편향된 貿易政策을 추진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폴란드의 貿易環境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貿易關聯 정보와 자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當 센터는 90년 이후 폴란드 貿易政策 및 貿易制度의 변화를 調査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本 調査報告書가 폴란드 關聯 政策을 立案하는 政府當局, 對폴란드 貿易에 관심있는 기업인 그리고 폴란드를 연구하는 여러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폴란드 貿易制度는 아직 재편과정에 있으므로 내용상 未備點이 많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修正·補完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本 調査報告書는 地域 3室의 金奎坂 研究員이 執筆하였으며, 原稿 정리를 위해 金敬喜, 崔惠蘭 研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筆者 개인의 見解이며 本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1992년 12월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目 次

I. 序論	9
II. 貿易現況 및 對外關係	11
1. 貿易現況	11
가. 硬貨· 루블 貿易構造	11
나. 地域別 貿易構造	17
다. 商品別 貿易構造	23
2. 主要 對外關係	28
가. 폴란드의 EC 準會員國 가입협정 체결	29
나. 東歐 3國間 自由貿易協定 체결	37
III. 貿易政策	44
1. 貿易自由化	44
가. 貿易業의 單一化	45
나. 國家獨占貿易의 緩和	45
다. 輸出入規制의 緩和	47
2. 換率政策	48
가. 즐로티貨의 內的 兌換化	48
나. 換率政策	50
다. 換率政策의 評價	52
3. 關稅政策	55
IV. 輸出入管理制度	59
1. 輸出入免許制度	59
2. 輸出入許可制度	62
3. 一時的 輸出入禁止制度	62

4. 不公正去來防止制度	65
5. 貿易紛爭仲裁制度	66
V. 關稅制度	69
1. 關稅	69
가. 關稅率	69
나. 通關手數料	74
다. 關稅適用	75
라. 特惠關稅制度	75
마. 일시적 關稅免除	77
2. 通關節次	79
가. 關稅賦課 및 徵收 節次	79
나. 關稅還給	80
다. 關稅免除	81
라. 關稅代理店	81
마. 덤핑規制節次	82
바. 稅關機關	82
사. 通關地域 이외에서의 關稅規制	83
아. 通關에 필요한 서류	84
3. 關稅保護區域	91
가. 自由貿易地帶	92
나. 保稅倉庫	93
다. 免稅店	94
VI. 外換管理制度	95
1. 主要 概念定義	96
2. 外換에 대한 財產權 제한	99
3. 外換配分시스템	100

4. 外換去來許可制·····	103
5. 內國人的 海外資產 統制·····	107
6. 外換統制·····	107
VII. 結論 및 示唆點·····	108
參 考 文 獻·····	112
부 록·····	113

〈表目次〉

〈表 II-1〉 硬貨貿易(1989~1991).....	12
〈表 II-2〉 루블貿易(1989~1991).....	16
〈表 II-3〉 폴란드의 地域別 貿易構造.....	18
〈表 II-4〉 폴란드의 주요 貿易 對象國(1970~1992).....	22
〈表 II-5〉 商品用途別 輸入構造.....	23
〈表 II-6〉 폴란드 상품별 貿易構造의 變化.....	26
〈表 II-7〉 地域別-品目別 貿易構造(1991).....	27
〈表 II-8〉 EC의 對폴란드 輸入品の 關稅率 調整계획.....	30
〈表 II-9〉 EC의 폴란드 자동차 免稅輸入量.....	31
〈表 II-10〉 폴란드의 對EC 자동차 관세인하 계획.....	33
〈表 II-11〉 品目別 對EC 輸出入 比重(1990) 및 關稅率(1992)	34
〈表 II-12〉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의 主要 經濟指標(1989~1991).....	38
〈表 II-13〉 EC의 對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貿易 規模(1990).....	39
〈表 II-14〉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의 地域別 貿易構造.....	40
〈表 II-15〉 東歐 3國間 自由貿易地帶 창설에 따른 폴란드의 經濟效果.....	43
〈表 III-1〉 즐로티화의 對美달러 名目 및 實質換率.....	53
〈表 III-2〉 폴란드의 關稅率 推移.....	55
〈表 V-1〉 關稅率 構造.....	72
〈表 V-2〉 품목별 關稅率.....	72

〈附表目次〉

〈부표 1〉 경화 및 루블 무역구조(1983-1991)·····	115
〈부표 2〉 지역별 무역구조(1990)·····	116
〈부표 3〉 지역별 무역구조(1991)·····	118
〈부표 4〉 품목별 경화 및 루블 무역구조(1990)·····	120
〈부표 5〉 품목 및 지역별 무역구조(1991)·····	121
〈부표 6-1〉 對폴란드 輸入禁止 및 制限 品目(1992): 公産품·····	123
〈부표 6-2〉 對폴란드 輸入禁止 및 制限 品目(1992): 農産物·····	124
〈부표 7〉 한국의 對폴란드 輸出現況·····	126

I. 序論

1989년 10월 東歐國家로서는 가장 먼저 폴란드에서 非共產主義 政權이 들어섰다. 그 이후 진행된 폴란드의 經濟改革은 다른 東歐國家와는 달리 매우 급진적인 성격을 띠었는데, 이러한 經濟改革은 貿易政策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1990년 1월 단행된 즐로티貨의 內的 兌換性 확보를 비롯한 貿易自由化 조치와 이에 따른 非關稅障壁의 제거 등은 폴란드 貿易政策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貿易政策의 변화에 따라 1990년을 분기점으로 硬貨貿易은 크게 증가한 반면, 貿易決濟上의 어려움으로 인해 舊소련을 비롯한 舊코메콘 국가와의 루블무역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貿易構造가 크게 변화되었다.

1991년 6월 코메콘체제의 해체는 폴란드로 하여금 先進 西方國家, 특히 EC로의 편입을 서두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EC가입의 前段階로 폴란드는 1991년 말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와 함께 EC 準會員國 加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産業構造再編과 私有化 등 거의 모든 經濟改革의 방향이 今世紀內 EC 加入이라는 목표하에 설정되었다. 1992년 말 체결된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東歐 3國間 自由貿易協定 또한 EC 加入 정책의 一環이라 할 수 있다.

폴란드는 1990년 초반부터 1991년 중반까지 非關稅障壁을 제거하고 關稅率을 引下하는 등 貿易自由化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91년 중반 이후 貿易收支가 악화되기 시작하자 폴란드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關稅率을 引上하고 非關稅障壁을 강화하였다. 한편 폴란드는 1992년 초부터 EC 準會員國 加入 協定의 체결을 계기로 EC에 대해 特惠關稅率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EC에 유리한 貿易政策은 EC 定會員國 加入이라는 폴란드 정부의 기본 목표가 달성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韓國의 폴란드에 대한 輸出은 폴란드의 政治·經濟상황 뿐만 아니라 貿易政策에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1990년 폴란드가 급진적인 貿易自由化를 실시한 이래 한국의 對폴란드 輸出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關稅引上 및 對EC 特惠關稅 부여 등으로 1991년 하반기 이후 수출규모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經濟改革 이후 폴란드의 貿易政策 및 制度를 분석하여 兩國間 교역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本 報告書가 對폴란드 輸出擴大 방안을 직접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폴란드 貿易政策과 輸出入管理制度, 關稅制度, 外換管理制度 등 貿易制度의 變化過程을 정리하여 政府의 政策立案 및 기업의 對폴란드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 작업은 향후 兩國間 交易 및 投資擴大 方案을 간접적으로 제공해 준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本考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2장에서는 1990년과 1991년 2년간의 폴란드 貿易現況과 東歐 3國間 自由貿易地帶 창설 등 EC加入을 위한 對EC 政策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貿易自由化, 換率政策, 關稅政策 등 貿易政策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輸出入管理制度를 살펴보고, 제5장에서는 貿易政策과 貿易量의 변화가 關稅制度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外換管理制度를 外換去來의 自由化라는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제7장에서는 폴란드 貿易政策 및 制度의 특징을 정리해 보고 이것이 韓國-폴란드間 貿易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시사점은 무엇인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貿易現況 및 對外關係

1. 貿易現況

가. 硬貨·루블 貿易構造

'80년대 이후 폴란드 硬貨·루블 貿易構造의 변화를 보면, 硬貨貿易은 '80년대 초반 이후 계속 增加趨勢를 기록하여 1990년에 이르러 가장 큰 增加率을 기록한 반면, 루블무역은 1989년까지 증가추세를 기록하다가 1990년 들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2년 초반부터 거의 중단되었다.¹⁾

1990년 이후 폴란드 硬貨·루블 貿易構造의 變化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硬貨貿易

1990년 硬貨貿易의 가장 큰 특징은 선진서방국과 사회주의 국가과의 교역이 큰 폭으로 증대됨과 동시에, 先進西方國과 開途國으로부터 각각 27억 4,600만 달러, 9억 1,700만 달러의 黑字에 힘입어 총 37억 6,600만 달러의 黑字를 기록한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와의 硬貨貿易은 매우 큰 폭으로 증대하였으나 1억 200만 달러의 흑자에 머물렀다.

1990년 硬貨輸出額은 前年에 비해 40.9% 증가한 120억 1,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폴란드의 1990년 경화수출이 크게 증가한 지역은 EC국가를 필두로 한 先進西方國과 舊소련과 東歐國家 등 사회주의 국가이다. 이들 두 지역에 대한 硬貨輸出은 前年에 비해 각각 41.5%, 105.5% 증가한 89억 3,200만 달러와 18억 3,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여기서 알

1) 1983년 이후 폴란드의 硬貨貿易과 루블貿易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에 관해서는 <부표 1>을 참조할 것.

〈表 II-1〉 硬貨貿易(1989~1991)

(단위 : 백만 달러)

	1989	1990	1991
輸出總額(f.o.b)	8,533	12,019 (40.9)	14,641 (21.8)
서방선진국	6,312	8,932 (41.5)	10,999 (23.2)
개도국 ¹⁾	1,326	1,248 (-5.8)	1,156 (-7.4)
사회주의 국가	895	1,839 (105.5)	2,486 (35.1)
輸入總額(f.o.b)	7,766	8,254 (6.3)	15,464 (87.4)
서방선진국	6,040	6,186 (2.4)	10,777 (74.2)
개도국 ¹⁾	782	331 (-57.1)	1,621(281.2)
사회주의 국가	944	1,737 (84.0)	3,066 (76.5)
貿易收支	767	3,765	-823
서방선진국	272	2,746	222
개도국 ¹⁾	544	917	-465
사회주의 국가	-49	102	-580

註: 1) 북한,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개도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분류함.

2) ()안 수치는 前年對比 증가율임.

資料: PlanEcon, *PlanEcon Report*, 1992.6. No.24~25, pp. 12~13.

수 있는 것은 EC국가를 비롯한 선진서방국에 대한 경화수출이 전체 경화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에 들어서는 이미 75%선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1990년 硬貨輸出이 總輸出의 83%를 차지하였음을 고려하더라도 선진서방국에 대한 경화수출이 폴란드의 總輸出 중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中東 및 極東 아시아를 비롯한 開途國(사회주의 開途國은 제외함)에 대한 硬貨輸出은 前년에 비해 5.8% 감소하였다.

한편, 1990년 전체 硬貨輸入額은 전년에 비해 6.3% 증가한 82억 5,400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硬貨輸出에 비해 증가율이 낮았다. 이 중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硬貨輸入이 전년에 비해 84.0% 증가한 17억 3,700만 달러로 가장 높은 硬貨輸入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폴란드 硬貨

輸入에서 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0%선에 머물고 있다. 결국 루블무역의 급격한 감소를 고려하면, 이 지역으로부터 硬貨輸入이 증가한 것은 硬貨輸出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국가와의 무역결제가 루블貨에서 美달러 등 硬貨로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C를 비롯한 선진서방국으로부터의 硬貨輸入은 전년에 비해 2.4% 증가한 61억 8,6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비록 硬貨輸入 증가율은 낮았지만, 硬貨輸出과 마찬가지로 선진서방국이 여전히 전체 硬貨輸入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와 선진서방국으로부터의 硬貨輸入이 증가한 반면, 사회주의 개도국을 제외한 開途國으로부터의 硬貨輸入은 전년에 비해 57.1%가 감소한 3억 3,1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1년에는 경화수출도 前年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경화수입의 증가율이 더 높아 경화무역은 적자를 기록하였다.

1991년 폴란드의 총 硬貨輸出額은 前年에 비해 21.8% 증가한 146억 4,1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선진서방국에 대해 꾸준히 수출이 증가한 것과 루블에서 硬貨로 무역 결제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舊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硬貨輸出이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1991년 폴란드 경화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舊소련 및 東歐國家 등 사회주의 국가로서 전년에 비해 35.1% 증가한 24억 8,6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선진서방국에 대한 경화수출도 계속 증가하여 1991년 들어서는 100억 달러를 초과한 109억 9,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서방국이 폴란드 전체 경화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6%가 되었다. 특히 루블무역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의 경우 약 2%임을 감안하면 폴란드의 전체수출 중 약 73%가 선진서방국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개도국을 제외한 개도국에 대한 경화수출은 1990년에 이어 1991년에도 감소하여 11억 5,600만 달러를 기록한 데 그쳤다.

한편, 1991년 硬貨輸入은 前年에 비해 87.4% 증가한 154억 6,400만 달

러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1991년에 들어 硬貨輸入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舊코메콘 국가에 대한 貿易決濟가 루블에서 硬貨로 전환됨과 동시에 폴란드 정부가 무역자유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91년 무역결제 방식의 변화에 따라 社會主義 國家로부터의 硬貨輸入은 전년에 비해 76.5% 증가한 30억 6,6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1990년에 나타난 추세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한편, 무역자유화 정책으로 서방선진국으로부터의 硬貨輸入은 60.9% 증가한 107억 7,7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폴란드가 에너지와 원료의 輸入先을 舊소련에서 中東 産油國 등 개도국으로 전환함에 따라, 開途國으로부터의 硬貨輸入이 전년에 비해 무려 세배 정도 증가한 16억 2,100만 달러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는 1991년 硬貨輸入 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硬貨輸入의 급격한 증가로 1991년 硬貨貿易收支는 8억 2,3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硬貨貿易收支가 1990년에 비해 무려 약 46억 달러가 악화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방선진국과의 무역에서 비록 흑자를 기록하였지만 이 지역에 대한 흑자규모의 축소는 전체 경화무역수지의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1990년에 비해 25억 2,4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악화가 이 지역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물론 開途國과 사회주의 국가와의 무역에서도 각각 4억 6,500만 달러와 5억 8,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폴란드 中央銀行이 발표한 폴란드 貿易動向 자료에 의하면,²⁾ 1992년 폴란드의 對外貿易에서 輸出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輸入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무엇보다 즐로티貨의 평가절하와 關稅引上 등의 무역정책과 景氣沈滯로 인한 국내수요의 감소에 따른 것

2) PlanEcon, *PlanEcon Trade and Finance Review* No. 2, 1992. 10., p2~3.

이다. 특히 즐로티貨의 추가적 평가절하와 關稅引上은 輸入抑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92년 1~7월 동안 폴란드 輸出(결제기준)은 前年同期에 비해 12.7% 증가한 82억 3,3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비록 1992년 5월 이후 국내 산업생산이 활기를 띠에 따라 투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輸入이 증가하고 있지만, 6월말 현재는 前年同期에 비해 여전히 8% 낮은 수준이다. 반면 硬貨輸入은 前年同期에 비해 3.7% 낮은 71억 1,1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7월말 현재 무역수지는 前年同期에 비해 12억 달러가 개선되어 11억 2,2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게다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1992년말에는 약 5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2) 루블貿易

硬貨貿易의 추세와는 달리 루블무역은 1990년을 기점으로 급감하기 시작하여 1992년에는 거의 중단되었다. 비록 1989년 이후 1991년까지 폴란드는 루블무역에서 흑자를 유지하였지만, 이 기간 동안 루블수출과 루블수입이 동시에 감소하였던 것이다.

1990년 루블무역은 수출 103억 3,000만 루블, 수입 57억 1,200만 루블을 기록하여 46억 1,800만 루블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루블수출과 루블수입이 각각 전년에 비해 15.5%, 44.4% 감소하였다. 지역적으로 보아도 舊소련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루블수출이 각각 13.4%, 18.6% 감소하였으며 루블수입은 각각 44.8%, 43.9% 감소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루블무역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루블무역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된 주요 원인은 舊소련이 原油輸出에 있어 경화결제를 요구한 데에 있다. 또한 폴란드의 기타 사회주의 국가의 상품에 대한 수요격감과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물품조

달 중단, 동독의 와해 등도 루블무역의 감소에 일조하였다.

〈表 II-2〉 루블貿易(1989~1991)

(단위:백만 루블)

	1989	1990	1991
輸出總額	12,218	10,330 (-15.5)	1,397 (-86.5)
舊소련	7,376	6,388 (-13.4)	1,118 (-82.5)
기타 사회주의 국가	4,842	3,942 (-18.6)	279 (-92.9)
輸入總額	10,268	5,712 (-44.4)	850 (-85.1)
舊소련	5,735	3,167 (-44.8)	238 (-92.5)
기타 사회주의 국가	4,533	2,545 (-43.9)	612 (-75.9)
貿易收支	1,950	4,618	547
舊소련	1,641	3,221	880
기타 사회주의 국가	309	1,397	-333

註: 1) ()안 수치는 前年對比 증가율임.

資料: 〈表 II-1〉과 동일.

1991년에 들어서도 루블무역의 감소추세는 계속되었다. 오히려 1990년보다 악화되었다. 1990년에는 전체 수출 가운데 루블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7%, 루블수입은 15%로서 10%선은 유지하였지만, 1991년에는 불과 전체 수출의 1.8%, 전체 수입의 1.1%에 불과하였다. 1991년 루블무역은 1989년의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 22억 4,700만 루블(輸出:13억 9,700만 루블, 輸入:8억 5,000루블)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1990년에 비해 무려 수출이 86.5%, 수입이 85.1%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루블무역이 감소한 가운데, 특히 東歐國家를 중심으로 한 기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수출과 舊소련으로부터의 수입이 前年對比 각각 92.9%, 92.5% 감소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1991년 루블무역수지 흑자규모도 감소하였다. 1990년 보다 약 40억 루블이 악화되어 1991년에는 5억 4,700 루블의 흑자를 기록하는데 머물렀

던 것이다. 이 중 舊소련에 대한 루블무역수지는 8억 8,000만 루블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기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3억 3,300만 루블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舊소련에 대한 루블무역수지의 흑자는 수출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수입이 감소한 결과이다.

1992년에 들어와서도 루블무역은 계속 감소하여 거의 중단상태가 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무역은 硬貨貿易의 형태를 띠고 있다. 1992년 1~4월 동안 폴란드의 루블수출은 400만 루블을 기록하였고 루블수입은 3,300만 루블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루블수입이 루블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대한 수입의 상당부분이 루블貨로 결제되었기 때문이다.

社會主義 국가의 정부간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던 清算去來 또한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1992년 1~5월 동안 폴란드의 清算去來額은 전년동기에 비해 80~90% 감소하였고, 이 중 清算輸出은 2,400만 달러, 清算輸入은 3,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나. 地域別 貿易構造

폴란드의 主要 交易相對國은 舊코메콘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양분되어 왔지만 1990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세개의 그룹으로 분리되는 경향을 보였다. 첫번째 그룹은 EC 국가이고 둘째 그룹은 舊코메콘 국가, 셋째 그룹은 開途國을 비롯한 기타국가이다.

이와 같이 폴란드의 무역권이 변화된 이유는 주요 무역대상국이었던 舊소련이 무역결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舊소련을 비롯한 舊코메콘 지역의 무역비중이 낮아짐과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한 대체 시장으로서 EC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폴란드는 방대한 舊소련 시장을 상실함에 따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든가 아니면 기존 시장에 대해 수출중대를 꾀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폴란드의 지역별 무역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구체적인 輸出入

〈表 II-3〉 폴란드의 地域別 貿易構造

(단위: %)

	經常價格				不變價格 ¹⁾	
	1985	1989	1990	1991	1990	1991
總輸出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 C	23.2	32.1	47.2	54.7	47.2	58.0
舊코메콘	48.2	34.8	21.4	16.9	21.4	12.6
기타국가	28.6	33.1	31.4	28.4	31.4	29.4
總輸入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 C	20.5	33.9	45.8	48.4	45.6	52.4
舊코메콘	53.0	31.3	21.9	20.0	22.3	10.6
기타국가	26.5	34.8	32.3	31.6	32.1	37.0

註: 1) 불변가격은 1990년 기준임.

2) 각 수치들은 경화무역과 루블무역을 포함한 전체무역의 비중임.

資料: Foreign Trade Research Institute, *Polish Foreign Trade in 1991, 1992*, p.15.

統計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II-3〉에서 볼 수 있듯이 1985년 당시 폴란드의 전체무역에서 舊코메콘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수출:48.2%, 수입:53.0%)에 이르렀으나,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1년에는 輸出 17%, 輸入 20%를 차지하는 데 머물렀다. 이 밖에도 1990년 不變價格으로 계산된 폴란드의 주요 지역별 무역비중도 폴란드의 貿易構造가 지리적으로 재편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³⁾

서방선진국을 EC와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 EC의 서방 선진국으로, 開途國은 한국, 싱가포르, 이란 등 非사회주의 개도국과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개도국으로, 舊코메콘 지역은 舊소련과 東歐國家로 나누어 1989년 이후 폴란드의 지역별 무역구조의 변화를 고찰해 보자.

서방선진국은 1990년부터 폴란드의 최대 교역시장으로 부상하고 있

3) 1989년 이후 1991년까지 폴란드의 地域別 貿易構造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는 〈부표 2〉와 〈부표 3〉을 참조할 것.

다. 폴란드 경화무역에서 서방선진국의 비중은 1980년 이후 줄곧 60~70%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폴란드의 전체 무역에서 루블무역에 대한 경화무역의 비중이 1990년 이후 급격히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서방선진국의 비중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방선진국 가운데 폴란드가 수출을 가장 크게 증대시킨 지역은 EC이다. 1990년 폴란드의 對EC 수출은 前年에 비해 52.0% 증가한 64억 2,4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1985년 폴란드 전체 硬貨輸出額 61억 1,520만 달러를 상회한 것이다. 1990년 EC 국가중 폴란드의 무역비중이 높은 국가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다. 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독일(前年對比 80.2% 증가), 벨기에(50.6%), 포르투갈(64.3%), 덴마크(50.6%) 등이다. 특히 독일에 대한 수출액 34억 5,000만 달러에는 비록 舊동독의 실적이 포함되어 있지만, EC 수출 중 거의 절반이 독일에 집중되고 있다. 1990년 EC국가에 대한 수입은 전년에 비해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EC국가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하였다.

1991년에도 상황은 유사하여 EC와의 무역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무역액⁴⁾ 약 305억 달러 가운데 EC와의 무역액이 약 160억 달러로 절반을 상회하였던 것이다.

EC에 대한 前年對比 수출증가율도 평균 12.3%보다 높은 21.5%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 대해서는 약 30~50% 증가하였다. 수입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EC로부터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도 전년대비 60.9%라는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되었다. 특히 독일(前年對比 148.0% 증가), 네덜란드(253.1%), 프랑스(125.1%), 벨기에(253.9%), 덴마크(250.7%), 스페인(237.3%) 등 12개 EC국가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은 평균치를 훨씬 초과하였다. 이는 1990년과 달리 EC내에서도 輸入先이 다변화되었음을 보여주

4) 舊소련 및 동구국가와의 무역액에는 루블무역액이 달러로 환산되어 포함됨.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는 4억 8,6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1990년 이후 폴란드의 지역별 무역구조가 EC지향적으로 가속화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서, 舊소련과의 무역단절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된다.

EC외 서방선진국에 대한 무역비중은 1989년 이후 약 20%선에 머물고 있다. 1989년 7,400만 달러의 적자, 1990년 4억 7,800만 달러의 흑자, 1991년 2억 6,400만 달러의 적자가 보여 주듯이 폴란드의 전체적인 무역수지의 흐름과 대략 일치하고 있다.

폴란드와의 무역비중이 비교적 높은 EC외 서방선진국으로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미국, 스웨덴, 핀란드, 일본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등 EFTA 가입국에 대한 무역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아 폴란드가 EC 뿐 아니라 EFTA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EC외 서방선진국에 대한 무역액(1990년 45억 3,800만 달러, 1991년 56억 8,100만 달러) 중 각각 10%, 6%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다.

1989년 이후 폴란드의 中東 및 極東지역의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開途國에 대한 무역비중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1989년에는 폴란드 전체 무역액⁵⁾ 중 약 18%를 차지하였으나, 1990년에는 그 비중이 급감하여 약 9.5%를 차지하는 데 머물고 말았다. 이는 인도, 리비아, 이라크 등이 代金決濟上의 문제로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1991년에도 계속되어 폴란드 무역에서 이들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9.5%선을 유지하였다.

開途國이 폴란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로부터 원유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기도 하였다. 이는 과거

5) 여기서 루블무역액은 달러貨로 환산하여 전체 무역액에 포함함.

에 폴란드에 대한 에너지 공급원 역할을 수행하였던 舊소련의 정치·경제적 혼란으로 輸入先을 中東 產油國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폴란드 국내 소비재의 부족으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개도국으로 부터 소비재 수입을 증대시켰다. 그 결과 1990년 이들 국가가 폴란드 硬貨輸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에 불과하였지만 1991년에는 18.2%로 크게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舊소련 및 東歐國家 등 舊코메콘 지역에 대한 폴란드 무역추이를 살펴 보면, 硬貨貿易이 1990년 이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루블貿易의 급감으로 인해 전체적인 무역비중은 상당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1990년 舊코메콘 지역이 폴란드 硬貨輸出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였다. 그러나 1991년 초 루블결제가 달러로 전환됨에 따라 그 수출비중은 1991년에 15.3%로 증가하였고, 硬貨輸入의 경우에도 1990년 7.8%에서 1991년 18.2%로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전체 폴란드 무역액 중 루블무역액의 비중이 1990년 15%~17%에서 1991년에는 1%~2%로 급감함으로써 전체 무역에서 舊코메콘 지역의 비중은 상당히 낮아졌다. 이에 따라 달러로 환산한 폴란드의 舊코메콘 지역에 대한 전체 무역액은 1990년 56억 3,600만 달러, 1991년 58억 8,600만 달러로 全地域에 대한 무역액 중 24.6%와 19.2%를 차지하는데 머물렀다.

폴란드의 주요 무역 대상국을 살펴보면, <表 II-4>에서 알 수 있듯이 1991년 폴란드의 최대 貿易對象國은 여전히 독일과 舊소련으로 이들 국가가 폴란드 貿易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이르렀다. 1991년 폴란드 貿易額에서 舊소련이 차지하는 비중은 輸出이 11%, 輸入이 14.1%를 차지하였다. 한편 1991년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이 29.4%, 輸入이 26.5%를 기록하였다. 이어 세번째로 1991년 輸出比重이 높은 국가는 영국(7.2%)이었고, 그 다음으로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5%), 체코슬로바키아와 스위스(4.6%), 이탈리아와 프랑스(4% 정도),

〈表 II-4〉 폴란드의 주요 貿易 對象國(1970~1992)

순위	1970		1980		1991	
	국 가	%	국 가	%	국 가	%
輸 出						
1	舊소련	35.3	舊소련	31.2	독일	29.4
2	舊동독	9.3	舊서독	8.1	舊소련	11.0
3	체코연방	7.5	舊동독	6.9	영 국	7.1
4	舊서독	5.1	체코연방	6.9	네덜란드	5.2
5	영 국	4.3	영 국	3.2	체코연방	4.6
6	헝가리	4.0	이탈리아	2.9	오스트리아	4.5
7	이탈리아	3.2	헝가리	2.9	스위스	4.5
8	미 국	2.6	프랑스	2.5	이탈리아	4.1
9	루마니아	2.2	미 국	2.5	프랑스	3.8
10	불가리아	1.9	불가리아	2.3	스웨덴	2.6
輸 入						
1	舊소련	37.7	舊소련	33.1	독 일	26.5
2	舊동독	11.1	舊서독	6.7	舊소련	14.1
3	체코연방	8.6	舊동독	6.6	오스트리아	6.3
4	영 국	5.3	체코연방	5.7	네덜란드	4.9
5	舊서독	4.0	프랑스	4.2	이탈리아	4.5
6	헝가리	3.8	미 국	4.0	영 국	4.0
7	프랑스	2.4	영 국	3.5	프랑스	3.6
8	이탈리아	2.0	헝가리	3.1	스위스	3.4
9	루마니아	2.0	오스트리아	3.0	체코연방	3.3
10	오스트리아	1.7	브라질	2.7	이 란	2.7

資料: Government of Poland,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he Republic of Poland*, 1992.11(GATT 보고서: C/RM/S/31B), p.3.

미국(2.5%) 順이었다. 輸入比重面에서는 오스트리아(6.3%)가 세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네덜란드와 이탈리아(4.7%), 영국(4%), 스위스와 프랑스(3.5%), 체코슬로바키아(3.3%), 이란(3%)이 그 다음을 차

지하였다.

1991년 현재 폴란드의 주요 국가별 무역 비중은 1970년과 1980년에 비해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舊소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등 EC를 비롯한 서방측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볼 때 1992년 폴란드 무역구조는 서방선진국과 개도국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⁶⁾

다. 商品別 貿易構造

폴란드의 지역별 무역구조가 舊코메콘 국가에서 西歐國家로 전환됨에 따라 商品別 貿易構造 또한 변화되었다.

〈表 II -5〉에서 알 수 있듯이 폴란드의 總輸入에서 中間材가 차지하는

〈表 II -5〉 商品用途別 輸入構造

(單位: %)

品 目	1985	1989	1990	1991 ¹⁾
中間財	68.5	61.2	57.4	48.8
投資財	10.0	12.6	13.3	14.2
消費財	10.2	12.9	17.9	25.9
總輸入額	100.0	100.0	100.0	100.0

註: 1) 1991년은 1~11월임.

2) 1984년 價格 基準임.

資料: 1) GUS, *Foreign Trade 1991*. 1991.12.

2) GUS, *Foreign Trade, January - November 1991*. 1991.12.

6) 1992년 상반기 舊루블무역권은 폴란드 총 輸出額의 10%, 輸入額의 12~13%를 차지하는 데 머물렀음.(PlanEcon, *PlanEcon Trade and Finance Review*, No 2, 1992. 10, p.4.)

비중은 1985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89년 61.2%에서 1991년에는 48.8%로 하락하였다. 민간기업과 합작회사의 설립에 따라 기계 및 장비의 輸入增加로 투자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10%에서 1990년 13.3%, 1991년에는 14.2%로 점차 증가하였다. 한편 消費財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의 경우 10.2%에 불과하였는데, 그 비중이 점차 커져 1990년에는 17.9%, 1991년에는 이보다 8% 포인트 증가한 25.9%를 기록하였다. 이는 국영기업을 私有化한 결과, 민간기업에 의한 輸入增加에 따른 것이다.

폴란드의 商品用度別 輸入構造는 지역별 貿易構造가 변화함에 따라 변화되었다. 특히 1990년 1월 경제개혁 이후 자본설비의 輸入이 기존의 舊코메콘 지역에서 西歐國家로 전환되었다. 1990년 投資材 輸入의 경우 '루블地域'으로부터는 1989년에 비해 42.5% 감소한 반면 '硬貨地域'으로부터는 30.1% 증가하였다. 消費財의 輸入도 '루블地域'으로부터는 27.4% 감소한 반면 '硬貨地域'으로부터는 11.5% 증가하였다. 한편 中間財는 '루블地域'과 '달러지역'으로부터 각각 33%, 2.1% 감소하였다.⁷⁾

1989년 이후 비교적 높은 수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기계류, 금속제품, 식료품이다. 전체 수출액 가운데 기계류가 1990년 29.3%, 1991년 22.1%를 차지하였고, 금속제품은 각각 14.6%, 18.1%, 화학제품은 12.0%, 10.7%⁸⁾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이들 세 품목이 50~60%의 수출비중을 기록하였다.

1990년의 품목별 輸出은 전체적인 수출증대에 부합하여 거의 모든 商品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기계류의 수출은 전년에 비해 27.7% 증가한 27억 6,4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기계에 대한 국내 수요의 감소와 평가절하의 결과로 해석된다.

7) 폴란드의 1990년, 1991년의 상품별 硬貨 및 루블 貿易構造에 대한 통계는 <부표 4>를 참조할 것. 본 節에서 제시되고 있는 수치는 <부표 4>의 통계치에 의거한 것임.

8) 경화무역 뿐만 아니라 루블무역을 포함하여 계산한 비중임.

1990년 연료와 에너지의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30.0% 증가한 12억 7,7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연료와 에너지의 수출량은 전년에 비해 17.7% 증가함으로써 수출액 증가는 10.4%에 달하는 국내가격의 상승에 어느 정도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료와 에너지의 국내 가격 상승은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에 대한 국내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1990년에 가장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인 금속제품은 前年對比 68.6% 증가한 20억 6,100만 달러의 輸出을 기록하였다. 이는 금속생산자가 산출을 감소시켰지만 西歐市場으로의 輸出을 강화한 결과로 해석되며, 금속 제품의 수출은 국내 과잉공급에 대한 出口로서 작용하게 되었다.

금속 제품이외에 수출증가율이 비교적 높았던 부문은 화학제품(49.6%), 경공업제품(48.6%), 농산물(65.0%)이었다. 이들 제품의 경우에도 금속제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수요 감소로 인해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품목별 輸入比重을 살펴보면, 기계류가 1990년 39.8%, 1991년 38.9%로 수출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이어 연료가 각각 20.6%, 16.0%, 화학제품이 각각 11.5%, 12.3%를 보임으로써 이들 세 품목이 전체 수입의 약 70%를 차지하였다.

1990년의 품목별 수입은 기계류와 연료·에너지가 각각 전년대비 38.3%, 298.5%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화학제품, 금속제품, 농산물 등 거의 모든 품목의 수입이 감소하였다. 가장 높은 수입감소율을 기록한 품목은 농산물로 전년에 비해 61.3%가 감소하였다.

1991년의 품목별 수출을 살펴 보면, 국내경기의 침체로 국내 수요가 감소한 금속제품(12.9%), 목재 및 종이(66.6%), 건축자재(105.2%), 농산물(25.8%)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단일품목으로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기계류의 수출은 전년에 비해 21.1%가 감소하였다.

반면 1991년 품목별 수입의 경우는 목재 및 종이(148.6%), 건축자재(118.8%), 식료품(113.7%), 농산물(147.3%), 화학제품(73.2%), 기계류

〈表 II-6〉 폴란드 상품별 貿易構造의 變化

(單位: %)

品目	輸出			輸入		
	1990	1991	% 變化率	1990	1991	% 變化率
總計	100.0	100.0	-	100.0	100.0	-
機械類	29.3	22.1	-7.2	39.8	38.9	-0.9
燃料 및 에너지	10.3	10.2	-0.1	20.6	16.0	-4.6
金屬製品	14.6	18.1	+3.5	6.8	4.5	-2.3
化學製品	12.0	10.7	-1.3	11.5	12.3	+0.8
木材 및 종이	4.1	6.8	+2.7	1.6	2.5	+0.9
輕工業製品	6.4	6.0	-0.4	6.1	6.2	+0.1
食料品	10.0	9.9	-0.1	7.0	10.9	+3.0
農産物	5.4	6.4	+1.0	2.0	3.3	+1.3

註: 1) 1990년 不變價格 基準.

2) 上記 수치는 輕貨무역과 粗貨무역을 포함한 전체 무역에서 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資料: Foreign Trade Research Institute, *Polish Foreign Trade in 1991*, 1992,p.16.

(49.3%), 연료 및 에너지(44.0%) 등 거의 모든 품목에 걸쳐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금속제품의 輸入만이 전년에 비해 1.4% 감소하였다. 특히 소비재에 대한 수입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주로 민간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1991년 폴란드의 품목별 貿易構造의 변화를 각 지역별 貿易構造와 결부시켜 살펴보자.(<表 II-7> 참조) 1991년 폴란드의 品目別 貿易構造의 변화는 국내경제의 構造轉換과 舊코메콘 체제의 붕괴를 반영하였다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⁹⁾.

식료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舊코메콘 지역에 대한 수출은 1990

9) 1991년 폴란드의 품목별 貿易構造에 대해서는 <부표 4>를 참조할 것

〈表 II-7〉 地域別-品目別 貿易構造(1991)

(單位: 1990年=100)

	電氣· 電子	燃料 및 에너지	金屬 製品	化學 製品	木材 및 종이류	輕工業 製品	食料品	總計
輸 出	74.4	99.6	122.4	87.7	165.1	93.1	97.4	98.6
E C	113.5	90.8	137.1	95.2	201.7	114.3	101.0	120.9
舊코메콘	42.6	48.1	81.6	57.3	77.4	44.4	207.2	58.2
기타국가	84.3	123.4	104.4	93.5	95.2	85.4	74.6	92.5
輸 入	135.9	108.2	92.3	148.4	220.2	142.8	194.2	139.0
E C	143.1	114.7	121.3	157.2	312.2	157.6	229.2	159.4
舊코메콘	89.2	56.0	24.2	88.8	74.4	46.8	240.2	66.4
기타국가	144.3	224.5	120.4	147.2	184.8	144.6	139.6	160.0

註: 上記 수치들은 1990년 不變價格을 基準으로 한 硬貨 및 루블무역량의 變화를 나타냄. 이에 따라 <부표 5>의 수출입량의 변화율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資料: Foreign Trade Research Institute, *Polish Foreign Trade in 1991*, 1992, p.17

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EC에 대한 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로써 EC 시장은 폴란드의 가장 큰 輸出市場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목재 및 종이의 對EC 수출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금속제품은 1990년에 비해 37.1%, 전기 및 전자제품은 13.5% 증가하였다. 전반적인 수출증가율 둔화에 따라 EC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 품목도 나타났다는데, 연료·에너지와 화학제품이 대표적인 예이다.

1991년 輸出實績과 마찬가지로 舊코메콘 지역으로부터의 輸入도 식료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걸쳐 감소하였다. 특히 금속제품의 이 지역으로부터의 輸入은 전년에 비해 76.8% 감소하였으며, 경공업제품과 연료·에너지 또한 전년대비 50% 정도가 감소하였다. 전체 품목의 輸入도 前년에 비해 3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C국가로부터의 輸入은 全品目에 걸쳐 증가하였는데, 특히 목재 및 종이, 식료품, 화학제품의 輸入增加率은 전년대비 50~200% 정도

상승하였다. 開途國을 비롯한 기타국가로부터의 수입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中東 産油國으로부터의 原油輸入이 전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개도국으로부터의 전기·전자제품의 수입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主要 對外關係

제1장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1990년 이후 폴란드의 貿易은 以前の 舊 코메콘 국가 중심에서 西方先進國, 특히 EC 편향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1991년 12월 폴란드의 EC 準會員國 加入協定 체결 이후 가속화되고 있고, 향후 關稅政策을 비롯한 貿易政策 역시 EC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폴란드는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와 함께 自由貿易地帶를 창설하기 위한 협정을 1992년 12월 중순에 체결하였다. 이는 東歐 3國間¹⁰⁾ 경제블록의 형성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EC 加入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도 폴란드의 'EC 지향적'인 貿易政策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본節에서는 1991년 12월 체결된 'EC準會員國 加入協定'의 내용, 東歐 3國間 自由貿易地帶 創設을 통한 EC 定會員國 加入 추진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0) 체코슬로바키아 聯邦은 聯邦議會의 합의에 따라 1993년 1월 1일부로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분리, 독립할 예정이나, 本考에서는 1992년까지의 자료와 내용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이들 兩公화국을 한 국가로 간주하여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는 東歐 3國이라는 범주로 간주함.

가. 폴란드의 EC 準會員國 가입협정 체결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舊유고 聯邦은 1989년부터 EC에 가입하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EC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으나 1990년 舊코메콘 국가들의 市場經濟로의 개혁을 전제로 EC 準會員國 加入을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안하게 되었다.

오랜 협상 결과 1991년 12월 16일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東歐 3國은 EC와 EC準會員國 加入協定을 체결하였다. 특히 EC와 폴란드間 準會員國 加入協定은 이미 1989년 체결된 兩 당사자간 貿易 및 經濟協力 協定을 확대함과 동시에 EC가 폴란드의 경제개혁을 支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협정은 유럽 議會, 폴란드 議會, EC 12개 會員國의 비준을 받은 후 2개월 후에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비준절차가 복잡한 관계로 경제부문에 관한 準會員國協定은 소위 臨時協定(Interim Agreement)에 의해 1992년 3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EC準會員國 加入協定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貿易協定이다. 이 협정에 따르면 1991년 이후 10년 이내에 東歐 3國과 EC間에 自由貿易地帶가 형성된다. 1992년 3월 貿易協定이 발효됨과 동시에 당사국들은 대부분의 輸入쿼터를 폐지하였고 關稅를 자유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독일과 스페인이 각각 석유와 석탄에 대해 貿易自由化 품목에서 제외한 한편, 폴란드는 中古 自動車와 2行程사이클 엔진이 부착된 自動車, 그리고 일부 석유제품에 대해 輸入쿼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EC-東歐 3國간 체결된 貿易協定에는 EC가 東歐 3國에 대해 産業構造 再編을 위해 경제원조를 실시하고 東歐 3國에 비해 3년 이른 1998년까지 工產品 市場을 개방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EC와 폴란드間 체결된 貿易協定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EC의 對폴란드 輸入

EC의 對폴란드 工產品 輸入은 <表 II-8>과 같은 여섯개의 부류로 구분되어 관세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섬유와 석탄의 경우는 輸入量의 규제가 계속 존재하게 된다.

<表 II-8> EC의 對폴란드 輸入品의 關稅率 조정계획
(단위: 1991년 關稅率의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폴란드의 對EC수출비중(1990)
부류 1(섬유)	71	71	57	43	29	14	15.1
부류 2(철강)	80	60	40	20	10	0	5.5
부류 3(비철금속)	50	0	0	0	0	0	0.2
부류 4(화학원료)	80	60	40	20	0	0	0.4
부류 5(자동차 등)	85	70	55	40	25	0	22.9
부류 6(기타)	0	0	0	0	0	0	54.8

資料: Gabrisch, H, *WIIW-Mitgliederinformation*, 1992.1, p.4

- ① 제 1부류는 섬유류로서 1990년 말까지 EC의 對폴란드 工產品 輸入의 15%를 차지하였다. 이 분야의 협상이 가장 어려웠는데, 수량 제한(Quantitative contingents)의 철폐에 관해서는 1992년 섬유협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첫번째 무역자유화 단계로 1992년까지 1991년에 적용되었던 關稅率의 71%까지 관세율이 하향 조정되며, 이어 1994년 1월부터는 57%까지 관세율이 낮추어질 것이다. 1998년 1월 1일부터는 폴란드 섬유류에 대한 수입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 ② 제 2부류는 철강제품으로서 1990년 말까지 EC의 對폴란드 工產品 輸入의 5.5%를 차지하였다. 이 품목에 대한 輸入關稅率은 1992년부터 20%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삭감되어 1997년 1월 부터는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 ③ 제 3부류는 비철금속으로서 1990년말까지 EC의 對폴란드 工產品 輸入의 0.2%를 차지하였다. 이 분야의 輸入關稅는 EC準會員國 협

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50% 인하되고 1993년부터는 관세가 철폐된다.

- ④ 제 4부류는 화학원료로서 1990년말까지 EC의 對폴란드 工產品 輸入의 0.4%를 차지하였다. 이 분야의 輸入關稅는 1991년의 관세율에서 연차적으로 20% 포인트씩 감소하여 1996년부터는 관세가 철폐된다.
- ⑤ 제 5부류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화학제품, 신발, 유리, 세라믹 제품 등은 1990년 말까지 EC의 對폴란드 工產品 輸入의 약 23%를 차지하였다. 이들 품목의 관세율은 1991년의 관세율에서 연차적으로 15% 포인트씩 감소하여 1997년부터는 관세가 철폐된다. 추가적으로 1992년에는 1991년 수입품 중 免稅輸入量 비중을 60%로 증대시키고 차후 연차적으로 그 비중을 20% 포인트씩 증가시킬 예정이다. 자동차의 경우 EC準會員國 협정이 발효되는 1992년에 EC는 1억 5천만 ECU에 해당하는 약 4만~5만대의 폴란드產 자동차를 無關稅로 輸入할 수 있다. 1억 5천만 ECU의 無關稅 수입쿼타를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도 1992년의 關稅率이 10%에서 8.5%로 인하된다. 1993년에는 免稅輸入量이 1억 8천만 ECU로 증대하며 이 쿼타를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關稅率이 7%로 하향 조정된다.

〈表 II-9〉 EC의 폴란드 자동차 免稅輸入量

	1992	1993
免稅輸入量(만 ECU)	15,000	18,000
쿼타초과 關稅率(%)	8.5	7.0

- ⑥ 1990년 말 현재 EC의 폴란드 工產品 輸入 중 55%를 차지하는 기타 工產品에 대해서는 EC준회원국 협정이 발효되는 1992년 3월부터 관세가 전면 철폐되었다. 폴란드측의 집계에 따르면 EC의

폴란드 工産品에 대한 平均 輸入關稅率은 1992년 23%, 1993년 20%, 1994년 14%, 1995년 9%, 1996년 5.5%, 1997년 2%, 1998년 0%로 하향조정된다.

한편, 폴란드産 農産物의 對EC 輸出 自由化는 다음과 같은 6개의 부류로 분리되어 1992년부터 시행된다.

- ① 오리, 돼지, 고기제품과 전분에 대해서는 1991년의 關稅率을 50% 引下하고 매년 10% 포인트씩 輸入쿼터를 증가시킨다.
- ② 말, 돼지, 생선, 사슴고기, 꿀, 꽃, 양고추냉이, 오이, 아스파라거스, 체리, 딸기(이들 품목들의 最低價格 또한 변화될 수 있음), 양파, 사과주스 등은 輸入量 制限없이 30%에서 100%까지 關稅를 면제 받을 수 있다.
- ③ 220~300Kg의 소에 대한 1991년의 關稅率은 75% 引下되고, 輸入量 쿼터 또한 每年 10%씩 확대시킨다.
- ④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류, 분유, 치즈, 계란 등은 每年 10%씩 輸入쿼터를 확대함과 동시에 每年 20%씩 關稅率을 引下한다.
- ⑤ 과일과 야채는 每年 10%씩 輸入 쿼터를 擴大하고 關稅率은 점진적이고 차등적으로 引下된다.
- ⑥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每年 10%씩 輸入쿼터를 확대하고 關稅率은 점진적으로 引下된다.

2) 폴란드의 對EC 輸入

EC 準會員國協定の 經濟部分이 發效되는 1992년 3월부터 폴란드는 EC로부터의 輸入品 중 源資材와 投資材를 중심으로 한 工産品の 약 27%에 대해 關稅를 철폐하였다. 나머지 73%의 工産品에 대한 輸入自由化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關稅率은 1991년 基準 關稅率에서 매년 20% 포인트씩 引下된다.

그러나 소위 '自動車協商案(car package)'에 의하면 EC로부터 輸入되는 자동차와 트럭은 이러한 關稅率 調整에서 제외된다. 1992년 초 특혜

관세의 쿼터범위를 초과하는 EC産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關稅率은 일률적으로 35%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관세율은 1992년과 1993년에 계속 적용되며 1994년과 1995년에는 30%로, 1996년과 1997년에는 25%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년 5% 포인트씩 引下될 예정이다. 그러나 1992년 7월 1일부터 폴란드는 25,000대의 EC産 自動車에 대해 35%가 아닌 15%의 特惠關稅를 적용하고 있으며 매년 1,250대씩 그 쿼터를 증대시킬 예정이다.¹¹⁾

〈表 II - 10〉 폴란드의 對EC 자동차 관세인하 계획

年 度	1992	1993	1994	1995
關稅率(%)	35	35	30	30
特惠關稅(15%)쿼터(대)	25,000	26,250	27,500	28,750

또한 100대의 EC産 트럭에 대해서도 無關稅쿼터를 적용할 예정이며 1993년부터는 매년 10%씩 증대시킬 예정이다. 매연방지기(catalytic converters)가 부착된 5,000대의 新型 自動車에 대해서도 無關稅쿼터를 적용하고, 이를 매년 10%씩 增大시킬 예정이다.

한편, 農産物의 경우 폴란드의 EC 準會員國 加入 協定이 발효되는 1992년 3월 1일부터 폴란드는 EC로부터의 輸入 農産物의 15%에 대해 關稅率을 10% 포인트 引下하고 5년 이내에 輸入 쿼터를 철폐할 예정이다. 關稅率이 引下되는 農産物은 폴란드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소규모로 생산되는 農産物, 예를 들면 감귤과 감귤로 가공된 농산물, 요구르트, 치즈, 와인, 맥주 등이다.

11) 그러나 特惠關稅 輸入쿼터 조정을 둘러싼 폴란드와 EC間 논쟁이 마무리되지 못함으로써 양 당사간 자동차 輸入에 관한 논쟁은 심화되고 있음. 폴란드는 원래 이탈리아 피아트社, 독일 폭스바겐社에 한정하여 25,000대의 自動車에 대해 特惠關稅 쿼터를 설정하였으나 다른 EC 自動車 제조업체의 반발이 거센 상태임.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92. 10. 7일자)

〈表 II-11〉 品目別 對EC 輸出入 比重(1990) 및 關稅率(1992)

CN코드 분 류	品 目	輸入比重 (%)	平均關稅率 (폴란드, %)	輸出比重 (%)	平均關稅率 (EC, %)
1	산 동물	1.8	23.6	10.8	—
2	채소	6.6	18.9	7.6	—
3	지방 및 식용유	0.8	21.7	0.2	—
4	식료품	5.5	43.9	3.9	—
5	광물	3.4	14.1	10.4	1.0
6	화학제품	10.0	15.1	7.0	8.5
7	플라스틱	3.9	15.6	3.0	8.6
8	가죽 및 모피	1.1	19.7	1.1	5.3
9	가죽 및 모피 제품	0.1	14.6	4.8	3.3
10	종이류	1.7	13.7	0.9	7.4
11	섬유(제품포함)	12.0	18.5	12.1	14.0
12	양말	1.1	19.4	1.7	8.0
13	석제품 및 시멘트	1.2	16.2	1.6	9.4
14	진주, 보석	0.1	23.4	0.8	0.0
15	기초금속	6.3	14.9	17.5	2.9
16	기계류	32.6	16.0	8.5	5.7
17	운송장비	6.2	20.3	3.3	6.6
18	정밀기계	3.5	15.4	0.5	3.6
19	무기류 및 탄약	0.1	35.0	0.0	6.0
20	잡화류	1.9	18.8	4.2	5.6
21	예술품	0.2	0.0	0.1	0.0
계		100.0	18.3 ¹⁾	100.0	— ²⁾

註: 1) 평균관세율을 의미함.

2) 농산물의 경우 관세율 산정이 불가능하여 산업 평균관세율을 산정하지 못함.

資料 : Kawecka-Wyrzykowska, E, "Implications of the Association Agreement with the European Communities for Poland," in Foreign Trade Research Institute, *Re-Integration of Poland into the West European Economy*, Warsaw, April 1992, p.76.

한편 1990년 폴란드의 對EC 각 품목별 輸出入 비중과 1992년 초 현 재 兩地域의 품목별 平均關稅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表 II -11>참조)

우선 폴란드의 對EC 관세율이 EC에 비해 평균 약 5~10% 포인트 정도 높음을 알 수 있다. 폴란드의 경우 농산물과 식료품, 무기류 및 탄약에 대해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으며 EC는 섬유류에 대해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는 對EC 輸入 비중이 높은 화학제품, 섬유류, 기계류에 대해 15~18%의 關稅率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EC는 폴란드産 광물, 기초 금속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1~3%의 關稅率을 책정하고 있는 반면 섬유류에 대해서는 14%의 높은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폴란드는 EC準會員國 協定을 체결함으로써 우선적으로 EC로부터 工產品의 27%를 無關稅로 輸入하는 반면, EC는 폴란드로 부터 工產品의 55%를 無關稅로 輸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無關稅 輸入 정도를 기준으로 EC準會員國 協定이 폴란드에 전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였다고 단언할 수 없다.

폴란드를 비롯한 東歐국가들이 EC 가입을 통해 국내 경제구조를 西歐國家와 비슷한 형태로 재편함으로써 경제를 재건하려는 근본취지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다음과 같은 비용과 과제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EC準會員國 協定이 체결됨에 따라 폴란드의 對EC 貿易收支가 악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1990년 폴란드의 對EC 輸出은 64억 2,400만 달러, 輸入은 41억 5,600만 달러로 22억 6,8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1년 폴란드의 對EC 輸入은 前年對比 76% 증가한 반면, 輸出은 단지 21.5%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이와 같은 무역추세를 고려해 보았을 때, 폴란드는 EC準會員國 協定の 체결로 EC에 매년 工產品 15~20% 정도와 農産物 20~27%의 수출 증대 효과를 볼 것이라는 對外貿易部의 평가¹²⁾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對EC 貿易收支 흑자기조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12) Gabrisch, H, *WIIW-Mitgliederinformation*, 1992. 1. p.5.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폴란드의 輸入은 주로 民間企業이 주도하고 있는 한편 輸出은 주로 國營企業이 주도하고 있는데, 국영기업의 구조개혁 지연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고려하면 무역수지의 흑자유지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섬유(부류 1)와 철강(부류 2)에 대한 關稅引下 협정은 폴란드에게 불리하게 체결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EC일부 국가들이 自國의 섬유와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해 산업보조금 지급 등 非關稅障壁을 유지한 채 폴란드産 섬유와 철강의 EC진입을 최대한 지연시킨 반면, 폴란드는 1980년대 말과 1990년 초에 급진적인 무역정책의 실시로 산업보조금 등 非關稅 장벽을 거의 제거하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1989년의 경우 EC의 東歐 3國으로부터의 섬유류 輸入(SITC 65)이 總輸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3%에 불과하고 철강(SITC 67)은 0.04%에 지나지 않았던 반면, 폴란드의 경우 總輸出에서 對EC 섬유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철강제품은 5.5%였다.

셋째, 자동차의 경우 폴란드는 1991년 7월 부터 EC자동차 25,000대에 대해 特惠關稅率 15%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EC측의 10% 關稅率에 비해 상대적으로 폴란드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폴란드는 EC에 대해 35%가 아닌 15%의 關稅率로 25,000대의 自動車 輸入쿼터를 할애하였으며 25,000대를 기준으로 매년 5%씩 輸入쿼터를 늘려나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1990년 폴란드의 自動車 輸入은 總 34,000대로 이 중 EC가 차지하는 비중은 41%인 14,100대를 기록하였고 1991년 8월말 현재 폴란드의 자동차 總輸入은 21,000대로 1990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과거의 실적을 통해 우리는 1992년 이후 폴란드의 對EC 자동차 輸入은 15%의 특혜관세를 하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태를 우려한 폴란드 정부는 EC에 대해 자동차 關稅率의 추가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거절되고 말았다.

넷째, 협정체결로 폴란드 제조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폴란드 기업의 낮은 기술수준과 많은 산업부문에서의 獨占持續, 私有化 不進 등의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폴란드는 시장경제로의 전환비용을 극소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생산규모의 확대와 장기적인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통한 생산능력 극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폴란드와 EC間 품목별 무역구조는 매우 異質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폴란드의 對EC 수출품은 주로 에너지와 勞動集約的인 성격을 띤 반면 EC의 對폴란드 수출품은 製造品 등 技術集約的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폴란드는 EC에 정식적으로 통합되기 위해서 産業構造 再編 등 대외경쟁력 강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나. 東歐 3國間 自由貿易協定 체결

80년대 후반 中·東유럽국가의 경제악화로 이들 지역간의 무역관계가 붕괴되자 東歐 3國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는 중앙계획경제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식하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經濟改革을 단행하였다.

이들 국가에서 시행된 改革政策은 그 내용이나 속도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폴란드는 헝가리와 달리 급진적인 개혁을 실시한 한편 체코슬로바키아는 漸進的인 改革策을 실시—궁극적으로 西歐社會, 특히 EC 國家로의 編入을 추구한다는 공동목표를 갖고 있었다.¹³⁾ 이러한 공동목표는 EC 定式 加入과 EFTA국가와의 自由貿易地帶 創設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들 3국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西歐국가와의 경제적 격차를 축소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13) 이들 3국 頂上들은 1991년 10월 이후 비셰그라드와 크라쿠프에서 회담을 갖고 공동 목표로서 상호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EC에 加入하는 것임을 공식 발표함.

1)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의 經濟現況

〈表 II-12〉에서 알 수 있듯이,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 東歐 3국은 1990년 이후 심각한 경기침체에 직면하고 있다.¹⁴⁾ 各국별로 수치상 편차는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GDP감소, 投資감소, 農業生産量감소, 國內 需要의 감소, 失業증가, 높은 물가상승률, 높은 外債부담 등의

〈表 II-12〉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의 主要經濟指標(1989~1991)
(단위: 增加率 %)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1989	1990	1991	1989	1990	1991	1989	1990	1991
國民所得 ¹⁾	0.2	-15.0	-5.9	0.2	-5.0	-7.5	1.4	-0.4	-15.9
投資	-2.4	-7.1	-11.2	-0.5	-7.0	-12.5	1.6	4.0	-36.0
工業生産	-0.5	-24.0	-13.1	-1.0	-8.5	-19.6	0.7	-3.7	-21.3
農業生産	-1.5	-2.2	-2.1	-1.3	-6.5	-11.5	1.8	-3.7	-8.4
物價上昇率	243.8	616.9	73.0	17.0	28.9	35.0	1.4	10.0	54.1
輸出	-3.1	4.8	-1.5	-3.3	-2.3	24.2	-3.0	-16.7	54.9
輸入	-15.6	-9.5	38.5	-5.5	-2.7	53.7	-2.2	-6.6	35.6
貿易收支 (100만 달러)	767	3,766	-823	537	348	189	187.9	-1278	947.9
失業率	0.1	6.1	8.8	0.3	1.7	1.9	11.6	11.5	10.2
總外債 (10억 달러)	40.8	48.5	34.5	20.6	21.3	22.6	7.9	8.1	9.4

註: 1) 폴란드, 헝가리의 1989년, 1990년 국민소득은 GDP로 計算되었으며 체코 슬로바키아는 NMP로 측정됨.

資料: 1) Foreign Trade Research Institute, *Economic Cooperation among Poland, Czechoslovakia and Hungary*, 1992. p.19.

2) FSO, *Selecte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dicators of CSFR*, 1992.3

3) National Bank of Hungary, *Annual Report, 1991*, 1992.7

14) 이들 3국 가운데 폴란드가 최초로 1992년 중반 이후 輸出回復, 産業生産增加에 힘입어 92년 예상 GDP성장률 0%(前年對比), 93년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現象이 초래되었던 것이다.

특히 최근 3년동안 급격한 속도로 진행된 中·東歐의 해체는 이들 3국간의 무역에서도 드러났다. <表 II-13>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東歐 3國은 經濟改革 이후 對EC무역이 증가한 반면 舊코메콘 유럽국가와의 무역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폴란드를 비롯한 東歐 3國과 EC간의 貿易現況을 살펴 보았을 때 東歐 3國이 EC 貿易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은 편이다. 반면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의 무역에서 EC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表 II-13> EC의 對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貿易規模(1990)

	전 체	EC域外	폴란드	헝가리	체코	東歐3국총계
輸入(10억 ECU)	1129.1	462.7	5.3	3.0	2.8	11.1
%	100.0	41.0	0.5	0.3	0.3	1.1
%	-	100.0	1.2	0.7	0.6	2.4
輸出(10억 ECU)	1081.4	419.8	4.9	3.2	2.9	11.0
%	100.0	38.8	0.5	0.3	0.3	1.1
%	-	100.0	1.2	0.8	0.7	2.6

資料: WIIW-Mitgliederinformation, 1992.1, p.2

<表 II-14>에서 알 수 있듯이 폴란드 뿐만 아니라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도 선진국과의 貿易比重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이들 국가 중에서 선진국과의 貿易比重이 가장 높은 국가는 폴란드인데, 1989년에 이르러 先進國과의 무역비중은 50%를 초과하였다. 특히 1989년의 경우 EC 국가와의 貿易比重은 40%선이었으나 經濟改革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991년 이 수치는 50%를 초과하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 선진국과의 貿易比重이 높은 국가는 헝가리로서 폴란드보다 약 5% 포인트 낮은 추세에 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 선진국과의 貿易比重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35~50%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東歐 3國 중 폴란드의 對 EC 무역비중이 높은 이유는 폴란드의 貿易政策이 다른 東歐 국가에 비

해 더 개방적인 성격을 띠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表 II-14〉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의 地域別
貿易構造(1989~1990)

(단위: %)

國 家	年 度	先 進 國				舊코메콘 ¹⁾	開途國 ²⁾
		전 체	E C	EFTA	기 타		
輸 出							
폴란드	1989	53.0	36.9	10.5	5.6	30.9	16.1
	1990	65.0	46.7	13.3	5.0	22.2	12.8
헝가리	1989	—	30.2	10.7	—	36.4	—
	1990	52.8	35.3	12.0	5.5	28.8	18.4
체 코	1989	37.8	24.8	8.5	4.5	48.3	13.9
	1990	46.5	30.6	10.9	5.0	39.3	14.2
輸 入							
폴란드	1989	57.8	38.6	14.5	4.7	28.4	13.8
	1990	63.9	42.5	6.7	4.7	25.4	10.7
헝가리	1989	—	35.2	13.8	—	33.4	—
	1990	57.4	36.9	15.3	5.2	28.1	14.5
체 코	1989	39.0	25.9	10.9	2.2	48.2	12.8
	1990	50.8	32.0	15.9	2.9	36.2	13.0

註: 1) 舊동독은 1990년 EC국가로 편입됨.

2) UN분류에 의거하여 중국, 북한, 라오스 및 舊유고연방은 開途國에 포함됨

資料: Foreign Trade Research Institute, *Economic Cooperation among Poland, Czechoslovakia and Hungary*, 1992, p. 21.

여기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東歐 3國의 對EC 輸入依存도가 輸出依存도에 비해 1~2% 포인트 정도 높다는 것이다. 이는 東歐 3國의 對EC 무역이 '80년대 후반 이후 舊코메콘 시장의 붕괴 추세를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東歐 3國의 상품이 EC에 진출하는데에는 여전히 기술적인 문제 뿐 아니라 EC의 무역장벽이 엄존함을 보여 주는 一例로 보

이다. 특히 이들 東歐 국가의 對EC 주요 輸出品은 農産物, 석유류, 철강 제품 등인데, 이들 품목은 비교적 EC의 무역장벽이 높은 편에 속한다.

한편 東歐 3國의 經濟가 회복되기에는 최소한 2~3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이들 東歐국가가 對EC무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産業競爭力 강화를 위한 經濟構造의 再編이 절실하다 하겠다. 특히 國內資本이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구조의 재편을 통한 경제구조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外債유치를 통한 국영기업의 사유화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 東歐 3國간 무역장벽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東歐 3國間 무역을 제약하고 있는 근본적인 요인은 이들 국가의 경기침체에 따른 消費財 및 投資材 수요의 감소이다. 게다가 재정결핍은 이들 국가의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 현안이기도 하다.

1991년 현재 이들 東歐 3國 중 가장 무역장벽이 높은 국가는 체코슬로바키아이다.¹⁵⁾ 체코슬로바키아는 輸出品 중 약 1/3에 대해 免許制를 적용하고 있는데, 輸入品에 비해 輸出品에 대한 免許制 적용 범위가 다소 넓다. 1991년 6월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쇠고기와 버터에 輸入免許를 적용하였고 同年 10월에는 감자, 전분, 마가린, 포도당, 포도주에 대해 수입쿼터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貿易障壁 외에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間 무역장벽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企業硬貨保有에 대한 制限이다. 비록 체코슬로바키아 貨幣인 코르나의 內的 兌換化가 1991년 1월 도입되었지만 체코슬로바키아 기업의 硬貨保有는 제약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一例로 체코슬로바키아 法人은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許可를 받아

15) Foreign Trade Research Institute, *Economic Cooperation among Poland, Czechoslovakia and Hungary*, 1992, p.15.

야만 코르나貨를 硬貨로 兌換할 수 있다. 이외에도 체코슬로바키아 企業의 貿易決濟 능력의 부족은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間 무역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헝가리의 수출입 규제책은 舊코메콘 국가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에도 적용되고 있다. 1991년말 현재 헝가리의 平均輸入關稅率은 13%이다.¹⁶⁾

헝가리의 무역장벽은 체코슬로바키아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輸出入 免許制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우선 輸入免許制는 석탄, 철광석, 건설 및 조립부품, 무기, 승용차, 일부 화학제품 및 소비재 등 全품목의 10% 정도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한편 輸出免許制는 에너지수송, 전기에너지, 철강제품, 섬유, 일부 식료품 등 全품목의 25~30% 정도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消費財 輸入에 대해 쿼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폴란드와 헝가리間 소비재 貿易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3) 自由貿易地帶 創設

1992년 말 東歐 3國間 自由貿易地帶 創設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1991년 당시 關稅의 33%가 무역자유화 제1단계에서 철폐되고 제2단계에서는 66%, 그리고 제3단계에서는 전면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폴란드 Foreign Trade Research Institute의 분석에 따르면,¹⁷⁾ 무역자유화에 따른 關稅收入의 감소로 폴란드 정부의 재정수입은 감소될 것이지만, 수출업계의 입장에서는 폴란드產 제품의 價格競爭力 강화에 따라 수출증대 및 이에 따른 收入증가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收入增加는 국가재정수입의 감소를 補填할 것으로 예상된다.

16) MFN에 해당함.

17) *ibid*(1992), pp.27~36.

〈表 II -15〉 東歐 3國間 自由貿易地帶 창설에 따른 폴란드의 經濟效果
(단위: 10억 즐로티)

비용 및 수익	輸入關稅 제거 단계		
	I (輸入關稅 1/3제거 :賣出 10%증가)	II (輸入關稅 2/3제거 :賣出 20%증가)	III (모든 輸入關稅제거 :賣出 30%증가)
A. 財政收入	-305.0	-658.0	-1060.0
B. 수출업계의 收入	300.0	650.0	1050.0
C. 輸入價格의 하락에 따른 이 득	1800.0	2975.0	4750.0
합 계	+1795.0	+2967.0	+4740.0

註: 예상 수입 및 비용은 1990년 기준치임.

資料: Foreign Trade Research Institute, *Economic Cooperation among Poland, Czechoslovakia and Hungary*, 1992, p.38.

〈表 II -15〉는 東歐 3國간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라 폴란드가 부담하게 될 예상 비용과 얻게 될 예상 수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되어야 할 것은 위에서 얻은 예상치들은 1991년 關稅率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었기 때문에 關稅率의 변화에 따라 위 결과 또한 변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역자유화에 따라 財政收入의 감소와 수출업계의 收入增加는 서로 상쇄되는 추세를 보여 결국은 국내가격과 생산비용의 하락 효과¹⁸⁾가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自由貿易地帶 창설과정에서 일종의 조정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EC국가 뿐만 아니라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값싼 제품이 수입될 경우, 폴란드産 제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재분배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8) 自由貿易地帶 창설에 따라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 商品이 輸入될 경우, 운송수단, 기초 건축자재, 정밀기계 공업제품, 전기·전자 제품의 國內價格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ibid*(1992), p.33 참조).

Ⅲ. 貿易政策

1989년 이후 이른바 ‘衝擊療法’이라는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폴란드 정부의 貿易政策은 다른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매우 급진적인 성격을 띠었다. 기존의 중앙계획경제가 안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경제부문에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貿易側面에서도 시장경제국가의 關稅 및 外換制度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 정부는 1989년 12월 關稅法¹⁹⁾과 外換法의 개정을 통해 각각 對外貿易의 自由化 및 外換規制의 完化라는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폴란드 무역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對外貿易의 自由化라는 무역정책의 기초하에서 폴란드 정부는 1989년 이후 2년 동안 貿易障壁을 제거하여 왔으며, 輸出入規制를 完化하였다. 특히 輸出業體에 대한 國家補助金 支給, 換率變動에 대한 보상,²⁰⁾ 규제가격에서의 貿易決濟 뿐만 아니라 輸出關稅賦課 등이 철폐되었다. 결국 이와 같은 對外貿易의 自由化 조치에 따라 환율과 관세가 대외무역을 조절하는 주요 수단으로 부각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 貿易自由化

경제개혁 이후 무역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貿易障壁을 제거함으로써 貿易自由化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행된 貿

19) 1989년 개정된 關稅法은 이하 ‘新關稅法’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이후 1991년 6월 개정된 關稅法에 대해서는 ‘改正 關稅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20) 補償決濟시스템은 과거 舊코메콘 국가간 체결된 貿易契約 중 루블貨 결제에 서만 예비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貿易自由化 조치로는 ① 貿易業의 單一化, ② 國家獨占貿易의 緩和, ③ 輸出入規制의 완화를 들 수 있다.

가. 貿易業의 單一化

新관세법이 도입된 1989년 이전까지는 폴란드 對外經濟關係部 장관이 위임한 경제주체의 貿易은 商業貿易으로 분류된 반면, 다른 法人 내지 自然人에 의한 貿易은 非商業貿易으로 분류되었다. 輸出入 關稅는 단지 非상업무역에만 적용되었다. 이와 같이 商業貿易과 非商業貿易(개인용으로 판정된 물품의 반출입)으로 분리되었던 기존의 무역은 新關稅法의 도입으로 일종의 非商業貿易으로 單一化되었다.

대외무역의 통합원칙의 수용에 따라 국영무역업체에만 주어진 무역특혜 또한 철폐됨으로써 關稅法 규정에 의한 무역업체간 권리 및 의무의 균등화가 확립되었다. 이에 따라 무역업체의 관세의무와 통관절차에서의 권리와 의무가 균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貿易의 통합화와 貿易業體間 권리 및 의무의 균등화가 확립된 결과 관세의 균등한 부과가 실현되었다. 이로써 무역에 종사하는 모든 경제주체는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지불하게 되었다. 또한 硬貨輸入의 경우는 물론이고 폴란드가 청산거래를 하고 있는 舊코메콘 국가로부터 輸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關稅가 부과되게 되었다.

나. 國家獨占貿易의 緩和

1989년 폴란드에는 약 3천개의 貿易法人이 존재하였는데 그 중 115개는 國營對外貿易機構(FTO)로서 이들 국영무역업체가 1988년에는 總輸出의 91.5%, 總輸入의 96.3%, 1989년의 경우는 總輸出의 84%, 總輸入의 91.4%를 차지하였다.²¹⁾

21) 對外經濟政策 研究院 부설 北方地域센터, 『폴란드 便覽』, 1992, pp.176-177.

國營貿易機構에 의한 對外貿易의 독점은 1988년부터 축소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民間企業에 의한 輸入이 두드러졌다. 1990년의 경우 민간기업은 수출 4.9%, 수입 14.4%를 기록하였는데, 1991년에는 輸出 21.9%, 輸入 49.9%로 증가하였다. 이 결과 1991년 國營貿易部門의 貿易收支는 32억 8,9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民間部門의 貿易收支는 32억 9,2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²²⁾ 民間部門의 輸出은 목재, 경공업제품, 농산물과 식료품이 주를 이루었고 輸入의 경우는 전자제품과 자동차, 석유류 등 소비재가 주를 이루었다.

對外貿易에서 민간부문의 신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추세와 동시에 대규모 國營 貿易業體들은 FTO와는 별도로 판매망을 구축하고 해외대표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독자적인 대외무역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 1989년 Agro社, Hortex Interpegro社, Animex社, Polcoop社 등이 식품부문 교역의 30~80%를 차지한 것과 Ciech社와 Impexmeta社가 각각 화학부문과 구리부문에서 단일수출업체로 등장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기타 원자재 부분의 교역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폴란드 국영 무역업체는 무역실무의 경험과 자본(인적자본 포함)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산업부문의 국영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악화 등 제반문제를 안고 있어 私有化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연되어 왔던 사유화작업이 1993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Universal社를 비롯한 일부 國營 무역업체에 대한 사유화를 완료하였는데, Elektrim社의 주식은 1992년에 바르샤바 주식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國營 무역업체의 사유화와 동시에 약 1만 개에 달하는 개인 무역업체가 소규모이긴 하지만 대외무역에 참여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민간교역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국가소유 및 민간참여의 합

22) GUS(Central Statistical Office), *Handel Zagraniczny January-December 1991*, 1992.

착주식회사와 협동조합 등의 대외무역 참여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 輸出入規制의 緩和

과거 중앙계획경제하에서는 수입규제 뿐만 아니라 수출규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수출의 경우 주요 전략 산업을 포함한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제를 적용하였고, 수입의 경우도 국내 수입업체의 수입목적을 고려하여 수입허가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무역을 규제하였다.

'80년대에 실시된 이러한 무역규제는 무역업체들이 수출을 통해 획득한 硬貨收入의 보유한도를 확대함에 따라 점차 완화되었다. 그리고 1988년 폴란드 정부가 무역업체의 硬貨買入을 허용함으로써 무역규제의 완화는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무역규제의 완화는 무역거래 품목을 다양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무역 중개업체의 출현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輸入規制는 1989년 12월 新關稅法이 도입됨으로써 거의 폐지되었다. 新관세법은 수입허가증의 취득의무를 대폭 완화하였고 단지 일시적 수입제한 품목, 수입쿼터 적용 품목, 수입허가증 요구 품목, COCOM(對공산권무역규제위원회) 항목에 기재된 품목, 임대차 契約下에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생산·운송 수단에 대해서만 輸入을 규제하였다.

또한 비록 1989년에는 西方國家의 수입쿼터적용을 받는 철강제품, 섬유류, 농산물 등 기초 원자재와 일부 품목을 輸入하고자 하는 輸入業體는 대외경제관계부가 발행하는 무역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였지만, 1990년에는 그 범위가 동위원소, 방사능 물질, 군사장비에만 국한되게 되었다.

폴란드 정부는 1990년과 1991년 알콜류를 제외하고는 다른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2년 초에는 석유, 가솔린, 디

젤원유, 담배, 포도주 및 맥주 등의 수입에 대해서 數量制限을 부과하였으며 자동차의 免稅輸入에 대해서도 수입쿼터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수입규제의 범위는 비록 넓지 않지만 폴란드는 우유제품, 담배, 포도주, 맥주(免許制) 등의 품목에 대해서 일시적인 수입제한을 가하고 있다. 알콜 및 毒酒, 2행정 사이클엔진을 부착한 운반기구 등의 수입은 계속 금지하고 있다.

2. 換率政策

가. 즐로티貨의 內的 兌換化

1989년 당시 폴란드 즐로티貨 기능은 매우 제한되었다. 우선 즐로티貨는 만성적인 부족현상으로 교환수단의 역할을 할 수 없었고, 대부분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실상 달러貨로 가격이 측정되었기 때문에 즐로티貨는 가치척도 내지 계산단위가 될 수 없었다. 이 뿐 아니라 즐로티貨는 이차지불의 능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가치저장의 수단 또한 될 수 없었다. 또한 月平均 물가상승률이 20~30%에 달해 실질 이자율이 負를 기록함에 따라 1989년 당시 즐로티貨는 화폐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있었다.

한편 中央計劃經濟下에서 즐로티貨는 外國人은 물론이고 內國人에게도 兌換性이 없었기 때문에 폴란드의 경제·사회·정치적인 고립을 초래한 요소로 작용하여 경제개혁 과정에서 즐로티貨의 未태환화는 경제적 대외개방을 어렵게 만드는 桎梏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1989년말 新外換法이 폴란드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즐로티貨는 국내기업과 내국인들에게 있어 硬貨와의 兌換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이 즐로티貨의 內的 兌換化를 의미한다.

이 결과 과거 中央計劃經濟下에서 폴란드 정부가 재화와 용역의 輸入

에 필요한 硬貨를 內國人에게 분배해 주는 ‘硬貨配分制度’가 철폐되었고, 폴란드 內國人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다.

첫째, 재화와 용역, 財産權(외국증권은 제외)의 輸入을 위해 자유롭게 硬貨를 매입할 수 있게 되었고 둘째, 50만 달러 한도내에서 商業與信을 제공받게 되었다.²³⁾

반면 外國人の 경우 자본의 本國送還과 외국인회사 및 子會社의 설립은 물론이고 內國人에 의한 외국인 회사의 증권과 채권의 취득시에는 폴란드 중앙은행(NBP) 총재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도록 되었다.

한편 外換法の 개정으로 硬貨去來의 급진적인 자유화, 다시 말해 일종의 이행기간을 거치지 않고 급진적으로 즐로티貨의 內的 兌換化가 실시됨으로써 수출업자는 다음과 같은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첫째, 외국 경제주체와의 무역결제는 반드시 경화를 사용해야 하고 둘째, 硬貨決濟는 반드시 폴란드 정부가 지정한 外換銀行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셋째, 재화와 용역의 판매로 취득한 硬貨는 반드시 外換銀行에 賣却해야 한다.

물론 다른 경제정책의 효과로부터 內的 兌換化의 효과만을 분리해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내적 태환화가 초래한 결과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폴란드 기업들의 경영분석 방법이 변화되었다. 외국상품들과의 경쟁으로 가격결정과 관리 및 마케팅 전략이 다소 변화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둘째, 기업들이 외환을 예전보다 쉽게 보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었다.

셋째, 국내 화폐시장에서 즐로티貨의 가치가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즐로티貨가 곧 바로 달러와 교환됨으로써 국내거래가 즐로티화로 이

23) 단 그 商業與信供與는 3년 이내로 제한되며 국제금융시장과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貸付가 이루어짐.

루어져 이중적인 외환거래가 제거되었다.

1990년초 즐로티貨의 內的 兌換化가 도입된 이후 1990년에는 外換保有高가 급감하였으나 1991년 이후에는 외환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증가하여 즐로티貨의 內的 兌換化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

나. 換率政策

1) 즐로티貨의 平價切下

1989년 폴란드 정부는 즐로티貨에 대한 평가절하를 수차례에 걸쳐 시행하였는데 특히 12월에는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平價切下를 단행하였다. 이어 1990년 1월 1일부로 즐로티貨의 內的 兌換化가 도입됨과 동시에 새로운 환율이 1달러당 9,500 즐로티로 대폭적인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즐로티貨의 換率引上은 즐로티貨의 달러貨와의 교환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輸入抑制를 통해 貿易收支를 개선해 보려는 조치였다.

실제로 平均關稅率(10.9%), 輸入賣出稅(평균 20%), 貿易手數料(5~10%), 銀行手數料(外貨 預金費用 포함) 등의 費用을 감안할 경우 平價切下 이후의 실제 總輸入費用은 1달러당 14,000~15,000 즐로티에 이르렀다.²⁴⁾ 이 결과 1990년 전반기의 硬貨貿易과 루블무역은 각각 13억 달러와 15억 루블의 黑字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0년 전반기의 무역수지 흑자는 달러가치의 안정화와 인플레이션의 지속으로 감소하였다. 국내수요의 부족과 경기침체에 직면한 폴란드내 생산업체는 이윤이 점차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그들의 최후 보루로 간주하게 되었다. 외환보유고가 증가함과 동시에 輸入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 후반기에는 즐로티貨의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을 증대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수

24) Leszek Jasinski, *The Polish Exchange rate Policy and Economic System Transformation*, 1992. 9, p.3.

입 관세율을 하락시키거나 면제시켜 줌으로써 輸入增加를 피하게 되었다.

1990년 年間 물가상승률이 250%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1달러당 9,500 즐로티의 換率은 1991년 5월까지 유지되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즐로티貨의 實質換率의 平價切上에도 불구하고 1990년 貿易收支는 118억 달러의 黑字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1년 5월 폴란드 정부는 즐로티貨를 17% 平價切下하여 1달러당 9,500에서 11,100 즐로티로 인상하였다. 1991년 5월 실시한 平價切下 조치는 1991년 초반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그러나 1991년 말에도 硬貨貿易 赤字를 기록하자 1992년 2월 1달러당 13,360 즐로티로 12%에 달하는 平價切下 조치를 추가적으로 단행하였다.

2) 換率制度

폴란드 정부는 1990년의 平價切下 조치와 함께 즐로티貨의 換率이 통화바스켓에 대해 고정되었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달러貨에 대해서만 고정되는 새로운 換率制度를 도입하였다.

이 결과 폴란드의 무역거래 중 거의 절반 가량이 미국 달러貨에 의해 결제되었다. 그러나 1990년 주요 西方國家의 화폐가치가 미국 달러貨 가치에 비해 상승함으로써, 미국 달러貨를 무역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輸出業者는 마르크貨와 같은 다른 西方國家의 貨幣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수출업자에 비해 손실을 보게 되었다.

반면 1991년 걸프戰 이후에는 국제 外換市場에서 미국 달러貨 가치가 강세를 보이게 됨에 따라 미국 달러를 무역결제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수출업자의 수지는 악화되었다. 즉, 즐로티貨의 환율이 달러貨에만 고정되어 결정됨으로써 국제 外換市場에서의 달러가격의 변동에 따라 미국 이외의 시장에 대한 폴란드 수출여건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결국 환율제도는 1991년 5월 다시 1990년 이전의 통화바스켓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바스켓을 구성하고 있는 화폐는 美 달러, 독일 마르크,

영국 파운드, 프랑스 프랑, 스위스 프랑 등 5개이다. 이들 화폐의 환율 결정 비율은 폴란드의 무역결제시 이용빈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각각 45, 35, 10, 5, 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1991년 10월 부터는 매월 1.8% 한도에서 매일 달러당 9즐로티까지 즐로티貨의 가치를 인상하는 漸進的 變動換率制度(crawling peg system)를 도입하면서 통화바스켓의 환율 결정 비율은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²⁵⁾

다. 換率政策의 評價

1990년과 1991년의 잇따른 즐로티貨의 平價切下 조치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것으로 평가된다. Borzym. K.(1992)²⁶⁾는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즐로티貨의 平價切下가 물가상승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1991년 5월의 平價切下 이후 平均 도매물가는 9.4% 상승하였고 同年 10월 漸進的 變動換率制度가 도입된 이후는 5.2% 상승하였다. 농산물 가격은 각각 17.5%, 10.5% 상승하였다. 소비자물가는 각각 12.3%, 6.5%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5월 즐로티貨의 平價切下에 따른 평균 물가상승률은 10.4%, 漸進的 變動換率制度의 도입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5.9%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물가상승은 전반적으로 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1991년 5월의 평가절하 조치는 수출생산물 9.6%, 투자재 9%, 개인 소비품 13.5%, 공공지출 8%의 비용상승을 초래하였고, 同年 10월의 漸進的 變動換率制의 도입은 수출생산물에 대해 5%, 투자재 4.9%, 개인 소비품 7.2%, 공공 지출 3.9%의 추가적인 비용상승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平價切下에 따른 인플레이션 및 비용상승이 전체 물가상승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큰 편이라 할 수 있고, 계속되는 平價切下에도

25) *ibid*(1992), p.4 참조.

26) Foreign Trade Research Institute, *Polish Foreign Trade in 1991*. pp.28~29 참조.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즐로티貨의 實質換率은 平價切上되는 악 순환을 되풀이하였던 것이다.

〈表 Ⅲ-1〉 즐로티화의 對美달러 名目 및 實質換率
(단위: 즐로티)

89~92년. 월	명목환율	실 질 환 율		
		90.1.기준	91.1.기준	91.1=1.0
89. 1	508	3,581	11,247	1.184
7	830	3,710	11,654	1.227
12	6,500	7,621	23,938	2.520
90. 1	9,500	9,500	29,839	3.141
4	9,500	4,150	13,036	1.372
7	9,500	3,611	11,341	1.194
10	9,500	3,319	10,424	1.097
12	9,500	3,025	9,500	1.000
91. 1	9,500	2,654	8,336	0.877
2	9,500	2,500	7,852	0.877
3	9,500	2,402	7,545	0.794
4	9,500	2,348	7,376	0.776
5	11,105	2,684	8,431	0.887
6	11,458	2,650	8,324	0.876
7	11,304	2,622	8,234	0.867
8	11,270	2,606	8,186	0.862
9	11,096	2,467	7,750	0.816
10	11,203	2,420	7,600	0.800
11	11,154	2,340	7,350	0.774
12	10,957	2,233	7,014	0.738
92. 1	11,483	2,182	6,854	0.721
2	13,200	2,470	7,757	0.817
3	13,497	2,482	7,797	0.821
4	13,746	2,444	7,678	0.808
5	13,827	2,370	7,445	0.784
6	13,512	2,286	7,179	0.756
7	13,618	2,278	7,154	0.753
8	13,449	2,196	6,897	0.726

〈表 Ⅲ-1〉에서 볼 수 있듯이²⁷⁾ 1990년 1월 1일부로 즐로티貨의 명목 가치는 계속 하락하였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즐로티貨의 실질가치는 오히려 상승하였다.

1991년의 경우 달러에 대한 즐로티貨의 實質換率은 27% 하락하였다. 그 당시 즐로티貨의 平價切下는 대단히 큰 편이었으며, 특히 수입업자에게는 추가적인 관세와 세금으로 인해 그 부담은 더 큰 것이었다. 그러나 1989년 內的 兌換化가 도입되기 이전에 비하면 즐로티貨 기준환율은 1/3 정도 낮아진 것이다.

1992년 8월 현재 실질환율은 작년 12월에 비해 변화가 거의 없다. 달러에 대한 환율은 8개월 전보다 약간 낮아졌다.

한편 폴란드의 물가는 에너지부문과 임대, 공공운송부문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편이다. 폴란드의 인플레이션은 비용증가와 동시에 가격자유화에 기인한 것이다. 물가상승의 요인으로는 특히 열악한 시장구조, 노동생산성을 초월하는 임금상승, 재정적자, 정부보조금삭감, 경제침체 등이 지적될 수 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즐로티貨의 내적 兌換化로 인해 즐로티貨의 平價切下의 역할이 변화되었다. 즉 달러貨 가치의 변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가격수준이 변화되었던 것이다.

27) Leszek Jasinski, *The Polish Exchange rate Policy and Economic System Transformation*, 1992. 9. p.5

3. 關稅政策

1989년 新關稅法의 등장으로 關稅政策은 폴란드 대외무역량을 조절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 부각되었다. 폴란드 정부는 1990년과 1991년 상반기 동안 관세정책의 자유화를 통해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1991년 7월 이후에는 관세법 개정 및 관세인상조치 등을 통해 관세장벽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세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관세정책의 흐름은 1990년 이후 1991년까지의 무역동향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특히 1991년 중반기 이후 관세율 인상 및 관세면제 범위의 축소는 그 당시 무역적자의 확대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대응책으로 주목되는 부분이다. <表 III-2> 참조)

<表 III-2> 폴란드의 關稅率 推移(1989~1991)

品 目	1989. 1	1990. 8 ~ 1991. 8	1991. 8
農 産 物	17.2	4.0	26.2
鑛 物	7.8	3.4	8.9
化 學 製 品	13.5	3.9	14.1
플 라 스 틱	19.9	5.5	15.0
모피 및 가죽	17.2	5.1	25.7
종이 및 목재	18.7	7.4	13.4
섬유류, 양말, 의류	22.2	9.7	20.6
産業用 鑛物 및 金屬	15.4	4.2	14.7
기계, 운송장비, 정밀기계	21.9	3.9	16.1
보석, 예술품, 잡화	19.9	11.6	19.1

자료: OECD, *Economic Surveys, Poland*, 1992, p.134.

폴란드 정부는 1990년과 1991년 關稅法 改正 이전까지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정책의 폭을 좁혔으며, 대신 관세정책의 자유화를 통

해 국내생산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1990년 초 폴란드는 전자제품(40%)을 비롯한 몇몇 내구 소비재에만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였으며, 1990년 중반에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독점적 위치를 고수해 온 승용차와 트럭 제조업체의 對外競爭力 提高에 초점을 맞춰 이들 제품에 대해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1991년 초반에는 농기계와 농작물, 화학품 원료에 대해서만 輸入關稅를 면제하였다.

1990년 중반 기초 원자재와 자재를 포함한 대략 1,800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었고 소규모 생산업체, 무역업체, 가공업체에 대한 투자재와 건축업과 건설업에 대해서도 관세가 인하되었다. 1991년 초 관세부과대상 항목의 약 80%에 대해 관세가 인하되었거나 면제되어 평균관세 부담은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세인하정책이 장기간 유지될 수 없었다. 국내 제조업체 및 농민들의 항의와 1991년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財政赤字로 인해 폴란드 정부는 이러한 關稅引下政策을 점차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關稅政策의 일환으로서 1991년 3월 2일부터 輸入商品에 대해 賣出稅가 부과되었으며, 7월에는 關稅法 改正으로 이어졌고, 이어 8월부터는 추가적인 關稅引上 조치가 발표되었다. 자동차와 트럭 등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관세율을 매우 유동적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수입쿼터를 설정하기도 함으로써 국내 산업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改正關稅法의 가장 큰 특징은 폴란드 관세지역으로 유입된 지 2년이 안된 상품에 대해서는 通關地域 이외에서도 關稅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내 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상품의 輸入에 대해서는 규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각 輸入商品에 대한 관세율을 차등화함으로써 무역규제의 수단으로서 관세의 역할을 점점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관세정책을 추진하였다.

新관세법의 개정 이후 폴란드 閣僚會議은 92년 1월 부터 승용차, 유개트럭, 소형 승합차, 버스, 화물차, 픽업과 트랙터의 基本關稅率을 평균

35%로 책정하였다. 또한 自動車의 제조경과 년수가 4년 이하인 경우는 25%, 그 이상인 경우는 45%로 차령에 따라 관세율을 다르게 책정하였다. 한편 차령이 4년 이하인 승용차에 대한 세금은 800달러에서 1,500달러 이상으로 인상된 반면 차령 4년 이상인 경우에는 1,300달러에서 3,000달러 이상으로 인상되었다. 자동차 몸체의 경우는 1,000달러의 輸入稅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²⁸⁾

1991년 한 해 동안 폴란드의 關稅收入은 15조 9,561억 즐로티로 총 國家 財政收入의 7% 이상을 차지하였다. 輸入商品에 대한 賣出稅 收入은 11조 7,151억 즐로티로 총 財政收入의 5% 이상, 총 賣出稅額의 18%를 차지하였다.

1990년 폴란드의 平均 輸入關稅率은 7.7%였으나 1991년의 경우는 11%였는데, 輸入商品에 부과되었던 매출세율을 감안하면 輸入關稅率은 19%에 달했다.²⁹⁾

그러나 이러한 관세정책이 폴란드 정부의 가장 중요한 貿易政策으로 부각된 반면 關稅制度가 안정되지 못함으로써 폴란드내 製造業者나 輸入業者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한편 1992년 2월 말에는 관세면제 범위가 확대되었다. 생산물의 가공 단계에 따라 관세율이 증가하는 일반원칙이 채택되었다. 또한 1992년 3월 1일부터 EC의 1,640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되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정치적 불안과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폴란드 무역정책 또한 혼란을 거듭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관세정책에 있

28) 각료회의는 화물차에 대한 관세율은 1992년 6월 말까지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후는 일단 폴란드 자동차시장의 현황을 평가한 다음 외국 인투자자들이 화물차, 소형 승합차, 버스, 유개트럭의 폴란드내 생산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을 경우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29) Piotrowski, J., *Polish Foreign Trade in 1991, 1992*, p.34 참조.

어 그 혼란의 정도는 심한 편인데 1990년에는 관세장벽의 완화를 통해 외국무역을 활성화하였으나 1991년 중반 이후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됨에 따라 관세장벽 뿐만 아니라 수입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관세정책의 불안은 1992년 3월 부터 EC와의 貿易協定이 발효되고 게다가 폴란드가 GATT에 정식적으로 가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조만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³⁰⁾

30)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1992년 9월 현재 폴란드의 재정적자 규모는 IMF와 합의한 1992년 GDP의 7.5%수준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폴란드는 IMF와의 借款提供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관세를 포함한 조세징수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IV. 輸出入管理制度

폴란드 정부는 1988년 經濟活動法을 개정하였다. 이로써 폴란드 경제 주체들은 經濟活動法이 정한 조건하에서 외국 무역당사자와 자유롭게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1989년 말 제정된 新關稅法 또한 貿易의 自由化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貿易自由化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해서 貿易規制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改正 關稅法(1991)은 輸出入 免許制度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輸入쿼터제를 도입함으로써 貿易에 관한 규제를 強化하였다.

폴란드가 도입하고 있는 輸出入管理制度로는 ① 輸出入 免許制度 ② 輸出入 許可制度 ③ 一時的 輸出入禁止 制度 ④ 不公正去來防止制度 ⑤ 貿易紛爭 仲裁制度를 들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¹⁾

1. 輸出入 免許制度

폴란드 內國人이 外國과 貿易을 하는데 免許(license)가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는 폴란드 對外經濟關係部가 제정한 법령(1992년 2월)에 제시되어 있다. 이 법령의 부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품들의 貿易에 있어서는 免許가 필요하다.

— 토륨과 우라늄, 방사능 동위원소, 화학품 및 핵 反應器, 동위원소 분리기 등

— 무기, 탄약, 폭발물, 비행기, 헬리콥터, 탱크, 함대, 로켓, 지뢰, 수뢰

31) 폴란드가 1992년 현재 적용하고 있는 輸入規制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표 6-1> 과 <부표 6-2>를 참조할 것.

- 등을 포함한 군사 및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고안된 장비와 물품
- 군사 및 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과학 및 기술 서비스와 군사시설 설치 등의 서비스
- 알콜 및 알콜제품
- 담배
- 원유 및 油製品

이 밖에도 폴란드 對外經濟關係部 長官은 輸出入 免許制의 적용을 받는 품목을 별도로 공포하고 있다. 이들 免許制 범위는 폴란드가 체결하는 對外協定의 내용에 따라 변화되기도 한다. 1992년 현재 도입되고 있는 구체적인 免許制 적용범위와 기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輸 入

폴란드 정부는 1991년 10월 이후 內國人 輸入業者가 맥주, 포도주, 연초담배, 낙농제품(우유, 사우어 크림), 버터우유, 응축우유, 크림, 요구르트, 케피르(kefir), 휘(why), 버터, 치즈 일부와 코티지 치즈(cottage cheese), 카세인을 輸入하는 경우 輸入免許制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 품목의 輸入免許를 발급받기 위해서 輸入業者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 맥주와 와인: 폴란드 貿易·産業部(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가 발행하는 알콜음료의 폴란드내에서의 都賣去來 免許證
- 연초로 된 담배: 購買契約書와 品質保證書
- 낙농제품: 輸入契約書에 명시된 가격이 國際酪農協定(International Dairy Agreement)이 정기적으로 책정하는 최저가격보다 낮지 않아야 함

한편 폴란드 정부는 천연가스, 석유 및 엔진 연료의 경우 輸入免許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고, 이 규정은 91년 10월 1일부로 발효되어 1992년 12월 말까지 유효하다. 이들 품목의 輸入에 관

한 免許證은 폴란드 對外經濟關係部가 발급한다. 免許證을 얻기 위해 폴란드 輸入業者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입액과 수입가격, 지급조건과 운송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외국 공 급자와의 購買契約書
- 계약 상품의 품질이 폴란드 기준에 적합하다는 輸入業者의 진술서.
- Caleb Brett International Ltd.(Chelmsford), D.C.Griffith Company Inspection GmbH(Bremen), Inspectorate Watson Gray(Essex) 등과 같 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무역회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 품질보증서 는 다음과 같은 폴란드 企業에 의해서도 발행될 수 있다.: Instytut Technologii Nafty(Cracow), International Inspection Services Ltd, Euroservice(Gdansk), Polskie Towarzystwo Kontroli Supervise(Gdynia), Polargo International Ltd.(Szczecin)
- 수입업자의 자본금이 100억 즐로티(900,000달러 상당) 이상임을 입 증하는 서류

上記 품목에 대한 輸入免許證은 폴란드에 등록된 기업에게만 발급된 다. 이와 같이 폴란드 정부가 가스, 석유, 엔진 연료에 대해 輸入免許制 를 도입한 이유는 輸入남발로 인한 品質 低下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폴란드의 기준에 못미치는 저질의 연료가 폴란드內로 자주 유입되었던 것에 대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나. 輸出

폴란드 정부는 1992년 1월부터 낙농제품, 고체연료, 석유, 액체 연료 의 輸出時에도 輸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免許制度를 적용하고 있다. 그 러나 고체연료의 경우 무연탄, 코크스用 粘結炭, 電力用 석탄에 국한하 였다. 이와 같이 폴란드가 석탄에 대해 輸出 免許制度를 도입한 이유는 自國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이다. 폴란드 에너지 공급에서 석 탄이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인해 석탄의 수출은 계속 통제될 것으로 보

인다. 앞에서 언급한 품목 중 석탄 이외의 품목에 대해 輸出 免許制가 계속 적용되는 이유는 國際酪農協定 또는 다른 국가들의 輸入制限과 같은 외부적 사정에 기인한다. 그러나 外國의 輸入制限에 의한 輸出免許制의 적용 범위는 1991년에 비해 축소된 것이다. 즉, 스웨덴과 노르웨이 에 대한 섬유류, 직물류, 의류의 輸出과 EC 국가에 대한 철강 및 특수용 철강제품의 輸出의 경우 輸出免許制가 폐지되었다.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 輸出 免許制가 적용되고 있다.

- EC 및 미국, 캐나다에 대한 섬유류, 직물류, 의류의 輸出
- 미국에 대한 철강 및 특수용 철강제품의 輸出
- EC에 대한 양과 양고기의 輸出

이러한 輸出制限은 관련국가들이 설정하고 있는 輸入쿼터제의 결과이다.

2. 輸出入 許可制度

舊관세법에 따르면 對外貿易에 종사하는 경제주체가 輸出入 許可(permit)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의무였지만 新관세법(1989)은 輸出入에 있어 許可가 필요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新관세법은 다음의 경우 폴란드 對外經濟關係部の 輸出入許可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2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가. 輸入

- 輸入許可證이 필요한 물품(방사능 물질 및 軍需用 물자).
- 국제 협약에 의거하여 貿易이 이루어지는 상품.
-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임대계약하에 임시적으로 輸入되는 생산수단 및 운송수단.

나. 輸出

- 輸出許可證이 필요한 물품(방사능 물질 및 軍需用 물자).
-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무역이 이루어지는 상품.
- 1990년에 쿼터制 등 수출제한의 적용을 받는 상품(연료, 비료, 일부 원자재, 곡류).
- 무역상대국이 부과하는 쿼터의 적용을 받는* 상품.
- 과학·기술 文書.
-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임대계약하에 임시적으로 수출되는 생산수단 및 운송수단.

이와 같은 輸出入許可制는 폴란드가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역량을 조절하기 위해 각국이 일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非關稅 貿易規制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수출쿼터의 적용을 받는 상품목록은 무역상대국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폴란드 關稅廳은 물품의 수출이 폴란드내의 공급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輸出을 許可한다. 이러한 면에서 수출허가제는 무조건적인 수출규제라고 볼 수 없다.

輸出許可制의 적용을 받는 일부 상품의 경우 여행객의 개인 수하물과 200달러 이하에 상당하는 선물의 경우에는 國外搬出이 허용된다.

판매용 그림, 판화, 조각품 등의 수출장벽 또한 제거되었다. 이와 같은 예술품은 文化財保護法(Law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Items)의 규정에 따라 폴란드 內國人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자격이 있는 'internal export'에서 구입한 상품(폴란드에서 硬貨로 구입)은 어떠한 제한없이 국외로 반출이 가능하다. 'Cepelia'상점에서 구입한 민속물, 가금류, 트로피 또한 국외반출이 가능하다.

한편 1991년 11월 폴란드 對外經濟關係部 장관이 공포한 규정에 따르면, 新관세법의 輸出入許可制 이외에도 사냥용 및 경기용 총류와 자기 보호용 가스총의 輸出入에 許可制가 적용되고 있다.

3. 一時的 輸出入禁止 制度

1992년 4월 현재 폴란드가 실시하고 있는 직접적인 輸出入制限은 다음과 같다.

첫째, 閣僚會議가 1991년 10월과 11월에 공표한 일부 물품의 輸入禁止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2행정 사이클 엔진이 부착된 자동차(장애자용 자동차 제외)와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령이 불명확한 승용차와 차대, 차령이 6년 이상이거나 마찬가지로 차령이 불명확한 화물차와 차대의 輸入은 금지된다. 이와 같이 폴란드가 中古 自動車의 輸入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특히 독일, 벨기에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폐기차 輸入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폴란드에서 반출된 자동차의 再輸入과 폴란드 교민들이 다시 폴란드로 들어올 때 소지하는 자동차, 외국 대사나 영사들이 폴란드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輸入禁止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1991년 12월 폴란드 閣僚會議가 공표한 일부 상품의 輸出入의 일시적 제한규정에 따르면, 우유와 낙농제품, 맥주, 술, 담배, 카세인 등의 輸入과 우유와 낙농제품, 석탄, 카세인, 비철금속고물 등의 輸出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셋째, 1991년 12월 閣僚會議가 공표한 일부 상품 輸入의 일시적 제한 규정에 따르면, 에틸 알콜 및 기타 알콜의 輸入이 금지된다.

넷째, 1991년 12월 폴란드 對外經濟關係部는 변성알콜 및 알콜음료의 輸入쿼터를 설정함으로써 이들 물품의 輸入을 규제하고 있다.

다섯째, 1992년 2월 폴란드 對外經濟關係部는 담배, 가솔린 및 디젤 연료에 대한 輸入쿼터를 설정하고 있다.

여섯째, 각종 國際協約에 따른 輸出쿼터 制度를 들 수 있다. EC와 미국, 캐나다에 수출되는 섬유제품과 의복류, 미국에 수출되는 철강 및 철강제품, EC에 수출되는 양과 양고기 등은 각각 무역대상국이 설정하고 있는 輸入쿼터 제약을 받고 있다.

일곱째, 1992년 2월 폴란드 閣僚會議은 가스에 대해 일시적 輸入禁止를 규정하였다.

폴란드는 이와 같은 輸出入 쿼터 및 禁止制度를 도입하고 있는 한편 特惠關稅制度도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일정한 輸入量 또는 輸入額에 대해서 특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폴란드 閣僚會議가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주시해야 할 부분으로 간주된다.

4. 不公正去來 防止制度

新關稅法은 덤핑 가격으로 외국물품이 폴란드로 輸入되는 경우 이를 규제할 규정만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改正 關稅法(1991)은 補助金을 지급받는 외국물품이 輸入되는 경우에도 이를 규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덤핑 輸入의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상세히 언급하고 있지만 輸入品의 국가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규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改正 關稅法은 ‘폴란드 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한 국내 시장의 보호’라는 하나의 章을 추가하였다. 이로써 폴란드는 국내시장의 보호책을 구비하게 되었는데 改正 關稅法은 不公正 競爭에 대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수입하려는 상품과 유사한 것을 생산하는 국내 업계의 이익을 심하게 침해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직접적으로 국내 생산품과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상품”이라 규정하고 있다.

폴란드의 국내 시장보호책은 GATT 규정과 부합되는 것이며 다른 시장경제 국가가 규제하는 불공정 경쟁과 유사하다. ‘safeguard(국내산업보호)’ 조치들은 폴란드 생산업계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당했을 경우 적용되는 데, 그 침해 여부는 폴란드 對外經濟協力部가 심사한다. 對外經濟協力部 長官은 이를 위해 改正 관세법에 추가된 조항에 의거하여 폴란

드 생산업계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당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담당할 행정적 절차를 마련하였다.

만일 폴란드 생산업계의 피해가 확인되면 對外經濟關係部 장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첫째, 해당 상품의 外國 輸出業界에게 폴란드 시장에서의 판매 제한 또한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둘째, 폴란드 閣僚會議에 다음과 사항의 도입을 요구할 수 있다.

— 해당 상품의 輸入禁止 또는 輸入 許可證의 의무화

— 해당 상품의 폴란드 관세지역으로의 輸入額 또는 輸入量의 쿼터제 도입

— 1년 이내에 관세징수와는 별도로 벌과금 징수

改正 關稅法에 따라 폴란드 對外經濟關係部 장관은 덤핑과 보조금지급에 관한 관세법 조항의 실행 뿐만 아니라 ‘세이프가드’ 조치들의 적용에 관련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는 폴란드 중앙관세청이 폴란드 시장에서 수입품의 불공정경쟁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에 직접 개입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국가 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외국상품의 輸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은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5. 貿易紛爭 仲裁制度

貿易에서 파생되는 紛爭들은 주로 상설 또는 특별 仲裁裁判所나 調整委員會의 仲裁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우선 무역분야의 각 경제전문가들이 이들 중재기관에 참여함으로써 仲裁機關은 일반 법정외에 제공할 수 없는 전문성을 보장한다.

仲裁에 있어 협상당사자들은 재판장을 선출하는 중재자들을 임명함으로써 재판관의 인적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 협상당사자들은 중재재판소의 인적구성 뿐만 아니라 중재절차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법체계에 있어서 각 협상당사자들이 중재절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협상당사자들은 1976년 '國際貿易法에 관한 UN委員會(UNCITRAL)'가 마련한 貿易에 있어서의 특별 중재를 위한 단일화된 중재 규제안, 유럽 UN경제위원회의 후원하에 마련된 중재에 관한 규제안(1962년 제정, 추후 개정), 그리고 1966년 아시아 및 극동 아시아 UN경제위원회가 마련한 중재에 관한 규제안과 같은 중재절차에 관한 한정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무역업체들은 仲裁裁判所나 調整委員會의 분쟁중재를 통해 국가 법정보다 더 빠르고 싼 비용으로 분쟁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이들 기구를 통한 중재가 단심제 성격을 띠고 있는데다 그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이다.

중재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형태의 중재방식을 취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각 분쟁 당사자가 그들 사이에서 발생한 무역분쟁에 관련하여 중재의 필요성을 인식했을 때 중재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쟁에 관한 중재가 이루어질 경우 중재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서 발생하는 다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現 국제무역 仲裁法은 國際協定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1958년 外國仲裁裁判의 허가와 집행에 관한 '뉴욕會議'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제 중재에 관한 '유럽會議'와 경제적, 과학적, 기술적 협력에서 파생되는 민법 소송의 중재에 관한 '모스크바會議'가 있는데 後者は 지금도 舊코메콘 국가들간에 효력이 있다.

폴란드에는 몇개의 상설 중재재판소가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949년 폴란드 對外貿易會議所(Polish Chamber of Foreign Trade)가 설립한 商工會議所內 중재재판소이다. 이 재판소는 1970년 1월 1일 채택된 對外的 요소와 관련된 소송 절차를 명시한 규정(추후 개정)과 1990년 12월 4일부터 시행된 국내 경제주체들간의 소송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중재역할을 수행한다.

특수 범주에 속하는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 재판소도 있다. 1959년 6월 17일 폴란드 대외무역회의소가 체코슬로바키아 무역회의소, 舊東獨 대외무역회의소와 체결한 협정에 의거하여 Gdynia에서 설립한 ‘海洋 및 內陸 船舶運送에 관한 國際仲裁裁判所(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for Sea and Inland Shipping)’가 그것이다. 이 재판소의 임무는 화물운송 및 傭船 계약, 積送 및 再積送 계약, 중개 계약 등에서 파생되는 분쟁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면화와 면직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면화협회(Chamber of Cotton)에 설치된 중재재판소와 원료의 질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모직물협회에 설치된 중재재판소 또한 특수 목적의 분쟁재판소에 속한다.

절차법은 중재 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집행을 보장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국내법은 국내 절차법에 따라 自國內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판결을 집행한다. 실제적으로 국제 협약은 보통 대외적 분쟁을 판결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준다. 앞서 언급한 뉴욕 회의는 이러한 면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폴란드를 비롯한 60여개 국가는 그 회의를 준수하고 있는데 제 3조에 따르면 계약 당사국들은 중재 판결 결과를 받아 들여야 하며 판결을 요구하는 지역의 절차법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진다.

대외적 중재판결을 인지하고 집행하는 문제 또한 특정 경제부문에 관련된 당사국간 내지 다국간 협약을 통해 해결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폴란드는 관세법을 개정함으로써 시장경제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대외무역에 관한 법적 대응책을 점차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향후 무역량 증가와 세계시장과의 유대관계 강화라는 추세에 맞춰 輸出入規制 方案을 더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V. 關稅制度

1975년 3월 개정된 關稅法에서 關稅는 貿易量과 貿易構造에 전혀 변화를 초래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운용 수단이 되지 못하였고 단지 財政收入을 위한 역할밖에 수행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폴란드 정부는 1989년 말부터 모든 경제분야의 균등한 발전, 대외무역에서의 국가 독점 탈피, 즐로티貨의 平價切下 및 同質의인 貨幣市場의 형성, 가격자유화 및 금융과 실물, 외환에 대한 국가통제의 제거를 통한 경제단위의 재정적 독립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한 經濟改革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貿易에 있어 關稅가 貿易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1989년 12월 제정된 新관세법은 이와 같은 경제개혁을 추진한 원동력으로 평가된다. 新關稅法은 經濟活動法, 外換法과 같은 법규들의 변화에 조응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GATT 가입이라는 외부적 변화를 예상하여 關稅協力會議(Customs Cooperation Council)의 관세코드 원칙을 특별히 적용하는 등 GATT의 의무규정을 新關稅法에 반영하였다. 코트회의 등 폴란드가 조인한 다른 국제협약의 규정 또한 新關稅法의 제정에 고려되었다.

한편 1989년 關稅法이 제정, 실행된 후 폴란드 정부는 무역관련 규정을 시장경제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였고 무역당사자가 關稅法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 재정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1991년 6월 新관세법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1991년에 실행된 관세법 개정은 1989년 제정된 新關稅法을 더욱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改正 關稅法이 기존의 대외무역에 관한 원칙에서 이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貿易自由化는 여전히 유효하며 關稅賦課가 대외무역을 조절하는 주된 貿易政策이 되고 있다.

1991년 실행된 關稅法 개정은 주로 關稅徵收에 관한 절차와 關稅規制

부분에 집중되었다. 또한 關稅代理店(customs agency), 自由貿易地帶, 保稅倉庫 등과 같은 일부 關稅制度의 機能을 변화시켰다. 끝으로 關稅法 改正으로 對外貿易에 관한 행정적 규제가 체계화되었으며 폴란드 시장으로의 外國資本의 流入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와 같은 잇따른 關稅法의 개정 이후에도 폴란드 閣僚會議는 貿易現況 및 對外關係를 반영하여 수차례에 걸쳐 關稅法 규정을 개정하였다. 우선 通關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였고 輸入規制의 폭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關稅率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通關書類를 간소화한 것은 폴란드 무역관련 규정을 EC와 EFTA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정과 일치시키는 작업의 일환이었으며, 輸入規制 강화 및 關稅率 인상은 硬貨 貿易收支의 적자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關稅法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1989년 말 이후 1992년 초까지의 폴란드 關稅制度의 주요 변화를 정리, 평가하고자 한다.

1. 關稅

가. 關稅率

폴란드는 關稅評價코드(Customs Value Code)를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新關稅法은 그 코드에서 채택된 關稅價値(customs value)³²⁾평가방식과 GATT 규정에 따라 운송료와 보험료 뿐만 아니라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포장비용, 수출입허가 수수료 등도 관세가치에 포함하여 관세액을 계산하고 있다. 관세가치는 通關당시의 물품 상태를 고려하여 關稅率과 그

32) 關稅價値란 관세 책정에 있어 기준액이 되는 개념으로서 輸入商品에 지불되었거나 지불되어야 할 거래비용을 의미함.

당시의 換率에 따라 즐로티貨로 계산된다.

경제활동 목적이 아닌 여행객 또는 우편을 통한 물품인도에 대한 관세통제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從量關稅(lump customs tariff)를 부과한다. 從量關稅는 거래목적이 아님이 확실하고 總額이 201~500달러 범위의 선물에 대해서만 관세가치의 10%를 일률적으로 부과한다. 단, 從量關稅는 분해되지 않는 운송수단이나 단위당 2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從量關稅 부과에 따른 관세액이 관세율표에 있는 관세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폴란드는 1991년 8월 1일부로 새로운 관세율과 관세적용 원칙을 도입, 실행하고 있다. 새로 도입된 關稅率表는 EC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CN(Combined Nomenclature)분류방식에 의거하고 있다. CN은 新관세법이 채택하였던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분류방식을 대체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약 5,000개의 품목에 대해서만 關稅率을 책정할 수 있었으나 CN(8-digit)방식의 도입에 의해 10,000개의 품목을 가공정도에 따라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으로 분류, 關稅率을 부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0%, 5%, 10%, 15%, 20%, 25%, 30%, 35%, 40%, 45%의 9개의 종류로 차별적으로 부과된다.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농산물의 관세율은 공산품에 비해 평균 9% 포인트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농산물의 경우 완제품, 반제품, 원료간 관세율 격차는 4~5% 포인트 정도, 공산품의 경우 그 격차는 7% 포인트 정도라는 것이다.³³⁾

關稅率 구조는 다음과 같다.

33) Government of Poland,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he Republic of Poland*, 1992/11(GATT 보고서: C/RM/S/31A), p.56 참조.

〈表 V-1〉에서 알 수 있듯이 15%의 관세율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다.

〈表 V-1〉 關稅率 構造

단위: %

관세율	전산업제품	공산품
0 %	2	1
5 %	6	7
10 %	7	6
15 %	61	68
20 %	9	6
25 %	2	0.2
30 %	10	10
35 %	2	1.5
45 % 이상	1	0.3

資料: Mieczyslaw Nogaj, *Changes of Import Regulations in Poland*, 1992, p.20.

한편, 각 관세율에 해당하는 주요 수입품은 〈表 V-2〉와 같다.

〈表 V-2〉 품목별 關稅率

관세율	대 상 상 품 군
0 %	휠체어, 예술작품, 자동차 및 트럭의 조립부품, 책, 지도, 정기간행물
5 %	광물 및 화학 원료, 천연가스, 원유, 전기에너지, 섬유원료 (아마 및 합성섬유 제외), 연료, 목재, 코르크, 화학제지펄프, 석재, 'dirty'산업의 원자재 및 반제품, 어류(연어 및 장어), 소정액, 포도나무 挿穗
10 %	질산, 인, 붕소 및 기타 화학품, 어류잉어, 대구, 헬리벳), 레몬, 감자, 쌀, 종자, 밀가루, 거친 밀가루, 기름, 의약품, 비료, 합성 섬유 및 실

〈表 V-2〉 계속

관세율	대 상 상 품 군
15 %	어류(송어, 넙치), 꽃구근, 고추, 곡류, 공업용 기름, 코코아, 열대과일(대추야자, 오렌지 등), 근대(사료용), 화학 및 광업용 반제품, 가죽, 아교, 합판, 제지 및 마분지, 실, 섬유직물, 석조물, 세라믹, 유리제품, 목제품, 합성고무, 전동차 장비 및 기계, 성냥, 페인트, 살충제, 필름, 합성제품, 야금제품
20 %	계란, 야채, 삼수, 茶, 커피, 양념, 미가공 기름, 주택설비, 컴퓨터, 사진장비, 악기, 신발, 화학반제품(요소, 카세인), 소금, 가공한 돼지 가죽, 종이제품, 강유리, 라이터, 가발, 파이프, 도자기, 테이블 유리제품
25 %	정어리, 사탕수수, 스프, 와인, 승용차, 방수신발, 항공용 플라스틱 제품, 벽지, 피스톤 엔진, 적하용량이 5톤 이하인 자동차
30 %	쇠고기, 돼지 고기 및 가공품, 야채, 통조림(preserves), 가금류 고기, 새우, 조개, 요구르트, 치즈, cut flower, 과일 및 종자, 빵, 잼, 주스, 맥주, 술, 수에드(suede) 가죽 및 가공품, 카페트, 커튼, 의류, 하이파이 전자제품,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TV, 카메라, 압연유리(창유리 및 섬유 유리용)
35 %	우유, 크림, 평지 기름(種油), 마가린, 사료, 가죽 의류, 모피, 도장, 무기, 귀금속 도금 제품, 보석류, 요트, 대형트럭, 상아제품, 화장품(에나멜, 악취제거제), 여행가방, 트렁크(여행가방보다 큰 놈), 게임 카드
40 %	아이스크림, 버터, 훈제고기 제품, 설탕, 과자류
45%이상	생선 통조림(게, 새우), 초콜릿 제품, 야채주스, 고급 술, 연초 및 담배, 향수, 화장품, 귀금속 시계

資料: *ibid*, pp.20-22.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대부분의 반제품과 완제품의 수입 관세율은 10~15%에 해당된다. 공업용 소비재는 20%의 관세율 적용을 받는다. 농산물과 섬유류는 25~35%의 비교적 높은 관세율의 적용을 받으며 사치재의 수입은 35~45%의 가장 높은 관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다.

나. 通關手數料

新關稅法은 輸入品에 대해 기본관세 외에 별도의 通關手數料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이와 같이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함으로써 재정을 확보함과 동시에 무역관련업자로 하여금 관세법을 준수하도록 만들었다. 通關手數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행정수수료(administrative fees): 대외경제관계부 장관이 관세규제에 관한 집행명령에서 설정한 경제활동 범위에 한정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 ② 추가적 행정수수료: 수입업자가 관세법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
- ③ 기타 행정수수료: 폴란드에 파견된 외교관과 폴란드에 등록된 외교단체, 국제 기업 및 기관 등이 通關 3년 이내에 또는 無關稅로 들여 온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추가적 행정수수료와 더불어 이에 대한 이자,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 ④ 보관료: 수입상품이 稅關창고에 보관될 경우 별도의 보관료가 부과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한다.
 - 폴란드 관세지역으로 유입되지 않았거나 국외로 운송될 상품.
 - 상품이 폴란드 관세지역으로 유입되었거나 국외로 운송될 예정이지만 관세를 지불하는 당사자가 관세부과액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 관세지불을 위해 상품이 압수당했을 경우.
 - 문서가 누락되어 관세부과가 지연될 경우.

다. 關稅適用

폴란드는 1989년 新關稅법을 채택함으로써 最惠國 條項이 적용되는 국가뿐만 아니라 GATT 加入國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關稅率表에 나타난 關稅率을 적용하였다. 한편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해서는 GSP(General System of Preferences)를 적용하여 關稅率表에 나타난 관세율의 70%만을 부과하였다. 한편 MFN, GATT 加入國, GSP 대상국이 아닌 국가에서 輸入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關稅率表에 나타난 것보다 2배 높은 關稅率을 부과하고 만일 關稅率表에 나타난 關稅率이 0%이면 25%의 關稅率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1991년 8월 이후부터 關稅率表에 나타난 關稅率은 GATT 調印國과 MFN 對象國³⁴⁾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GSP 대상국에 대해 關稅率表上 關稅率의 70%만을 부과하는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우리나라의 對폴란드 수출품은 GATT 조인국 대우를 받게 되어 關稅率表의 관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라. 特惠關稅 制度

폴란드 정부는 新關稅法에 의거하여 특정 국가의 輸出品에 대해 일반 關稅率보다 낮은 特惠關稅率을 적용하는 '特惠關稅制度'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폴란드 정부는 新關稅法의 개정을 통해 특혜관세가 부여되는

34) 폴란드가 GATT 加入國 中 MFN(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음.(1992년 1월 현재)

1)알바니아, 2)알제리아, 3)사우디아라비아, 4)바하마, 5)바레인, 6)브루나이, 7)불가리아, 8)중국, 9)이란, 10)이라크, 11)카타르, 12)북한, 13)라오스, 14)리반, 15)리비아, 16)몽골, 17)오만, 18)파나마, 19)푸에르토리코, 20)세이셸, 21)성 크리스토퍼 네비스, 22)시리아, 23)대만, 24)베트남, 25)구소련.

資料: Government of Poland,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he Republic of Poland, 1992/11*(GATT 보고서: C/RM/S/31B), p.9 참조.

대상 국가를 조정하였다. 이와 같이 특혜관세제도를 개정한 이유는 그 제도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對外關係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함이었다. 改正 關稅法에 따라 특혜관세가 부여되는 국가의 기업 뿐 아니라 이들 국가에 설치된 다른 국가의 지점의 輸出品도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직접 유입되는 상품에는 지리, 운송, 기술, 경제적 이유로 여러 국가를 통과하여 수송되는 상품도 포함되며 관세감독하에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이들 국가에 보관되고 있는 상품도 포함된다.

關稅率表에 나타난 關稅率의 적용을 받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原產地 證明書를 첨부할 경우 이들 국가에서 유입된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농산물, 섬유, 전자제품, 알콜, 담배, 사치재(금, 귀금속, 화장품) 등 일부 상품은 특혜관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폴란드가 1992년 1월 현재 特惠關稅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關稅賦課를 면제하고 있다.

둘째, 91년 8월 改正 관세법이 발효된 후 폴란드 閣僚會議는 同年 10월 8일, 12월 12일 잇따라 일부 관세규정을 개정하여 關稅率表에 나타난 基本關稅率의 70%만을 부과하는 特惠關稅 대상 국가를 53개국으로 확정하였다.³⁵⁾

35) 1992년 1월 현재 폴란드의 特惠關稅 대상국은 다음과 같음.

1) 앙골라 2) 벨리세 3) 볼리비아 4) 칠레 5) 중국 6) 코트디브와르 7) 도미니카 8) 이집트 9) 에쿠아도르 10) 피지 11) 필리핀 12) 가나 13) 그레나다 14) 가이아나 15) 과테말라 16) 온두라스 17) 인도 18) 인도네시아 19) 자마йка 20) 요르단 21) 카메룬 22) 캄푸치아 23) 케냐 24) 콜롬비아 25) 콩고 26) 북한 27) 코스타리카 28) 쿠바 29) 레바논 30) 마다가스카르 31) 모로코 32) 몽골 33) 나미비아 34) 나이지리아 35) 니카라과 36) 파키스탄 37) 파푸아뉴기니아 38) 파라과이 39) 페루 40) 엘살바도르 41) 세네갈 42) 스리랑카 43) 성투치아 44) 성빈센트 그레나다

셋째, 폴란드가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국가에서 열대성 작물을 수입할 경우 關稅賦課가 면제된다.

넷째, 폴란드는 1991년 12월 EC와 EC準會員國 加入協定을 체결함에 따라 EC국가에서 수입하는 일부 품목에 대한 特惠關稅를 도입하였다. 1992년 3월 1일부터 輸入되는 재화의 原產地가 EUR-1과 EUR-2로 명시된 품목에 대해서는 特惠關稅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³⁶⁾

한편 1992년 1월 발효된 1991년 12월 12일 閣僚會議의 규정에 의해 비록 特惠關稅가 부과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인산 광물, 기름, 가솔린, 액화 천연가스, 기타 액화 탄화수소(關稅率이 0%인 경우는 제외), 트랙터, 모터 및 기타 운송수단은 특혜관세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마. 일시적 關稅免除

1) 關稅免除

閣僚會議가 발표한 規定(1991년 7월)에 따르면 일부 디젤油, 천연가스, 의약품, 제약품, 內科用·口腔用·獸醫用 의료 기구 및 장비, 공중보건 및 장애인 용품, 전화 및 전보 설비, 양말소재, 발틱해산 청어, 무선탕 및 1.5% 이상의 유지를 함유한 분유, 일부 야채, 24마이크론 이상 두께의 순모, 新型 승용차 및 승용차·자동차·트럭의 조립품 등에 대한 관세는 일시적으로 면제된다. 이들 품목 중 약품, 의료기구, 전화설비 등의 품목은 1992년 2월 말까지 관세가 면제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다시

45)시리아 46)태국 47)통가 48)튀니지아 49)베트남 50)솔로몬 아일랜드 51)자이레 52)잠비아 53)짐바브웨(MFN 대상국과 중복되는 경우는 특혜관세가 적용됨).

資料: Government of Poland,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he Republic of Poland, 1992/11*(GATT 보고서: C/RM/S/31B), p.9 참조.

36) 자세한 내용은 本考 제 1장 2절 참조.

關稅率表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나머지 품목은 폴란드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한편 다음과 품목에 대해서는 關稅免除 조치가 1992년 1월 초부터 취소되었거나 關稅率이 재조정되었다.

—원유, 천연가스, 시가 및 담배, 승용차, 5톤 이하의 화물차, 자동차의 차대

이와 같이 폴란드가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면제가 적용되는 만기일을 1992년 2월말로 결정한 것은 폴란드가 체결한 EC 준회원국 가입협정이 발효되는 1992년 3월 1일부터 EC국가에 대해 특혜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이유때문이었다.

1992년 3월 1일부로 EC준회원국 가입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폴란드가 관세율 부과 원칙을 임의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폭이 대폭 제한되었다. 본 협정에 의한 이른바 '停頓' 원칙에 따라 1992년 3월 1일 이후는 폴란드가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게 됨과 동시에 EC국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새로운 수입규제책을 도입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EFTA 국가와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는 EFTA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의 규정이 적용된다.

2) 關稅率 再調整

폴란드 閣僚會議는 改正 關稅法을 통해 91년말까지 關稅引下를 실시하였는데, 1992년 부터는 關稅規定의 改正을 통해 다음과 같은 關稅率의 재조정이 이루어졌다.

- 광과이버케이블: 5%에서 15%로.
- 컴퓨터 및 부품: 5%에서 20%로.
- 마이크, 확성기, 헤드폰, 증폭기: 20%에서 30%로.
- 전축, 디터폰 및 기타 오디오 장비: 20%에서 30%로.
- 카세트, 테이프, 전화기에 부착된 응답기: 20%에서 30%로.
- VCR, 비디오카메라, 기타 비디오 관련 장비(8521): 20%에서 30%

로.

-TV: 20%에서 30%로.

이와 같은 관세 재조정 이외에도 原油와 천연가스(5%에서 0%로), 인산광물(5%에서 3.5%로), 미포장된 차(20%에서 15%로)의 경우는 92년 1월 1일을 기해 基本 關稅率 자체를 引下하였다.

2. 通關節次

가. 關稅賦課 및 徵收節次

新關稅法은 관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를 간단 명료하게 규정하였다. 또한 稅關의 권한이 명시되었을 뿐 아니라 關稅徵收의 時限도 단일하게 체계화되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무역에 종사하는 모든 경제주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新關稅法은 거래하고자 하는 물품이 경제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상품의 通關節次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通關手續을 위해 稅關에 물품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규정은 단지 貿易에 종사하는 경제주체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규정이 없을 경우 關稅廳은 직권에 의해 통관절차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지불은 現金은 물론이고 회사채, 증권, 은행 및 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關稅에 상당하는 有價證券은 특정물품이 일시적으로 폴란드 관세지역으로 반입되거나 국외로 반출될 경우에 한하여 관세지불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유가증권은 폴란드 관세지역내로 일시적으로 유입되는 상품은 주어진 기간내에 다시 국외로 반출될 것이며, 국외로 유출되는 상품은 마찬가지로 주어진 기간내에 다시 폴란드로 반입될 것임을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國際協約에 따라 通關申告者가 공무원일 경우와 賃貸, 用益을 위한 생산수단 또는 운송수단이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폴란드 국내로 반입되거나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有價證券에 의한 보증이 필요치 않다. 또한 TIR(Transport International Router)카드 소지자가 폴란드 국내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關稅가 지불되기 이전에 특정물품이 國內 또는 國外로 운송될 수 있는데, 이는 유가증권에 의한 보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限한다.

新關稅法은 무역당사자의 관세지불기한을 통관절차에 의한 관세부과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4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부과 결정은 보통 14일만에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관세지불 기한은 28일이었다. 그러나 改正 關稅法은 관세지불 기간을 단축하여 關稅廳의 관세 산정 이후 21일 이내에 관세지불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1일 중 前 14일은 관세 산정 결정이 발효되는 데 필요한 기간이고 나머지 7일은 관세가 실제 지불되는 기간이다.

나. 關稅還給

新關稅法에 따르면 폴란드 관세지역내로 반입이 허용되었다가 추후에 다시 국외로의 반출이 허용된 물품의 輸入業者는 과거에 지불한 關稅를 還給 받을 수 있다. 단, 반입 당시 通關時 제출한 문서 기록과 대조하여 전혀 하자가 없는 경우에 限한다.

新關稅法은 通關節次를 밟은 지 6개월 미만의 상품에 대해서는 이미 지불한 관세전액, 通關 후 6~12개월된 상품에 대해서는 지불한 관세의 50%를 還給하도록 규정하였다. 단, 關稅還給時 해당 관세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源資材와 半製品 또는 組立資材가 完製品의 생산을 위해 일단 수입되었다가 그 完製品이 관세지역 밖으로 반출되는 경우 完製品의 생산자는 30일 이내에 輸入 당시 지불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 關稅免除

新關稅법은 관세부과가 면제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였다. 新關稅법 이외에 ‘국가와 폴란드 가톨릭 교회간의 관계법’, ‘外國人參與 經濟活動法’에도 관세부과가 면제되는 경우가 나열되고 있다. 특히 ‘外國人參與 經濟活動法’은 外國人 株主가 현물형태로 기부하여 국내 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뿐만 아니라 외국인 회사 내지는 외국인 회사의 위임을 받은 폴란드 內國人이 外國人會社를 설립한 지 3년 이내에 買入한 기계, 장비 등의 輸出時에도 關稅를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보증이 유효한 기간내에 해외로 반출된 기계, 장비, 부품의 再輸入에도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라. 關稅代理店

‘關稅代理店(customs agency)’이라는 용어와 關稅代理店の 설립을 규제하는 규정은 新關稅法에 등장하였다. 또한 新關稅法은 관세대리점의 업무영역에 대해 다른 시장경제 국가의 관세대리점이 수행하는 업무영역과는 매우 다른 영역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關稅代理店の 법적제도에 관련된 실행규정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관세법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關稅代理店の 개념 또한 마찬가지로 마련되었다.

결국 改正 關稅法の 제정에 의해 貿易에 종사하는 경제주체와 關稅廳長間의 관계에 있어서 중개인 역할을 수행할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즉,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폴란드 關稅代理店은 輸出入 關聯 業界에 通關에 필요한 문서와 물품을 마련해 줌으로써 통관절차와 관련된 모든 문제의 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改正 關稅法은 關稅代理店の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주체는 다른 종류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 關稅代理店은 良

質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 關稅代理店은 貿易業界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關稅에 대한 資産保證과 관련된 문제를 관세청장과 조정, 해결함.
- 關稅支拂:
- 통관절차를 밟기 이전에 물품을 검사함.
- 關稅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앞에서 열거한 문제와 관련된 다른 요구사항을 제기 할 수 있음.

관세대리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제주체는 폴란드 中央關稅廳長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정당한 경우 中央關稅廳長은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관세대리점의 활동은 관세행정기관(customs administration bodies)의 감독을 받게 된다.

마. 덤핑規制節次

新關稅法은 덤핑규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GATT의 덤핑규제코드 규정과 부합된다. 新관세법은 덤핑규제절차에 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 덤핑이 발생하는 경우.
- 정상적인 관세가치(normal customs value), 덤핑 마진 등 덤핑규제에 필요한 개념.
- 덤핑 마진을 설정하는 방법.
- 폴란드 국내산업의 피해 여부 판정과 덤핑규제 관세의 확정.
- 덤핑규제절차를 담당할 기관.

바. 稅關機關

新關稅法에 따르면 폴란드 中央關稅廳長이 관세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폴란드 對外經濟關係部 장관은 中央關稅廳長을 감독한다. 동시에 中央關稅廳의 책임 중 많은 부분은 각 關稅廳으로 移轉된다

사. 通關地域 이외에서의 關稅規制

新關稅法에 의하면 관세청은 통관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관세를 규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통관지역에서의 관세규제 또한 효율성과 정확도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더욱이 국경에서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통관소요시간이 연장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폴란드 정부는 다른 국가의 예를 따라 폴란드 關稅廳에게 通關地域 밖에서도 關稅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는 폴란드 관세지역내의 모든 물품 뿐 아니라 통관절차를 마쳤거나 판매를 위해 폴란드에 유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改正 關稅法의 제정에 따라 어떤 물품의 輸入이 폴란드 關稅法을 위반하거나 폴란드가 체결한 국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채 폴란드 관세지역에 반입되었다는 혐의가 발견될 경우, 폴란드 關稅廳은 통관지역 밖에서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관세부과는 폴란드 관세지역으로 물품이 반입된 지 2년 내에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세부과기간을 한정하고 있는 것은 폴란드 稅關이 관세 未支給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내로 한정되어 있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改正 關稅法은 폴란드 關稅廳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들도 부여하고 있다.

- 해외로부터 반입된 물품이 경제활동에 사용될 경우 그 물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해외로부터 반입된 물품이 폴란드 관세지역에서 판매가 허용된 경우에도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물품에 관해 반복적인 관세통제 절차를 요구할 수 있음.

—관세청장의 허가하에 가택 수색을 할 수 있음. 단, 가택수색은 벌과금 부과 절차규정에 의거하여 집행관청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폴란드 關稅廳이 반복적인 관세통제를 요구하는 경우 해외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 물품들이 이미 통관 절차를 거쳤고 해당 관세를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통관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폴란드 關稅廳은 반복적인 관세점검을 마친 후 해당 관세부과가 누락된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및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關稅額을 변경하여 부과할 수도 있다.

아. 通關에 필요한 서류

1) 通關 申請書 樣式

1990년 新關稅法이 발효된 후, 폴란드 정부는 通關時 대부분의 輸入品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신고되었으며 관세 算定時 輸入業者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法的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관시 필요한 서류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우선 수입업자는 送狀原本(invoice) 또는 폴란드 中央關稅廳長이 발급하는 서류를 稅關에 제출해야 하며, 검역에 필요한 운송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改正關稅法은 이와 같은 서류의 管理權을 폴란드 稅關에 부여하고 있다.

한편 1991년 9월 12일 中央關稅廳長의 命令은 1992년 1월 1일부터 EC 및 EFTA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SAD(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라는 通關申請書樣式의 사용을 규정하였다.³⁷⁾ 폴란드 정부가 SAD를 도

37) 일반적으로 1~24 섹션은 수출업자, 발송인 및 수입업자, 위탁업자, 통관신청자, 구매(적하)국, 물품의 원산지 및 행선지, 운송조건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련된다. 한편 22~47 섹션은 물품의 가치(특히 46섹션)와 세액(특히 47섹션)을 책정하는데 필요한 통계자료로 사용된다. 48~56 섹션은 폴란드 관

입한 이유는 무역에 필요한 문서의 수를 줄임으로써 폴란드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貿易業者는 稅關에 물품을 신고하거나 貿易統計를 제공하고, 輸入物品에 대해 稅關申告를 하는 경우 별도의 通關申請書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SAD 樣式은 원본 첫 페이지와 3페이지의 복사본으로 되어 있다. 후반부 3페이지의 복사본도 원본으로 간주되며 稅關, 統計廳, 租稅廳에 각각 제출된다.

SAD 양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양한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稅關이 관세액을 책정하고 統計廳이 무역액과 무역량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租稅當局이 관세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거의 망라하고 있다. 또한 SAD 양식에는 구매자와 판매자, 운송방법, 상품가격, 결제방법, 세율 및 세액 등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通關樣式이 필요하다.

- 통관대상 물품이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와 다르게 분류될 경우.
- 통관대상 물품의 원산지가 복수국가인 경우.
- 통관대상 물품의 가격이 2국 이상의 화폐로 명시된 경우.
- 특별한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는 일부 품목.

SAD 양식 또는 SAD BIS 양식은 최종적인 通關 뿐 아니라 임시적인 通關에도 이용된다. 輸入品에 관한 통관절차가 다른 關稅廳으로 이관될 경우에는 각각 간소화된 양식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폴란드 관세지역의 通關時 국경에 위치한 관세청에서 내륙에 위치한 관세청으로 통관업무가 이전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간소화된 SAD 양식을 사용할 경우에도 56개의 박스 중 20개만 기재하면 된다. 폴란드 관세지역의 通關時 EC와 EFTA국가가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8페이지로 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양식을 사

세지역 통과와 통관업무가 다른 관세청으로 이관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함.

용할 경우에는 폴란드 中央關稅廳長의 명령(1991년 9월) 부록 3에 제시되어 있는 보증문서의 복사본 2장을 첨부하여 폴란드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SAD 양식 또는 SAD BIS 양식의 제출을 통해 통관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 SAD 양식 또는 SAD BIS 양식의 4장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고 1991년 9월 12일 중앙관세청장 명령의 부록 4에 제시된 방법에 의거하여 기재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게다가 그 양식은 전혀 훼손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 타이프나 컴퓨터 프린트 또는 해독가능한 자필로 기재해야 하며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각각의 SAD BIS의 섹션 C부분은 SAD 양식의 섹션 C부분에 표시된 순번과 일치해야한다. 이 순번표시는 稅關이 기재한다.
- 폴란드 관세지역내에서의 거래(이러한 결정은 관세 및 수입세의 산정에 관한 결정이 뒤따라야 함)
- 수출.
- 자유무역지대나 보세창고로부터의 상품 유출.
- 폴란드 관세지역 통과.

한편 상품의 거래가 허용된 이후의 수정은 新관세법과 행정절차규칙(Code of Administrative Procedure)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폴란드 정부가 SAD 양식을 도입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① 관세통제

- 폴란드 대외무역에 관한 실적 및 자료가 컴퓨터에 입력됨으로써 무역에 대한 관세 통제 및 감독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관세 및 수입세의 징수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율표, 특혜관세제도, 관세면제 등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됨으로써 세관의 업무가 더 쉬워지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② 무역통계 작성

—모든 경제주체가 수출입, 관세지역 통과에 있어 新통관양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수출과 수입에 관한 자료의 완성도 및 단일화가 제고될 것으로 보임.

—폴란드 무역 통계의 범위와 구조가 西歐國家가 작성하고 있는 통계표에 더욱 근접하여 국제간 비교가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임. 또한 폴란드 무역에 대한 최신의 통계학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통관시 획득된 자료와 수출입 허가에 관련된 자료간의 상관관계가 파악됨으로써 폴란드 정부는 더욱 탄력적인 무역정책을 추구할 수 있게 됨.

③ 조세제도

—부가가치세³⁸⁾로 전환될 예정인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매출세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책정됨으로써 조세제도의 정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④ 무역의 활성화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 취해진 조치들과 함께 新통관양식의 도입은 폴란드의 대외무역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임. 게다가 향후 폴란드 관세청은 컴퓨터의 보급을 더욱 확대할 계획임.

38) 폴란드 의회는 1993년 7월부터 22%의 부가가치세를 거의 모든 상품과 용역에 대해 부가하기로 한 '부가가치세법'을 승인함.(1992. 11. 28)

2) 通關에 필요한 서류

(1) 送狀原本 또는 關稅價値 算定에 필요한 문서

通關時 폴란드 稅關은 關稅價値를 계산하기 위해 稅關送狀³⁹⁾이나 領事送狀⁴⁰⁾과 같은 送狀을 확인한다. 見積送狀⁴¹⁾ 또한 유효하다. 상품의 관세가치는 送狀 원본 또는 복사본에 기초하여 폴란드 관세청이 결정한다. 送狀原本은 해당 관세청에 제출되어 사진복사된 후 원소지자에게 반환된다. 原本은 세금 산정의 과정에서만 사용된다.

국경에 위치한 관세청에서 내륙에 위치한 관세청으로 통관업무가 이관될 경우에는 동물과 보관이 어려운 상품에 대해서는 送狀原本의 寫眞 複寫本이 이용된다. 이 경우에는 컴퓨터 또는 팩스로 인쇄된 送狀 또한 가능하다.

(2) 원산지 증명서

(a) 最惠國(MFN) 대우에 해당하는 품목

MFN 수준의 關稅率은 GATT 조인국 또는 폴란드가 MFN 지위를 부여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적용된다. 이 경우에 관세신고자는 수입상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39) 稅關送狀은 수입국 세관이 수입화물에 대하여 관세부과의 결정기준으로 삼거나 외국 수출상의 덤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전반적인 수입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送狀을 의미하며 폴란드 세관이 요구하는 양식을 따름.

40) 領事送狀이란 대개 상도덕이 확립되지 못한 후진국 수입상이 수출상과 결탁하여 송장상에 실제 상품 가격보다 높게 혹은 낮게 이중으로 작성하여 관세 포탈을 하거나 외화도피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수출국에 주재하고 있는 수입국 영사의 확인을 얻도록 한 送狀이다. 즉 통상 작성되는 商業送狀에 수입국의 영사가 그 사실을 확인한 송장이며 영사는 소정의 사증료를 징수하여 영사관의 수입으로 함.

41) 商業送狀은 수출업자가 작성, 서명하여 外換銀行을 통하여 換어음 및 다른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送狀을 말하는데, 見積送狀이란 商業送狀의 일종으로 수입업자가 자기 나라의 수입허가를 얻기 위해서 수출업자에게 요구하는 서류로서 해당 상품의 가격을 見積해 주는 送狀을 의미함.

1991년 8월 발표된 폴란드 中央關稅廳長의 명령에 따라 原產地 證明書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의 성명과 주소.
- 수입 대상 품목 및 폴란드 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코드 번호.
- 운송수단, 해상운송시에는 선박명.
- 수입 대상 품목이 그 원산지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
- 포장명세서(총무계 및 순무계 포함), 컨테이너 갯수 및 유형.
- 원산지증명서의 발행 일자 및 장소, 同증명서의 발행처 인장 및 발행인의 서명.
- 해양자원 및 가공품의 원산지는 수렵, 채취 또는 가공 회사의 국적임.
- 완제품 및 반제품의 원산지는 제조 국가임.
- 가공품과 기타 제품은 노동력 및 자본을 투입하여 상품가치의 최소한 50%를 생산한 회사의 국적.

原產地證明書는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와 기업 또는 폴란드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만이 발급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에 명시된 상품량과 통관시 상품량간의 편차는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수정은 허용되지 않지만,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의 타당한 註釋과 수정부분에 인장 및 서명이 첨가되어야 한다.

船積에 동반되는 운송문서 또는 기타 문서에 의해 해당상품이 직접 그 원산지에서 유입되었음이 확실하거나 상품 자체에 그 원산지를 확실하게 명시하는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폴란드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b) 특혜관세 해당 품목

주지하다시피 特惠關稅率은 폴란드 특혜관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또한 핀란드産 물품, EC 準會員國 加

入協定과 EFTA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의 규정에 따라 무역이 이루어지는 상품들에 대해서도 특혜관세율이 적용된다.

특혜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개발대상국을 포괄하고 있는 GSP하에서 특혜관세율의 적용을 목적으로 작성된 '원산지 결정에 관한 단일원칙 협정 (Agreement on Uniform Principles of Determining Countries of Origin: 1980년 6월 5일 체결)에 명시되어 있다.

핀란드와의 무역에서 원산지증명서에 필요한 사항들은 양국간 무역장벽의 제거에 관한 협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EC 국가와 EFTA 국가와의 무역 또한 마찬가지이다.

(3) 關稅價値 신고

통관대상 품목의 關稅價値 신고시 갖추어야 할 사항과 문서는 1991년 8월 공포된 폴란드 中央關稅廳長의 명령에 서술되어 있다.

關稅價値 신고란 통관절차를 밟는 당사자가 무역 대상 품목의 관세가 치 설정에 관련 된 조건 및 내용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關稅價値는 폴란드 關稅廳이 관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通關節次를 밟는 당사자가 진술해야 할 내용은 물품 구매자와 판매자와의 관계, 또는 구매자가 해당 상품을 조립하거나 재가공하는데 부과되는 제약과 이것이 상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通關 당사자는 반드시 送狀(복사본 포함)에 의거하여 關稅價値를 신고하여야 한다. 특정 물품이 폴란드에 도착하였을 경우 상품의 운송시 발생하는 운송비용과 보험료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送狀에서 분리 항목으로 별도로 명시되거나 진술되어야 한다. 1991년 8월 발효된 改正 關稅法에 따르면 폴란드 關稅廳은 신고된 관세 가치를 받아 들이거나 GATT의 關稅評價코드(Customs Valuation Code)의 규정에 따라 關稅價値를 수정할 수 있다.

(4) 기타 서류

通關 당사자는 지금까지 언급한 문서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서를

통관시 첨부하여야 한다.

(가) 輸入의 경우

- 商品明細書
- 輸入許可證(수입허가증이 필요한 경우)
- 船荷證券, 鐵道船荷證券, 航空貨物運送狀 등과 같은 수송서류(운송자가 이러한 문서를 가져오는 경우)
- 輸出 通關證明書(이전에 輸出된 상품이 폴란드로 다시 輸入되는 경우)
- 가축 또는 위생식물 등과 같이 별도의 법규에 의해 별도의 통관절차가 요구되는 경우는 허가증 또는 증명서(자격증)
- 수입 대리인의 경우 대리위임장

(나) 수출의 경우

- 商品明細書
- 輸出許可證(수출허가증이 필요한 경우)
- 현재 수출되고 있는 상품을 제조하는 데 투입된 輸入재화 목록(원자재, 중간재, 반제품, 부품 등)
- 輸入 通關證明書(이전에 輸入한 상품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
- 별도의 법규에 의해 별도의 통관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허가증 또는 증명서(자격증)
- 수출 대리인의 경우 대리위임장

(다) 폴란드 관세지역 통과외의 경우

- 통과 허가증(폴란드 법규 또는 폴란드가 조인한 국제 협약에 의해 통과허가증이 필요한 경우)

3. 關稅保護區域

新關稅法은 對外貿易을 활성화하기 위해 自由貿易地帶와 保稅倉庫의

설치 및 이들의 기능과 운영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同法은 自由貿易地帶에서 폴란드 內國人和 外國人の 모든 경제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保稅倉庫에서는 폴란드에 등록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만을 보장하고 있다. 보세창고에서는 상품의 보관, 위탁, 포장, 조립, 가공, 수선 등이 가능하지만 생산은 금지된다. 新關稅法에 따라 自由貿易地帶와 保稅倉庫는 외국으로 간주되어 자유무역지대 및 보세창고와 외국과의 대외무역을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의약품,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폐기물 등과 같은 품목과 폴란드 법규 및 폴란드가 조인한 국제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무역을 통제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 또는 보세창고로부터 폴란드 관세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은 국경을 통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세가 부과된다. 게다가 자유무역지대 또는 보세창고간의 물품 운송은 관세지역 통과로 간주되어 관세가 부과되며, 輸入許可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畢해야 한다.

改正 關稅法은 自由貿易地帶, 保稅倉庫, 免稅店의 기능과 역할 新關稅法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自由貿易地帶(Duty Free Zone)

1989년 新關稅法이 제정됨에 따라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 미비하여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에 이르기까지는 실제로 많은 제약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改正 關稅法은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규정들을 대폭 수정하게 되었다.

첫째, 自由貿易地帶의 성격에 두가지 제약조건이 추가되었다. 즉 하나는 無人地帶에 국한하여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이 가능하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소매거래활동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둘째, 自由貿易地帶內 경제활동의 범위 또한 제한되었다. 예를 들면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는 경제활동과 외국인과의 합작투자회사의 설립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自由貿易地帶의 운영은 內·外國人에게 보다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이전과 같이 自由貿易地帶는 각료회의가 제정한 법령에 의해 설치될 수 있다. 이 법령은 自由貿易地帶의 경계선을 결정하며 관리자를 지명한다. 폴란드 對外經濟協力部는 폴란드 관세지역과 자유무역지대간의 경계선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 관리자는 그 경계선을 수정할 책임을 갖고 있다. 자유무역지대의 관리자가 되길 원하는 自然人 또는 法人은 自由貿易地帶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영구 임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유무역지대의 관리자는 자유무역지대의 기능에 관한 規定案을 작성해야 하며, 中央關稅廳長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규정안에 필요한 사항들은 主要關稅廳長(Main Customs Office)이 발행하는 분리된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自由貿易地帶의 경계 통과를 단지 자유무역지대 관리자가 관련 지역의 관세청과 협의하여 발행한 특별 통과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한하여 허가하도록 조정되었다. 중앙관세청장은 특별 통과증 견본을 작성한다.

자유무역지대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주체는 관세통제를 받게 된다. 한편 自由貿易地帶의 설치와 활동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존 자유무역지대에서 활동하는 경제주체는 1992년 6월 30일까지 그들의 경제활동을 새로운 법 질서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폐쇄된다.

나. 保稅倉庫

개정 이전의 보세창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정 물품의 폴란드내로의 반입제한에 관한 규정 뿐 아니라 관세 및 세금부과에 관한 규정들이 보세창고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保稅倉庫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통해 불법행위를 엄격히 통제

하고 있다.

—보세창고內 경제활동의 범위를 축소함. 즉 보세창고에서는 물품의 저장, 위탁, 포장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세창고에서 물품의 가공, 조립, 수선 등은 금지된다.

—보세창고에 위탁될 물품의 예상 관세 및 세금에 대한 자산보증제도를 도입함. 만일 자산보증이 없을 경우 보세창고로의 물품 인도가 허가되지 않는다. 보세창고에 해당 물품이 보관되는 기간까지 그 자산보증서는 폴란드 關稅廳에 보관되어야 한다.

—보세창고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됨. 단, 다른 보세창고로의 물품인도는 그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保稅倉庫를 감독하는 폴란드 關稅廳長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한편 改正 關稅法이 발효되기 전에 보세창고로 옮겨진 물품의 보관기간은 改正 이전의 新關稅法에 따라 여전히 3년으로 되어 있다.

다. 免稅店

폴란드는 改正 關稅法을 도입함으로써 면세점의 설치를 허용하였다. 이들 면세점은 공항, 항구, 江경계에 설치되어 自由貿易地帶와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免稅店은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여행객들이 면세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관세법에서 여행객의 개념은 폴란드 관세경계를 통과하는 사람이 아니라 폴란드 국경선을 통과하는 사람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이전의 관세법과는 달리 개정 관세법에서는 여행객이 보세창고와 자유무역지대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명확해졌다.

VI. 外換管理制度⁴²⁾

外換法(1989년 제정, 1991년 개정)과 財務部 長官의 外換規定(1989년 12월)은 폴란드에서의 外換去來를 규제하는 기본 법률이다. 폴란드 정부는 이 법률의 제정을 통해 즐로티貨의 內的 兌換化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이 법률에 따르면 外貨所得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주체와 다른 법적 실체는 그 外換을 賣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외국 당사자에게 外換을 지급하기 위해 폴란드 外換銀行에서 外換을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이 법률의 제정에 의해 競賣를 통한 外換의 배분이 사라지게 되었고, 대신 銀行의 仲介를 통해 外換이 거래되고 있다.

外換法の 제정 목적은 폴란드內에서 2중적 외환거래로 인해 형성된 '暗市場'을 제거하는 데 있었다. 실제 1990년 末 소위 '內部輸出'(internal exports)이라는 硬貨의 국내 賣却 현상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 자연인의 外換保有 권리를 제한하지는 않았다.

外換法은 外換去來의 자유화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國益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폴란드 外換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外換去來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42) 外換管理制度에 관한 내용은 Malgorzata Koczaska, 'Principles Governing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Przegląd Podatkowy*, (No. 4, 1991.8.)와 Ministry of Privatization, *Polish Business Law 1992*, (1992)를 정리한 것임.

1. 主要 概念定義

外換法은 우선 內國人, 外國人, 外換去來 등 법률 전문용어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內國人은 첫째, 폴란드에 거주하는 자연인 둘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고 폴란드에 위치하고 있지만 법률상 인격(personality-at-law)이 없는 법인과 조직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外國人은 첫째, 해외에 거주하는 자연인 둘째, 해외에 위치하고 있는 법률상 인격이 없는 법인과 조직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外換去來의 자격은 시민권 또는 국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주지에 의해서 주어진다. 外換法은 거주지의 정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대신 民法 제 25조에 의거하여 居住地는 자연인이 자의적 또는 영구적인 거주목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여기서 자의적이라는 개념은 자연인의 내적 의지 뿐만 아니라 사업 등과 같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의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법률상 인격이 없는 법인과 조직체는 단순히 자산이 폴란드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內國人과 外國人이 결정된다.

다음과 같은 실체는 外換法 규정에 의거하여 특별히 內國人으로 간주된다. 첫째, 폴란드 외교사절단, 영사 및 외교적 또는 영사적 특권을 받는 기타 폴란드 대표단 둘째, 폴란드에 법적 인격이 없으면서 외국에 설립된 법인과 조직체의 支部 내지 대표사무소.

한편 특별히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첫째, 외국의 외교사절단, 영사 및 외교적 또는 영사적 특권을 받는 기타 외국인 대표단 둘째, 외국에 법적 인격이 없으면서 폴란드에 설립된 법인과 조직체의 支部 내지 대표사무소 등이다.

外換法에서 '外換(foreign-exchange)'이라는 개념은 광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개념에는 外換支給文書라는 고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급 기능을 할 수 있거나 특별히 富의 讓渡에 있

어서 편리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다른 많은 가치라는 의미 또한 내포되어 있다.

外換法에 따른 外換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① 외국의 法定貨幣이거나 法定貨幣는 아니지만 태환화가 가능한(1950년 이후 주조된 금화는 제외) 은행권과 주화(이하 '外貨'라 함)
- ② 債券, 證券, 社債, 貯蓄證書, 預金證書, 수표 및 여행자 수표, 환어음, 신용장, 外貨로 명시된 支給換과 外貨로 전환될 수 있는 모든 은행 및 금융 文書.
- ③ 未加工 상태의 금괴 및 백금괴, 1850년 이후 주조된 동전, 금 또는 백금으로 만든 반제품 및 완제품.

이들 조항외에 특별히 다음과 같은 내용도 外換의 범주에 속한다.

- ① 폴란드 法定貨幣이거나 현재 法定貨幣는 아니지만 교환이 가능한 폴란드 은행권과 주화(이하 '폴란드 貨幣'로 함)
- ② 債券, 證券, 社債, 貯蓄證書, 預金證書, 수표 및 여행자 수표, 환어음, 신용장, 폴란드 貨幣로 명시된 支給換과 해외로 또는 해외로부터 이전될 경우 폴란드 화폐로 전환될 수 있는 모든 은행 및 금융 문서.

이 결과 폴란드 화폐로 폴란드內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外換法의 外換範圍에서 제외되었다.

外換法에 정의된 세번째 개념은 外換去來이다. 內國人과 外國人間의 상호관계에서는 일반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外換去來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매우 상세한 법적 측면도 포괄하고 있다.

外換去來라는 용어에는 다음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① 外換의 支給 내지는 外換으로 명시된 채권 및 채무의 移轉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목적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법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
- ② 폴란드 또는 해외로 外換移轉과 은행 및 우편을 통한 국제송금행

위.

外換去來라는 개념에는 外換의 지급뿐만 아니라 계약의 체결 등 매우 광범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현행 外換法이 外換去來의 개념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 목적은 일련의 外換支給 행위를 구체적으로 식별하여 外換政策에 맞추어 그 지급조건을 설정함과 동시에 外換支給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外換法에는 앞에서 언급한 개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① 外換銀行: 폴란드 中央銀行(NBP) 總裁의 認可를 받은 은행으로서 폴란드 財務部와 협력하여 外換의 買入과 硬貨의 賣却 등 '外換銀行에 관한 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
- ② 經濟主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內國人.
- ③ 外換의 폴란드 또는 외국으로의 移轉: 外換이 국제 은행 및 우편 제도 등 어떠한 수단에 의하든지간에 폴란드 국경 또는 항구를 통과하는 것.
- ④ 兌換貨幣: 폴란드 中央銀行에서 작성한 대환화폐 목록에 명시되어 있는 외국화폐.

폴란드가 상호간 현물 상환등 非商業 수단에 의해 代金을 決濟하는 국가라는 개념은 모든 무역이 硬貨決濟로 전환됨에 따라 1991년 1월 1일부로 필요가 없게 되었다.

外換法은 同法의 적용 대상 지역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外換法의 적용 범위는 폴란드內 自由貿易地帶와 保稅倉庫를 포함한 폴란드 전역이 될 것이다. 自由貿易地帶에 대한 外換法의 적용이 다소 완화되는 것은 일반적인 外換 許可 또는 개별적인 外換許可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 外換에 대한 財産權 제한

外換法 제4조에 따르면 外換은 폴란드 국내외에 거주하는 內國人和 外國人の 재산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同法 제6조 규정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다. 이와 같이 外換의 財産權 제한 규정을 外換法에 삽입한 이유는 폴란드 국내외에 거주하는 內國人の 外換 보유 및 처분 개념을 도입한 外換法 제4조 규정을 해석하였을 때 外換이 內國人の 재산이 되는 것처럼 잘못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즐로티貨의 內的 兌換化가 도입된 상황에서 內國人(法人 포함)은 外換銀行에 外換所得을 재매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제6조 1항)을 부과함으로써 外換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의무 규정은 1990년 1월 1일 이후 획득한 外換所得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국내 자연인이 사업 이외의 방법으로 획득한 外換所得.

둘째, 內國인이 外國人으로부터 動産과 財産權(外換除外)을 買入하였거나 운송, 보험 서비스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負債를 청산하기 위해 內國인이 外換銀行에서 買入한 硬貨.

셋째, 폴란드가 非상업적 방법에 의해 대금을 결제하는 국가의 貨幣.

넷째, 폴란드 외교사절단, 영사, 외교적 또는 영사적 특권을 받는 기타 폴란드 대표단이 획득한 硬貨와 銀行이 획득한 硬貨.

다섯째, 外換許可를 받아 外換의 賣買活動을 행하는 內國人(換錢所)을 비롯한 金融機關이 획득한 外貨와 재무부 장관이 폴란드 중앙은행 총재와 협의하여 발행하는 외환허가를 받은 保險機關이 획득한 外貨(6조 2항).

여섯째,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內國人 명의의 은행구좌에 저축되어 있는 外貨.(改正外換法(1991년), 제3조)

한편 현행 外換法은 경제주체가 外換銀行을 통하지 않고 外換을 직접

매입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일단 폴란드내로 유입된 外換은 은행자산이 된다. 이와 같이 內國人的 직접적인 外換買入을 금지하는 목적은 外換法 제6조에 의거하여 內國인이 外國人에 대한 채무를 상환함에 있어 銀行에게 硬貨의 유동성을 확보해 주기 위함이다.

한편 外換法에 의해 경제주체는 外換所得을 보유할 수 없게 되었다. 外換法은 中央銀行 총재에게 즐로티화의 외환에 대한 환율을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환율은 경제주체가 外換銀行에서 外換을 買入하거나 外換을 賣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제13조 1항) 中央銀行이 고시한 환율에서 外換이 賣買되면 환율정책이 안정화된다. 만일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면 환율의 변동폭이 극심하게 되어 환율정책은 불안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外換銀行과는 별도로 설립된 換錢所는 外換去來를 할 수 있다. 또한 中央銀行 總裁의 外換許可를 부여받은 內國人也 外換을 賣買하거나 이를 중개할 수 있다(제10조). 換錢所는 국내 및 외국의 자연인으로부터 外換을 買入할 수 있지만 賣却은 국내 자연인에게만 가능하다(제10조 2항). 이와 같은 外換銀行 이외에 별도의 외환시장도 은행제도에 포함된다.

3. 外換配分시스템

폴란드 外換관련 법규는 모든 外換去來를 허용한다는 원칙을 도입하였다.⁴³⁾ 外換去來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법률의 예외 조항으로서 취

43) 외환배분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1982년부터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수출업자는 硬貨收入의 일정비율을 保有할 수 있었으며, 그 保有額은 競賣를 통해 賣却되거나 輸入에 충당할 수 있었다. 1989년 7월 競賣 平均換率은 당시 환율보다 6배정도 높았으며, 同年 10월부터 시작된 즐로티貨의 平價切下로 인해 그 차이는 1.5대 1로 축소되었다.(Government of Poland, *Trade Policy Review*)

급하고 있으며 中央銀行의 外換許可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外換이 폴란드로 유입되는 것을 확보하고 한편으론 자본의 유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의 이중적인 외환거래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外換法 제5조에 따르면 폴란드 경제주체는 受取外換(money receivables)을 지급만기일 이내에 외국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하고 수출로 획득한 受取外換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지급받아야 한다. 여기서 3개월이라는 기간은 수출품이 국경을 통과한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제12조에 따르면 內國人은 대외무역을 행함에 있어 외환은행의 중개를 통해 외화로 대금을 결제 또는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現 外換法에는 대외무역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外換法上으로는 교역이 어느 경우에 대외무역이며 어느 경우에 국내교역이 되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국내교역은 폴란드에 거주하는 교역 당사자가 그들의 外換狀態와는 무관하게 그들이 행한 교역을 의미하고, 이들사이의 교역은 폴란드내에서 전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대외무역에 대해서는 국내무역과 정반대이다. 국내 자연인 혹은 법인과 외국 자연인 혹은 법인간 거래가 성립될 경우 이 거래는 각 당사자가 그들 계약상의 의무(상품의 운송 또는 결제)를 청산하는 시기, 방법, 장소에 상관없이 대외무역으로 간주된다. 해외에 종종 체류하는 내국인이 외국인과 해외에서 거래를 행한 경우 또한 대외무역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원칙은 반대의 경우, 즉 폴란드에 종종 체류하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거래를 행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상품이 이미 폴란드로 운반되었을지라도 외국과 代金決濟가 이루어지는 거래는 대외무역으로 간주된다.

外換銀行을 통해 이루어지는 外換의 支給 및 決濟는 外換銀行의 통제를 받는다.

Mechanism, The Republic of Poland, 1992/11(GATT 보고서: C/RM/S/31B), p.9 참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資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內國人的 外換去來에 外換許可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 ① 外換의 해외 送金(단, 경상지출과 외국인에 의한 外換搬出의 경우는 예외-제9조 1항)
- ② 외국 당사자와의 외환거래에 있어 貸付 및 信用의 與·受信(제9조 4항)
- ③ 외국은행 구좌의 개설과 보유.(단, 자연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와 외환은행 및 폴란드 외교사절단과 영사관의 경우는 예외-제9조 6항)
- ④ 해외에서 발행된 證券과 社債의 획득.(단, 선물과 유산상속의 경우는 예외-제9조 7항)
- ⑤ 해외 부동산의 매입(제9조 7항)

국내 외환거래를 단일화하기 위해 外換許可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제한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 ① 경제주체가 폴란드內에서 취득한 動産 및 不動産, 財産權, 서비스에 대한 外換支給額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금지함.(제9조 5항)
- ② 폴란드內에서 內國人和 外國人間의 外換去來 및 外換으로 표시된 債權 및 債務關係의 移轉 禁止, 단 다음과 같은 外換去來는 예외임.

㉠ 內國인이 外國人으로부터 선물을 기증받은 경우.

㉡ 銀行法에 따라 유언에 의한 外換의 贈與.(제9조 3항)

이외에도 폴란드 화폐의 폴란드로의 移轉에도 外換許可制가 적용된다. 단, 이 때 以前에 外換許可를 받고 폴란드 외부로 移轉되었던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9조 2항)

새로운 外換配分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와 같은 外換去來上的 制約과 더불어 內國人是 外國人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특히 국제 항공노선 및 港口를 통한 승객 수송, 積送品の 발송, 운반 및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반드시 外換으로 代金を 受領해야 한다.

4. 外換去來 許可制

외국 경제주체와의 外換去來 형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외환 관리 방법이 요구된다. 外換法(제21조 1항)에 따라 재무부 장관은 중앙은행 총재와의 협의하에 외환허가를 부여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허가제는 모든 또는 일부 內國人 및 外國人에게 부여된다. 그러나 이러한 허가제는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외환허가를 신청한 대상자가 허가제가 부여하는 권한을 수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外換許可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부여된다.(제21조 3항)

일반적 外換許可에 관한 1989년 12월 31일자 재무부 장관의 법령과 1991년 1월 14일자 개정판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부류에 의해 재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外換許可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外換의 해외로의 移轉 및 폴란드 화폐의 폴란드로의 移轉.

둘째, 外換의 해외로의 移轉.

셋째, 外換許可가 요구되는 기타 경제활동.

外換許可制의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류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단지 內國人만이 5백만 즐로티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폴란드 화폐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서 해외로의 반출이 가능하다. 첫째, 外換의 일종인 金貨 둘째, 外換을 매각할 수 있는 기업이나 기관이 폴란드에서 外換을 賣却하여 취득한 폴란드 法定貨幣인 주화, 그런데 이 경우 內國人 및 外國人에게 적용되며, 이들은 귀금속으로 제조된 폴란드 法定貨幣인 주화 또한 폴란드로 반입할 수 있다.

한편 모든 內國人은 2,000달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액수에 한해서는 外換의 出處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서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 內國人에 의한 2,000달러(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外貨)이상의

硬貨搬出은 단지 “A”型 구좌 이외에서만 가능하고 이 때도 硬貨額이 事業活動에 使用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만 그렇다.

改正 이전의 外換規定에는 위와 같은 事例條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인은 硬貨를 경제활동에 사용할 수 있었다. “A”형 구좌의 성격과 모든 經濟主體에 대한 동일한 원칙의 적용이라는 필요성으로 인해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게 되었으며, 모든 경제주체는 균등한 법적대우를 받게 되었다. 이들 경제주체는 외국인으로부터 財貨와 用役을 購買하는데 있어 은행에서만 外換을 취득할 수 있다(外換法 제8조 1항, 제10조 2항).

外國人은 이전에 폴란드로 반입한 外換을 다시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데 關稅廳에 신고한 액수에 한한다(外換法 제1조 C항)

폴란드에 체류하거나 폴란드측과 경제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폴란드은행에 “C”型的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구좌에 예금된 외환의 반출 또는 송금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에 限한다.

- ① 우편송금, 수표, 여행자 수표, 환어음 및 신용장의 現金化.
- ② 통관시 폴란드 관세청에 신고한 액수의 外換.
- ③ 內國인이 外國人 은행구좌 개설자와의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 ④ 기타 外國人の “C”型 외환구좌로부터의 현금 양도.
- ⑤ 外國인이 형사소송, 경범죄 소송,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획득한 外貨.
- ⑥ 해외반출을 위해 이전에 外換을引出하였으나 同 外換이 해외로 반출되지 않았으며 동시에 국내 기관에 送金된 적이 없는 금액을 다시 해외반출하는 경우.
- ⑦ 內國人の “A”型 外換구좌가 “C”型으로 바뀌었거나 유언에 의해 현금을 양도받은 경우.
- ⑧ 별도의 규정에 의거하여 폴란드 中央銀行이 폴란드 화폐를 외환으로 대환하는 경우.
- ⑨ 별도의 규정에 따라 경제활동을 행하는 外國人 은행구좌의 外換은

同규정에 의해 해외반출이 가능함.

이 밖에도 外國人은 다음과 같은 경우 外換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

- ① 우편송금, 수표, 여행자 수표, 환어음 및 신용장을 현금화하여 획득한 外換.
- ② 폴란드 경제주체가 고용한 외국인의 여행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외환은행에서 취득한 硬貨.
- ③ 반환된 보증금과 법정 소송에 승소한 결과 획득한 금액 뿐만 아니라 법정에 예치되었다가 외국인에 반납된 폴란드 화폐금액에 해당하는 硬貨.
- ④ 스포츠경기 등 국제행사에 참가하여 획득한 賞金을 外換銀行에서 경화로 취득한 경우.

內國人이 경제활동을 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외환허가가 필요한 데, 다음과 같은 경우 外換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

- ① 外國人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는데 드는 제반 비용의 지불.
- ② 外國人으로부터 動産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未 이행 부채의 청산(단, 2,000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 ③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 ㉠ 외국인에 가입된 법정·중재위원회 소송에서 드는 비용(각 소송當 20,000달러 상당액 미만)
 - ㉡ 법률에 따라 지불해야만 하는 세금, 관세비용 및 기타 행정 수수료
 - ㉢ 법률고문 및 변호 비용(각각의 경우 50,000달러 상당액 미만)
- ④ 국제 기구 및 국제 호텔 네트워크 참가에 드는 비용.
- ⑤ 다음과 같은 부채를 청산하는 경우;
 - ㉠ 전시회와 박람회 참여 비용을 포함한 관측 비용, 광고비용, 심포지엄 및 회의 참여비용, 정보서비스 비용.
 - ㉡ 대리점 및 대표부 서비스.
 - ㉢ 輸入기계의 補修 및 정밀조사 비용.

㉔ 지적 재산권의 보호 비용.

㉕ 회계감사 비용, 컨설팅 및 정보·기술 서비스 비용.

⑥ 外國人 당사자와 체결한 재화 및 용역의 賣買 계약에서 外換으로 지불하기로 한 금액.

⑦ 外國人으로부터 받은 관광서비스 요금의 지불.

⑧ 해외 대표부 운영 비용(피고용인 임금 및 건물 보수비용 포함).

⑨ 합작투자회사가 외국인 은행에서 인출한 신용의 상환.

다음과 같은 外換許可制 또한 발표되었다.

① 內國인이 外國人と 財貨·用役의 賣買契約을 체결한 경우 외국과의 外換去來는 100만 달러에 상당하는 硬貨까지 가능하다.

② 財貨·用役의 對外貿易에 있어서 外換銀行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外換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한 件當 10,000달러 상당의 硬貨이다.

③ 內國인은 債務의 支給期間이 지나지 않고 그 액수가 50,000달러 이하인 경우 外國人と 상호 채무삭감에 의해 代金決濟를 할 수 있다.

外換去來와 관련된 특수 행위가 일반적 外換許可制에 관한 재무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적 外換許可制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外換去來 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적 外換許可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은 폴란드 中央銀行에 있다. 內國인이 外換許可를 신청하였다가 中央銀行 지점에서 거절당했을 경우 바르샤바에 있는 中央銀行 本部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두번째 신청에서도 거절당하는 경우에는 行政訴訟法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하여 行政大法院(Supreme Court of Administration)에 상소할 수 있다.(外換法 제22조) 만일 개별적 外換許可가 부여되었을 당시의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中央銀行은 그 許可를 취소할 수 있다.(外換法, 제21조 4항)

5. 內國人的 海外資産 統制

內國人是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海外資産을 폴란드 中央銀行에 보고하거나 中央銀行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外換法 제17조 1항) 폴란드에 거주하는 外國人の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제17조 2항) 외교관, 영사관, 외교적 특혜 및 사면혜택을 받는 外國의 특수 사절단 등은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된다.

內國인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資産은 반드시 폴란드 中央銀行에 그 취득을 보고해야 한다.

- ① 기업의 주식.
- ② 실물자산.
- ③ 外換許可制에 의해 폴란드로 반입될 수 없는 外換을 제외한 100만 즐로티 이상에 상당하는 外換.
- ④ 액면가 합계가 100만 즐로티를 초과하는 外貨로 표시된 증권, 채권, 담보권증서.
- ⑤ 外換의 一形態인 금과 백금(각각의 금속의 무게가 250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內國人是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海外資産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도 폴란드 中央銀行에 보고해야 한다.(外換法 제17조 3항) 海外資産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中央銀行에 대한 보고는 이러한 의무가 발생한 지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6. 外換統制

內國人的 外換法上的 義務履行과 外換去來는 外換統制를 받는다. 폴란드 財務部長官, 폴란드 中央銀行, 外換銀行, 稅關, 國境守備隊(Border Guard), 우편관리기관이 外換法 제26조에 규정된 권한내에서 전반적인 外換統制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Ⅶ. 結論 및 示唆點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폴란드는 1990년 이후 經濟改革을 통해 貿易自由化 및 貿易制度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특히 輸出入管理制度, 關稅制度, 外換管理制度 등 貿易制度和 더불어 貿易政策의 변화는 貿易構造의 변화를 여실히 반영한 것이다. 1990년 이후 폴란드의 貿易構造, 貿易制度, 貿易政策의 변화 추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貿易構造의 변화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1990년을 분기점으로 전체 貿易額에서 루블貿易額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감함에 따라 地域別 貿易構造가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즉, 1991년 1월 舊소련과의 貿易決濟 방식이 硬貨決濟로 전환됨에 따라 루블무역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 舊소련과의 무역은 다른 지역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에 따라 舊소련을 중심으로 한 舊코메콘 지역과 '기타지역'으로 양분되었던 폴란드의 주요 貿易圈은 서방선진국, 舊코메콘 지역, 開途國을 포함한 기타 지역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開途國이 폴란드의 주요 貿易對象國으로 부각된 이유는 원유 및 에너지의 輸入先이 舊소련에서 中東 產油國으로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韓國을 포함한 신흥 開途國과의 무역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貿易制度의 경우 1990년 초 貿易自由化를 주요 내용으로 한 貿易制度를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로써 國營企業의 貿易獨占, 輸出入制限, 外換統制가 크게 완화되었다. 나아가 폴란드 정부는 전반적인 제도상의 未備點을 인식하여 1991년 중순 關稅法과 外換法을 잇따라 개정하였다. 이는 무분별한 商品 輸入과 이에 따른 貿易收支의 악화라는 貿易自由化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셋째, 貿易政策에 있어서는 換率政策과 關稅政策이 각각 국내 경제상황과 무역수지의 변동을 반영함과 동시에 이들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부각되었다. 우선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폴란드 정부는 즐로티貨의 평

價切下라는 換率政策을 통해 輸出增進을 꾀하게 되었다. 이러한 즐로티貨의 平價切下는 'hyper-inflation'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지만, 1990년 貿易收支의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한편 關稅政策의 경우 1990년 초부터 1991년 중반까지는 무역수지의 흑자를 반영, 關稅率을 인하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貿易收支가 악화됨에 따라 關稅率 引上, 特惠關稅制의 축소 등 부분적으로는 保護貿易政策으로 선회하였다. 이는 폴란드 정부가 貿易自由化를 실시한 이후 무역을 통제할 수 있는 유효수단으로서 關稅政策을 선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1990년 이후 貿易構造, 貿易制度, 貿易政策의 변화가 한국과 폴란드間 貿易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1990년 한국과 폴란드間 貿易額⁴⁴⁾은 前年對比 175.9% 증가한 2억 448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 중 對폴란드 輸出額은 약 1억 1,312만 달러(前年對比 101.5% 증가), 輸入額은 약 9,136만 달러(前年對比 408.4% 증가)를 기록하여 兩國間 貿易量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무역증가 추세는 1991년에도 지속되어 총 貿易額 4억 4,280만 달러(前年對比 116.5% 증가), 이 중 輸出額은 2억 9,011만 달러(前年對比 156.4% 증가), 輸入額은 1억 5,269만 달러(前年對比 67.1% 증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2년 1~6월 韓國의 對폴란드 總輸出額은 前年同期 對比 73.3%가 감소한 약 5,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산물, 일반기계, 선박 및 수상구조물이 각각 前年同期 對比 313.9%, 128.8%, 135.7% 증가한 반면 자동차 77.7%, 전기 및 전자제품 89.7%, 석유류 35.2%,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63.9%, 잡화류 33.3% 등으로 輸出減少를 기록하였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對폴란드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폴란드가 EC 자동차에 대해 일정 쿼터량에 대해 15%의 특

44)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부설 北方地域센터, 『북방경제』 1992년 5월. 1990년 이후 1992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對폴란드 수출실적에 대해서는 <부표 7>을 참조할 것.

惠關稅率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韓國產 자동차에 대해서는 35%의 높은 關稅率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과 1991년에 걸친 韓國의 對폴란드 輸出擴大는 폴란드의 무역 자유화 정책을 반영함과 동시에 1992년 상반기의 輸出減少는 폴란드 정부의 關稅率 引上등 保護貿易政策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992년 3월부터 발효된 폴란드- EC間 貿易協定에 따라 폴란드가 EC에 대해 부여한 特惠關稅, 無關稅輸入쿼터 등은 한국의 對폴란드 수출액을 감소시킨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물론 폴란드의 관세정책만이 한국의 對폴란드 수출을 결정하는 변수는 아니다. 폴란드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對폴란드 수출량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 섬유류와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폴란드의 관세정책과 경제회복 시기가 한국의 對폴란드 수출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EC 국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關稅政策을 실시하는 한 한국의 폴란드에 대한 수출감소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 2년여간에 걸친 폴란드 정부의 經濟政策에 대한 비판이 폴란드내에서 대두되고 있어 추가적인 輸入規制 등 自國産業의 保護政策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輸出擴大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對폴란드 수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폴란드의 對EC 정책과 關稅率 및 非關稅 무역장벽의 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폴란드 진출업체의 현지 시장특성에 맞는 마케팅 활동강화와 수출보험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실질적인 수출확대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폴란드는 1991년 12월 EC 準會員國 加入協定을 체결한 데 이어 1992년 12월에는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와 함께 自由貿易地帶 창설을 위한 貿易協定을 체결하였다. 또한 폴란드는 景氣回復과 EC 加入을 위해 본격적인 産業構造再編과 대규모 국영기업의 私有化를 1993년에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은 폴란드에 대한 直接投資와 더불어 貿易擴大 方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參考文獻〉

1.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부설 北方地域센터, 『폴란드 便覽』, 1992.
2. Elzbieta Kawecka-Wyrzykowska, "Implication the association agreement with the european communities for Poland", *Re-Integration of Poland into the West European Economy*, 1992. 4.
3. Foreign Trade Research Institute, *Economic Cooperation among Poland, Czecho-Slovakia and Hungary*, 1992.
4. ———, *Polish Foreign Trade in 1991*, 1992.
5. Henry Bak, "Transformation of Poland's Foreign Trade System", *Re-Integration of Poland into the West European Economy*, 1992. 4.
6. Hubert Gabrisch, "EC Trade Agreement with Poland", *WIIW-Mitgliederinformation*, 1991.1.
7. Leszek Jasinski, *The Polish Exchange rate Policy and Economic System Transformation*, 1992. 9.
8. Malgorzata Koczaska, "Principles Governing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Przegląd Podatkowy*, No. 4, 1991.8.
9. Mieczyslaw Nogaj, *Customs Law on the 28th December, 1989(synopsis)*, 1991.
10. 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Economic Department, *New Customs Law*, 1991.9.
11. Ministry of Privatization, *Polish Business Law 1992*, Warsaw 1992.
12. PAI-Press Agency, *Guide for Business Activities in Poland*, Warsaw 1992.
13. PlanEcon, *PlanEcon Report*, No.30-31(1991/8), No. 24-25(1992/6).
14. ———, *PlanEcon Trade and Finance Review*, No. 2, 1992.10.
15. Polish Foreign Trade, *Changes of Import Regulations in Poland*, 1992.
16. ———, *Further Changes of Trade Regulation in Poland*, 1991.
17. ———, *Polish Foreign Trade*, No. 6(1991/6), No. 4(1991/4), No. 4 (1992/4).

附 錄



〈부표 1〉 경화 및 루블 무역구조(1983~1991)

(단위: 백만 달러, 백만 루블)

	1983	1985	1987	1988	1989	1990	1991
	경 화 무 역(백만 달러)						
輸出總額(f.o.b)	5,890	6,152	7,280	8,311	8,533	12,019	14,641
서방국가	5,237	5,190	6,286	7,397	7,638	10,180	12,155
- 선진국	3,756	3,983	5,080	6,022	6,312	8,932	10,999
- 개도국 ¹⁾	1,481	1,207	1,206	1,375	1,326	1,248	1,156
사회주의 국가	653	962	994	914	895	1,839	2,486
輸入總額(f.o.b)	4,452	5,098	5,982	7,302	7,766	8,254	15,464
서방국가	3,802	4,256	5,072	6,473	6,822	6,517	12,398
- 선진국	3,056	3,494	4,313	5,616	6,040	6,186	10,777
- 개도국 ¹⁾	746	762	759	857	782	331	1,621
사회주의 국가	650	842	910	829	944	1,737	3,066
貿易收支	1,438	1,054	1,298	1,009	767	3,765	-823
서방국가	1,435	934	1,214	924	816	3,663	-243
- 선진국	700	489	767	406	272	2,746	222
- 개도국 ¹⁾	735	445	447	518	544	917	-465
사회주의 국가	3	120	84	85	-49	102	-580
	루 블 무 역(백만 루블)						
輸出總額	7,655	9,414	11,218	11,939	12,218	10,330	1,397
舊소련	4,866	5,751	6,889	7,330	7,376	6,388	1,118
기타 사회주의 국가	2,789	3,663	4,329	4,609	4,842	3,942	279
輸入總額	8,270	10,121	11,077	10,819	10,268	5,712	850
舊소련	5,250	6,579	6,785	6,233	5,735	3,167	238
기타 사회주의 국가	3,020	3,542	4,292	4,586	4,533	2,545	612
貿易收支	-615	-707	141	1,120	1,950	4,618	547
舊소련	-384	-828	104	1,097	1,641	3,221	880
기타 사회주의 국가	-231	121	37	23	309	1,397	-333

註: 1) 북한,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關途國은 제외함.

資料: PlanEcon, *PlanEcon Report*, 1992.6. No. 24-25, pp.12~13을 참고하여 작성함.

〈부표 2〉 지역별 무역구조(1990)

(단위:백만 달러, 백만 루블)

지역 및 국가	수 출(f.o.b)			수 입(f.o.b)			무역수지	
	1989	1990	증가율	1989	1990	증가율	1989	1990
서방 선진국	6,312	8,932	41.5	6,040	6,186	2.4	272	2,746
EC	4,226	6,424	52.0	3,879	4,156	7.1	347	2,268
-독 일 ^a	1,915	3,450	80.2	1,825	1,674	-8.3	90	1,777
-영 국	837	980	17.0	507	471	-7.1	331	509
-네덜란드	335	431	28.4	340	219	-35.6	-4	212
-이탈리아	297	405	36.0	470	622	32.4	-172	-218
-프랑스	315	443	40.7	355	252	-29.1	-40	191
-벨기에	146	220	50.6	171	118	-31.2	-25	103
-덴마크	177	241	36.3	111	95	-14.6	66	146
-스페인	74	97	30.1	47	43	-8.5	27	53
-그리스	69	78	12.9	37	24	-34.8	32	53
-아일랜드	53	55	3.8	9	19	102.3	44	37
-룩셈부르크	1	15	-	4	2	-54.0	-3	14
-포르투갈	6	9	64.3	3	1	-66.7	2	8
-오차 및 누락	0	0	0	0	617	-	0	-617
EC외 서방 선진국	2,086	2,508	20.2	2,161	2,030	-6.1	-74	478
-오스트리아	458	530	15.6	677	473	-30.1	-219	57
-스위스	334	645	92.9	597	163	-72.8	-263	483
-미 국	358	374	4.6	154	135	-11.9	205	239
-스웨덴	279	360	28.9	196	536	172.7	83	-175
-핀란드	235	216	-8.3	77	106	36.9	158	110
-노르웨이	36	58	61.2	85	111	30.2	-49	-52
-일 본	182	111	-38.8	154	192	24.4	28	-81
-캐나다	62	61	-3.0	22	10	-52.8	41	50
-이스라엘	21	40	94.0	22	8	-62.9	-2	32
-오스트레일리아	22	20	-10.0	119	31	-73.9	-97	-11
-뉴질랜드	1	1	-11.1	5	1	-77.8	-4	0
-기 타	96	92	-6.6	52	264	395.6	44	-172

〈부표 2〉 계속

지역 및 국가	수 출(f.o.b)			수 입(f.o.b)			무역수지	
	1989	1990	증가율	1989	1990	증가율	1989	1990
開 途 國	1,681	1,466	-12.8	1,204	695	-42.3	477	772
非사회주의 개도국	1,326	1,248	-5.8	782	529	-32.4	544	719
-이 란	43	55	27.4	28	176	534.4	15	-121
-싱가폴	50	66	31.4	16	10	-37.2	34	56
-터 키	109	168	53.4	50	52	3.4	60	116
-한 국	4	12	251.7	15	5	-66.5	-11	8
-브라질	89	142	60.9	185	41	-77.8	-97	101
-인 도	80	92	15.7	81	40	-50.7	-1	52
-리비아	174	109	-37.6	0	0	174.5	174	108
-이집트	45	53	16.9	12	3	-70.4	34	49
-아르헨티나	12	14	20.1	12	10	-15.3	-1	4
-시리아	9	13	37.1	1	0	-75.7	8	12
-파키스탄	16	11	-34.3	2	0	-83.0	15	10
-알제리아	14	7	-47.1	2	0	-93.4	12	7
-이라크	60	57	-4.6	162	70	-57.1	-102	-12
-기 타	621	449	-27.8	217	122	-43.6	404	327
사회주의 개도국	355	218	-38.6	422	166	-60.8	-67	53
-중 국	295	194	-34.3	350	148	-57.5	-54	45
-베트남	13	6	-49.8	35	6	-81.7	-22	0
-북 한	23	9	-61.4	17	7	-61.4	6	2
-쿠 바	19	6	-66.7	17	2	-86.1	2	4
-몽 골	5	3	-49.8	4	2	-54.1	1	1
舊소련 및 東歐國家²⁾	13,591	14,754	8.6	11,635	10,301	11.5	1,956	4,453
舊소련	7,485	9,537	27.4	5,799	7,484	29.1	1,686	2,053
東歐國家	6,106	5,217	-14.6	5,836	2,817	-51.7	270	2,400
-체코슬로바키아	1,988	2,548	28.2	1,825	1,345	-26.3	163	1,203
-舊동독	1,485	0	-	1,426	0	-	59	-
-헝가리	579	613	6.0	510	351	-31.3	68	263
-불가리아	563	476	-15.5	401	218	-45.6	162	257
-루마니아	397	583	46.9	332	120	-63.9	65	463
-舊유고연방	1,076	975	-9.4	1,319	772	-41.5	-243	203
-알바니아	18	22	19.8	23	11	-52.5	-5	11

註: 1) 1990년 對독일 무역은 舊東·西獨을 포함한 수치임.

2) 舊소련 및 東歐國家의 무역액은 루블貨(단위: 백만 루블) 표시임.

資料: PlanEcon, PlanEcon Report, No.30~31, 1991. 8.

〈부표 3〉 지역별 무역구조(1991)

(단위:백만 달러, %)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1990	1991	증가율	1990	1991	증가율	1990	1991
서방 선진국	8,932	11,000	23.1	6,186	10,777	60.9	2,746	223
EC	6,424	8,291	21.5	4,156	7,805	76.0	2,268	486
-독 일	3,450	4,391	27.2	1,674	4,150	148.0	1,777	240
-영 국	980	1,060	8.2	471	622	32.1	509	438
-네덜란드	431	773	79.4	219	773	253.1	212	0
-이탈리아	405	612	51.2	622	697	12.0	-218	-86
-프랑스	443	565	27.5	252	567	125.1	191	-2
-벨기에	220	299	35.8	118	417	253.9	103	-117
-덴마크	241	346	43.5	95	332	250.7	146	14
-스페인	97	86	-10.9	43	146	237.3	53	-60
-그리스	78	62	-20.7	24	60	146.9	53	1
-아일랜드	55	53	-3.8	19	23	22.3	37	31
-룩셈부르크	15	34	123.7	2	15	730.8	14	19
-포르투갈	9	11	17.6	1	4	249.9	8	7
-기 타	0	0	-	617	0	-	-617	0
EC외 서방 선진국	2,508	2,709	8.0	2,030	2,972	31.4	478	-264
-오스트리아	530	677	27.9	473	984	108.1	57	-307
-스위스	645	665	3.1	163	538	230.9	483	127
-미 국	374	371	0.9	135	354	161.6	239	17
-스웨덴	360	392	8.9	536	276	-48.4	-175	116
-핀란드	216	219	1.4	106	166	56.6	110	53
-노르웨이	58	90	55.2	111	252	127.5	-52	-161
-일 본	111	86	-22.7	192	252	31.3	-81	-166
-캐나다	61	57	-6.3	10	29	184.3	50	28
-이스라엘	40	61	49.9	8	22	158.1	32	39
-오스트레일리아	20	15	-24.0	31	23	-25.2	-11	-8
-뉴질랜드	1	1	8.5	1	1	15.4	0	0
-기 타	92	67	-27.2	264	68		-172	1

〈부표 3〉 계속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1990	1991	증가율	1990	1991	증가율	1990	1991
開途國	1,466	1,202	-15.7	695	1,688	145.5	772	-486
非사회주의 개도국	1,248	1,156	-4.3	529	1,621	210.5	719	-465
-이란	55	79	43.0	176	425	140.9	-121	-346
-싱가폴	66	81	21.7	10	153	1374.1	56	-72
-터 키	168	110	-34.6	52	90	74.8	116	20
-한 국	12	10	-21.3	5	165	3280.2	8	-156
-브라질	142	121	-15.3	41	34	-16.4	101	86
-인 도	92	52	-43.4	40	72	79.8	52	-20
-리비아	109	74	-31.8	0	0	-54.8	108	74
-이집트	53	54	1.5	3	5	33.2	49	49
-아르헨티나	14	10	-26.9	10	16	54.0	4	-6
-시리아	13	16	31.0	0	6	3217.8	12	10
-파키스탄	11	9	-19.9	0	3	940.6	10	6
-알제리아	7	4	-45.3	0	1	730.7	7	3
-이라크	57	3	-93.9	70	0	-100.0	-12	3
-기 타	449	534	30.6	122	651	472.7	327	-117
사회주의 개도국	218	46	-79.1	166	67	-59.4	53	-22
-중 국	194	40	-79.2	148	43	-70.8	45	-3
-베트남	6	0	-96.0	6	13	113.1	0	-13
-북 한	9	1	-88.3	7	9	39.9	2	-8
-쿠 바	6	4	-39.1	2	0	-93.0	4	4
-몽 골	3	0	-96.1	2	1	-49.6	1	-1
舊소련 및 東歐國家¹⁾	3,304	2,714	-18.2	2,332	3,172	36.0	972	-458
舊소련	2,099	1,637	-22.0	1,650	2,208	33.8	449	-571
東歐國家	1,205	1,077	-10.6	682	964	41.3	523	113
-체코슬로바키아	561	689	22.8	297	522	76.2	264	166
-헝가리	135	110	-18.6	77	138	78.2	58	-28
-불가리아	105	32	-69.6	48	86	78.9	57	-54
-루마니아	128	41	-68.0	26	19	-29.8	102	23
-舊유고연방	215	204	-5.1	170	198	16.4	44	5
-알바니아	5	1	-86.9	2	1	-74.2	2	0
-오차 및 누락	56	0	-	62	0	-	-7	0
總 計²⁾	13,280	14,916	12.3	9,717	15,637	60.9	3,563	-721

註: 1) 舊소련 및 東歐國家와의 무역 통계에는 루블貿易額(달러貨 표시)이 포함됨으로써 〈부표 1〉의 전체 경화무역액과는 차이가 있음. 1990년 總輸出額 중 루블 輸出額의 비중은 17%이고, 總輸入 중 루블輸入額의 비중은 15%임. 1991년의 경우는 각각 2%, 1% 미만임.

資料: 1) PlanEcon, *PlanEcon Report*, 1992.6. No.24~25.

2) GUS, *Informacje Statystyczne(Monthly Bulletin)*, 1992.3.

(부표 4) 품목별 경화 및 루블 무역구조(1990)

(단위:백만 달러, 백만 루블)

품 목	輸 出					輸 入					貿易收支	
	1989	1990	輸出額 (%)	輸出價 (%)	輸出量 (%)	1989	1990	輸入額 (%)	輸入價 (%)	輸入量 (%)	1989	1990
경 화 무 역 (백만 달러)												
기 계 류	2,163	2,764	27.7	-1.4	29.5	2,309	3,193	38.3	6.1	30.3	-146	-430
연료, 에너지	982	1,277	30.0	10.4	17.7	382	1,524	298.5	45.1	174.5	600	-247
금속제품	1,223	2,061	68.6	0.2	68.2	663	567	-14.5	17.8	-27.4	560	1,495
화학제품	962	1,439	49.6	-9.5	65.3	1,327	1,034	-22.1	9.2	-28.6	-365	405
경공업제품	567	842	48.6	10.4	34.6	650	593	-8.8	18.9	-23.3	-84	249
식 품	1,177	1,391	18.2	-3.4	22.4	898	716	-20.2	15.1	-30.7	280	675
농 산 물	443	731	65.0	19.3	38.3	485	188	-61.3	-11.0	-56.5	-42	544
기 타	1,016	1,514	49.2	6.9	39.5	1,052	440	22.3	-26.4	66.1	-36	1,074
총 계	8,533	12,019	40.9	0.3	40.5	7,766	8,254	16.7	9.4	6.7	767	3,765
루 블 무 역 (백만 루블)												
기 계 류	7,789	6,694	-14.1	0.1	-14.1	4,552	3,404	-25.2	8.7	-31.2	3,237	3,290
연료, 에너지	725	782	7.9	23.0	-12.3	2,870	1,582	-44.9	-18.8	-32.1	-2,145	-800
금속제품	354	188	-46.9	12.5	-52.8	780	404	-48.2	-1.9	-47.2	-426	-216
화학제품	1,107	1,372	23.9	10.4	12.2	738	427	-42.2	5.6	-45.2	369	945
경공업제품	404	228	-43.5	29.8	-56.5	412	226	-45.2	-9.6	-39.4	-8	2
식 품	173	159	-8.1	2.9	-10.7	243	117	-27.2	8.1	-32.7	-70	-18
농 산 물	1,134	281	-75.2	-71.7	-12.5	36	73	102.7	135.9	-14.1	1,098	208
기 타	532	626	146.7	233.8	-23.8	637	-521	-43.0	-80.4	191.2		
총 계	12,218	10,330	-9.9	4.0	-13.3	10,268	5,712	-35.2	-1.6	-34.1	1,950	4,618

資料: 1) GUS, *Handel Zagraniczny(Foreign Trade Yearbook)*, 1991

2) PlanEcon, *PlanEcon Report*, 1991. 8. p.15.

(부표 5) 품목 및 지역별 무역구조(1991)

(단위:백만달러)

품목/지역	輸 出					輸 入					貿易收支	
	1990	1991	輸出額 (%)	輸出價 (%)	輸出量 (%)	1990	1991	輸入額 (%)	輸入價 (%)	輸入量 (%)	1990	1991
貿易總額 ^D	14,444	14,916	3.3	2.3	0.9	9,977	15,874	59.1	5.0	51.5	4,463	-959
기 계 류	4,237	3,342	-21.1	3.7	-23.9	3,953	5,930	49.3	-3.0	53.9	264	-2,588
연료, 에너지	1,464	1,589	8.6	14.0	-4.8	2,062	2,968	44.0	29.7	11.0	-598	-1,379
금속제품	2,104	2,376	12.9	-8.7	23.7	685	675	-1.4	8.8	-9.4	1,419	1,702
화학제품	1,735	1,728	-0.4	9.4	-8.9	1,033	1,997	73.2	1.3	71.0	582	-269
건축자재	248	509	105.2	-	-	127	277	118.8	-	-	121	232
목재 및 종이	586	976	66.6	-1.5	69.2	158	393	148.6	2.6	142.2	428	583
경공업제품	925	912	-1.4	2.5	-3.8	600	969	58.9	5.2	51.1	315	-58
식 품	1,447	1,491	3.0	3.7	-0.7	779	1,665	113.7	8.4	97.2	668	-174
농 산 물	779	980	25.8	0.2	25.5	198	491	147.3	1.0	144.8	581	489
기 타	1,220	1,213	-	-	-	233	509	-	-	-	687	504
E C	6,824	8,291	21.5	-3.9	26.4	4,436	7,805	72.5	-2.0	76.1	2,388	486
기 계 류	1,238	1,479	19.5	-2.6	22.7	2,180	3,431	57.4	-4.7	65.1	-942	-1,952
연료, 에너지	698	629	-9.9	-0.8	-9.2	360	423	17.5	-4.0	22.4	338	206
금속제품	1,279	1,597	24.8	-10.2	39.0	312	312	-0.2	-12.8	14.5	967	1,285
화학제품	762	683	-10.5	-8.2	-2.5	682	1,234	80.9	-1.4	83.5	80	-552
목재 및 종이	387	744	92.4	5.2	103.0	55	200	261.7	5.0	244.6	331	543
경공업제품	487	580	19.0	-1.0	20.2	230	404	75.2	1.0	73.5	257	176
식 품	881	955	8.4	2.5	5.7	438	1,068	143.8	9.1	123.4	443	-113
농 산 물	515	655	27.2	-2.4	30.3	90	316	250.4	-1.1	254.4	424	338
기 타	577	971	68.2	-	-	227	506	123.1	-	-	351	465

〈부표 5〉 계속

품목/지역	輸 出					輸 入					貿易收支	
	1990	1991	輸出額 (%)	輸出價 (%)	輸出量 (%)	1990	1991	輸入額 (%)	輸入價 (%)	輸入量 (%)	1990	1991
舊소련 및 東歐	3,089	2,508	-18.8	42.2	-42.9	2,322	3,172	36.6	100.6	-31.9	972	-458
기 계 류	1,870	944	-49.5	22.8	-58.9	555	632	13.7	21.4	-6.3	1,314	312
연료, 에너지	161	277	71.5	241.7	-49.8	1,184	1,645	38.9	147.5	-43.9	-1,023	-1,368
금속제품	172	128	-25.5	-5.3	-21.3	203	168	-16.9	240.6	-75.6	-31	-41
화학제품	313	453	44.8	161.9	-44.7	94	206	119.4	143.5	-9.9	219	248
목재 및 종이	13	13	2.7	5.7	-2.9	13	24	85.2	115.8	-14.2	0	-11
경공업제품	171	105	-38.6	28.6	-52.3	42	73	72.4	226.5	-47.2	129	32
식 품	73	149	104.4	-4.1	113.0	35	154	337.1	74.9	149.9	38	-5
농 산 물	71	187	164.8	15.3	129.7	11	21	89.0	23.9	52.6	60	166
기 타	246	251	2.2	-	-	48	63	31.3	-	-	198	189
기타지역	4,530	4,116	-9.1	-1.5	-7.8	3,216	4,995	55.3	-10.3	73.2	1,314	-879
기 계 류	1,129	919	-18.6	-1.9	-17.0	1,237	1,868	51.0	-6.4	61.3	-108	-949
연료, 에너지	605	683	13.0	0.6	12.3	517	901	74.1	-24.3	130.1	87	-218
금속제품	653	652	-0.2	-5.5	5.6	170	195	14.7	-8.7	25.7	484	457
화학제품	659	592	-10.2	-10.7	0.6	377	556	47.7	-12.3	68.5	283	36
목재 및 종이	186	219	17.4	12.8	4.1	90	169	87.8	-7.0	102.0	96	50
경공업제품	267	227	-14.8	1.9	-16.4	337	493	46.2	-1.2	47.9	-71	-266
식 품	493	387	-21.5	10.2	-28.8	306	444	44.9	-6.0	54.2	187	-57
농 산 물	193	138	-28.8	-3.3	-26.4	97	153	57.9	0.8	56.7	97	-15
기 타	344	299	-13.1	-	-	85	217	155.5	-	-	259	82

註: 1) 루블貿易額은 달러로 다시 계산되어 貿易總額에 포함함.

2) 同 부표의 무역통계 중 〈부표 3〉의 무역통계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폴란드 中央統計局(GUS)의 통계조사 방법이 변화한 것에 따른 것임.

資料: 1) GUS, *Handel Zagraniczny(Foreign Trade Yearbook)*, 1991.

2): PlanEcon, *PlanEcon Report*, 1992.6.

(부표 6-1) 對폴란드 輸入禁止 및 制限 품목(1992): 공산품

	輸入制限 類型	適用 期間	C N 코드
1. 自動車 및 사시, 몸체 :제조경과 10년 이상 -GATT 제 20조에 의거	禁 止	2002년 말	8703 21 90, 8703 22 90, 8703 23 90, 8703 23 90, 8703 31 90, 8703 32 90, 8703 33 90, 단 8706 00 19 제외
2. 화물운송수단 및 사시 몸체: 제조경과년수 6년 이상 -GATT 제 20조에 의거	-	-	8704 10 11, 8704 10 19, 8704 10 90 8704 21 20, 8704 21 39, 8704 21 99 8704 22 10, 8704 22 99, 8704 23 10 8704 23 99, 8704 31 10, 8704 31 39 8704 31 99, 8704 32 10, 8704 32 99 8704 90 00, 단 8706 00 11, 8707 90 90 제외
3. 2행정 사이클 엔진이 부착된 自動車	-	-	CN코드상 8703과 8704로 시작되는 품 목, 단 8704 33 10, 8704 33 90, 8704 34 10, 8704 34 30, 8703 21 10, 8703 21 90, 8703 22 11, 8703 22 19, 870 22 90, 8703 23 11, 8703 23 19, 8703 23 90, 8703 24 10, 8703 24 90 제외(8706 00 11, 8706 00 19, 8706 00 99도 제외)
4. 石油 및 아스팔트油 :원유 -조세부과에 관한 GATT 제 20조 d항에 의거	면 허	-	2709 00 10, 2709 00 90
5. 石油 및 아스팔트油 :원유이외 -조세부과에 관한 GATT 제 20조 d항에 의거	-	-	2710 00 31, 2710 00 33, 2710 00 35 2710 00 37, 2710 00 39, 2710 00 51 2710 00 55, 2710 00 59, 2710 00 69
6. 석유가스 및 기타 가스 상태의 하이드로카본 -조세부과에 관한 GATT 제 20조 d항에 의거	-	-	2711 11 00, 2711 12 11, 2711 12 19 2711 12 91, 2711 12 93, 2711 12 99 2711 13 10, 2711 13 90, 2711 14 00 2711 19 00, 1711 21 00, 2711 29 00
7. 카세인, 카세인 아교	-	1992년 5월 1일 이후 일시적	3501 10 10, 3501 10 50, 3501 10 90

〈부표 6-2〉 對폴란드 輸入禁止 및 制限 品目(1992): 농산물

	輸入制限 類型	適用期間	C N 코드
1. 알콜농도 80% 이상의 미성숙 에틸알콜	수입금지	2002년 말	2207 10 00
2. 알콜농도 80% 미만의 미성숙 에틸알콜: 火酒 리큐르 등 독한 술: 酒類제조용 알콜혼합물	-	-	2208 90 11, 2208 90 19, 2208 90 31 2208 90 33, 2208 90 39, 2208 90 51 2208 90 53, 2208 90 71, 2208 90 73 2208 90 91, 2208 90 99
3. 알콜농도별 에틸알콜 및 기타 火酒	쿼 터	-	2207 20 00
4. 酒類제조용 알콜혼합물	-	-	2208 10 10, 2208 10 90
5. 포도증류酒	-	-	2208 20 10, 2208 20 90
6. 위스키	-	-	2208 30 10, 2208 30 11, 2208 30 19 2208 30 90, 2208 30 91, 2208 30 99
7. 럼	-	-	2208 40 10, 2208 40 90
8. 진(Gin and Geneva)	-	-	2208 50 10, 2208 50 11, 2208 50 19 2208 50 90, 2208 50 91, 2208 50 99
9. 기타 알콜	-	-	2208 90 55, 2208 90 59, 2208 90 79
10. 맥주	면 허	-	2203 00 10, 2203 00 99
11. 포도주: No.2009 이외의 포도로 만들어진 포도주, 스파클링 와인	-	-	2204 10 11, 2204 10 19, 2204 10 90
12. 기타 와인: 未발효 상태의 포도액	-	-	2204 21 21, 2204 21 23, 2204 21 25 2204 21 29, 2204 21 31, 2204 21 33 2204 21 35, 2204 21 39, 2204 21 41 2204 21 49, 2204 21 51, 2204 21 59 2204 21 90
13. 기타 와인	-	-	2204 29 10, 2204 29 21, 2204 29 23 2204 29 25, 2204 29 29, 2204 29 31 2204 29 33, 2204 29 35, 2204 29 39 2204 29 41, 2204 29 45, 2204 29 49 2204 29 51, 2204 29 55, 2204 29 59 2204 29 90
14. 기타 포도액	-	-	2204 30 10, 2204 30 91, 2204 30 99
15. 白포도주 및 향료가 첨가된 기타 포도주	-	-	2205 10 10, 2205 10 90, 2205 90 10 2205 90 90
16. 기타 발효 음료수 (사이다, 배슬, 꿀슬)	-	-	2206 00 10, 2206 00 93, 2206 00 99
17. 연초담배	-	일시적	2402 20 00
18. 무가당 우유 및 크림	-	1992년 5월 1일 이후 일시적	0401 10 10, 0401 10 90, 0401 20 11 0401 20 19, 0401 20 91, 0401 20 99 0401 30 11, 0401 30 19, 0401 30 31 0401 30 39, 0401 30 91, 0401 30 99

〈부표 6-2〉 계속

	輸入制限 類型	適用期間	C N 코드
19. 우유 및 크림	-	-	0402 10 11, 0402 10 19, 0402 10 91
			0402 10 99, 0402 20 04, 0402 21 11
			0402 21 17, 0402 21 19, 0402 21 91
			0402 21 99, 0402 29 11, 0402 29 91
			0402 29 99, 0402 91 11, 0402 91 19
			0402 91 31, 0402 91 39, 0402 91 51
			0402 91 59, 0402 91 91, 0402 91 99
			0402 99 11, 0402 99 19, 0402 99 31
			0402 99 39, 0402 99 91, 0402 99 99
			20. 버터우유, 응축우유, 크림요구르트, 케피르 기타 발효 또는 산성 우유 및 크림
0403 10 10, 0403 10 12, 0403 10 14			
0403 10 16, 0403 10 22, 0403 10 24			
0403 10 26, 0403 10 32, 0403 10 34			
0403 10 36, 0403 10 51, 0403 10 53			
0403 10 59, 0403 10 91, 0403 10 93			
0403 10 99, 0403 90 11, 0403 90 13			
0403 90 19, 0403 90 31, 0403 90 33			
0403 90 39, 0403 90 51, 0403 90 53			
0403 90 59, 0403 90 61, 0403 90 63			
0403 90 69, 0403 90 71, 0403 90 73			
0403 90 79, 0403 90 91			
21. 乳漿:자연산 우유제품	-	-	
			0404 10 99, 0404 90 11, 0404 90 13
			0404 90 19, 0404 90 31, 0404 90 33
			0404 90 39, 0404 90 51, 0404 90 53
			0404 90 59, 0404 90 91, 0404 90 93
			0404 90 99
22. 버터 및 기타 유제품	-	-	0405 00 10, 0405 00 90
23. 치즈 및 우유	-	-	0406 10 10, 0406 10 90, 0406 20 10
			0406 20 90, 0406 30 10, 0406 30 31
			0406 30 39, 0406 30 90, 0406 40 00
			0406 90 11, 0406 90 13, 0406 90 21
			0406 90 17, 0406 90 19, 0406 90 21
			0406 90 23, 0406 90 25, 0406 90 27
			0406 90 29, 0406 90 31, 0406 90 33
			0406 90 35, 0406 90 37, 0406 90 63
			0406 90 50, 0406 90 61, 0406 90 63
			0406 90 69, 0406 90 71, 0406 90 73
			0406 90 75, 0406 90 77, 0406 90 79
			0406 90 81, 0406 90 83, 0406 90 85
			0406 90 89, 0406 90 91, 0406 90 93
			0406 90 97, 0406 90 99

자료: Government of Poland,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he Republic of Poland, 1992,11*
(GATT 보고서: C/RM/S/31B), pp. 13-17.

(부표 7) 한국의 對폴란드 輸出現況(1992년 6월 현재)

(單位: 천 달러, %)

品 目	'90년	'91년	'91년 1~6월	'92년 1~6월
농산물	179	640 (275.5)	72	298 (313.9)
화학공업제품	316	725 (129.4)	439	171 (-61.0)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4,962	2,693 (-45.7)	1,801	650 (-63.9)
섬유류	21,419	43,879 (104.9)	24,269	15,718 (-35.2)
섬유사	5,241	5,286 (0.9)	3,238	1,379 (-57.4)
직 물	12,059	21,106 (75.0)	12,426	9,657 (-22.3)
섬유제품	4,119	17,487 (324.5)	8,605	4,682 (-45.6)
생활용품	3,539	10,539 (197.7)	5,519	5,691 (3.1)
철강, 금속제품	350	831 (137.4)	674	174 (-74.2)
전자 및 전기	74,737	156,218 (109.0)	136,285	14,087 (-89.7)
산업용 전자	1,659	6,943 (318.5)	3,287	1,745 (-46.9)
전자부품	5,908	16,402 (177.6)	14,024	5,205 (-62.9)
가정용 전자	67,171	132,522 (97.3)	118,633	7,104 (-94.0)
전 선	-	329 (-)	327	16 (-95.1)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	7,063	72,980 (933.2)	40,734	12,647 (-68.9)
일반기계	299	852 (184.9)	611	1,398 (128.8)
정밀기계	2,198	3,187 (45.0)	2,301	1,741 (-24.3)
기계요소, 공구 및 금형	317	1,773 (459.3)	1,236	605 (-51.1)
수송기계 ¹⁾	3,442	6,611(1,835.2)	36,244	8,097 (-77.7)
선박 및 수상구조물	806	557 (-30.9)	342	806 (135.7)
잡화류	544	1,546 (184.2)	804	536 (-33.3)
합 계	113,121	290,117 (156.5)	210,626	49,972 (-73.3)

註: 1) 품목 분류상 수송기계에는 자동차, 승용차, 자동차 부품이 속함.

2) ()안 수치는 前年同期 對比 증가율임.

資料: 韓國貿易協會, 『輸出統計』, 1992.6/ 1991.12

폴란드 貿易制度 分析

1992年 12月 28日 印刷

1992年 12月 30日 發行

發行人 柳 莊 熙

編輯人 姜 興 求

發 行 對 外 經 濟 政 策 研 究 院

附 設 地 域 情 報 中 心

서울特別市 江南區 三成1洞 159-1

韓國綜合貿易센터빌딩 21層

印 刷 오름시스템(주) 273-7011
